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사업

연구수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KEI)

제 출 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상철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진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현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문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은주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선아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김 홍 균

목 차

1장.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사업 개요	1
1. 과업의 개요	1
1-1. 과업의 배경	1
1-2. 과업의 목적	1
2. 과업 주요 내용	1
3. 과업 추진 방법 및 시사점	2
3-1. 과업 추진 방법	2
3-2. 과업 수행에 따른 시사점	2
2장. 2025년 규제영향분석 현황	3
1. 총괄	3
2. 개별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요약	4

[부록 A] 규제 신설·강화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1-1.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A-00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A2-1.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A-047

[먹는 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A3-1. 용기의 재사용 기준 A-06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A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A-086

A4-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A-121

A4-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A-14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A5-1. 수질오염 방지·제거 조치 의무 신설 A-172

A5-2. 여과재 세척 설비 설계 의무 A-189

A5-3. 역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 A-209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6-1. 야생동물 영업시설의 시설 기준 A-226

A6-2.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A-249

A6-3.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A-277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A7-1.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 A-29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A8-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A-314

[부록 B] 규제 완화·폐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B1-1. 폐기물부담금 “껌” 품목 삭제 B-002

1장.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사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 규제비용감축제 시행에 따라 신설·강화·폐지·완화되는 환경규제(법령, 행정규칙)의 비용·편익 분석 및 규제개선 관련 규제차등화 규제 비용 분석 실시 필요

1-2. 과업의 목적

- 규제비용감축제 대상 규제 영향분석서 작성·자문, 규제연구센터 비용·편익 분석 검증에 대한 보완, 규제개선 관련 규제차등화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정책 대안에 대한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 환경정책 수립

2. 과업 주요 내용

-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자문
 -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수립한 규제영향분석 지침(개정 시 변경내용 반영)에 적합하게 수행 및 자문
- 폐지·완화 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및 자문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감축제 추진방향에 따른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검증 및 지원
- 국무조정실 “규제연구센터”의 규제비용·편익분석 적합성 검증 업무 지원
 - 규제영향분석 내용 설명 및 비용분석서 보완 등 업무 수행
- 규제개선 실적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작성 및 자문

3. 과업 추진 방법 및 시사점

3-1. 과업 추진 방법

- 환경 관련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강화·신설 규제 및 완화·폐지 규제에 관한 법안 분석
 - 규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국내·국외 관련 자료 조사
 - 관련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자 면담
 - 관련 분야 협회 및 기타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기존 환경부 규제분석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정합성 유지
 - 기존 타 부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생명·안전 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제도 법제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제도 대응 방향 및 작성지원 방안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3-2. 과업 수행에 따른 시사점

-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기존 법 규정 및 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법·제도의 정합성 유지 필요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최소화 추구 필요
 -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규제의 취지 달성과 동시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의 규제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안 마련

2장. 2025년 규제영향분석 현황

1. 총괄

○ 2025년 신설·강화 규제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번	규제사무명	법령명	구분
A1-1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 강화
A2-1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A3-1	용기의 재사용 기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A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A4-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6의2	
A4-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A5-1	수질오염 방지·제거 조치 의무 신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의3	
A5-2	여과재 세척 설비 설계 의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A5-3	역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A6-1	야생동물 영업시설의 시설 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3]	
A6-2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11, [별표8의14]	
A6-3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 제2항 및 제3항	
A7-1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A8-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안 별표)	
B1-1	폐기물부담금 깎 품목 삭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2. 개별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요약

A1-1. 법령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사무명 :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항 목		내 용
규제조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규제대안		•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강화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사업자
	비용식별/ 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준수(기타)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일반국민
	편익식별/ 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환경오염 예방)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총 1,318개소이며, 이 중 사업장의 실제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값이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함 - 2020-2021년 사업장의 실제배출량을 본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과 비교한 결과 총 7개 사업장의 14개 배출시설(굴뚝)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장들은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사업장 차원의 시설개선 및 관리 노력이 이미 수행되었으며, 5년 주기로 허가 조건이 재검토되는 통합허가제도 특성 상 향후에도 기준 강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 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장의 노력에 따른 부담은 발생하였으나, 해당 노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시행함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본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배출 총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은 국민건강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총 1,318개소 • 위반가능 굴뚝수: 14개(2020-2021년 배출시설별 평균 배출량 기준)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분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A2-1. 법령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사무명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 별표5의10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의 포장지 및 인터넷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보 공개(기타)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를 사용하는 일반국민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대상인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 제출 의무, 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③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정보공개 표기에 비용 발생 요소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기존에 분기별로 중금속함량 등을 분석하여 전산화하고 있는 자료를 전산화 한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지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후 제출하는 과정으로, 작업난이도는 낮고 작업시간은 짧은 업무임 - ② 홈페이지 관리자가 1년에 2회 하던 업무가 4회로 증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다만, 1년 365일중 2일 증가한 업무에 대한 관리자 man-month 증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텍스트 데이터가 3년간 홈페이지 관리 서버에 누적되는 데이터량 및 그에 따른 전력소모량 등 또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③ 개정안 시행 시 시멘트 포장지(포대)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를 표기해야 하는 부담(인쇄 디자인 변경 등)을 고려할

		<p>수 있을 것임. 다만, 통상 시멘트 업체의 포장지 구매 주기가 3~6개월이고, 포장지 정보공개 표기의 적용이 시행 후 6개월인점을 고려해볼 때, 본 개정안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p> <p>- 또한, 포장지의 구매 주기(3~6개월)는 포장된 시멘트 제품이 최대 3~6개월 안에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례 시점 이전에 재고가 대부분 판매되어 소진될 것임. 그리고 그 판매량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건설공사가 많아 시멘트 수요가 높은 봄~여름 기간이 적용례 기간에 해당하여 재고소진의 어려움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p> <p>[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제품 포장지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멘트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임
	<p>비용·편익 지표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멘트 판매 현황(23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8곳)에서 판매하는 시멘트 현황:50,237,348톤(벌크:48,917,406톤, 포장:1,319,942톤)
	<p>기간/할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4.5% 적용
	<p>균등순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분석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A3-1. 법령명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규제사무명 : 용기의 재사용 기준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 제12조제2항
규제대안		•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10L 이상 PC용기 사용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원재료)10L 이상 PC용기 관련 규정 준수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10L 이상 PC용기 사용 먹는샘물 소비자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국민건강 개선)10L 이상 PC용기 관련 규정 준수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 노후 PC용기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하지만 이미 3년 정도 사용 후 폐기하고 있음 • 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이미 준수하고 있으므로 유의할만한 비용 발생 안함 • 바닥면 용기 제조일자 표기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유의할만한 인쇄비용 발생 안함
	비용·편익 지표값	• 10년 초과 사용 노후 PC용기 개수 : 28,677개 • PC용기 단가 : 9,900원/개(18.9L)
	기간/할인율	• 10년/4.5%
	균등순비용	• 283.9백만원
	기타	• 해당사항 없음

A4-1.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규제 대안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수시검사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행정부담)안전진단 수수료 비용 • (행정부담)수시검사 비용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 •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안전진단 대상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행정부담)정기검사 • (행정부담)안전진단 • (행정부담)정기검사 • (행정부담)검사결과지 제출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 1년 또는 2년 주기로 받는 정기검사를 1~4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비용절감이 발생함 • 영업허가 사업장과 비영업허가 사업장 구분으로 정기검사의 주기를 정하던 것을 규모와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시 정하였음 • 기존 법령에도 존재하는 검사이므로 신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장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의 주기를 정기검사를 4번째 받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이후 4번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의 결과지를 피검 대상자가 아닌 검사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됨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 •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4.5%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백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A4-2.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기준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6의2
규제 대안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직접, 정량, 노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직접, 정량, 노동)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 축소(직접, 정량, 노동)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직접, 정량, 노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 축소(직접, 정량, 노동)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 신규 사업장은 발생 없음 가정 • 사업장 현황 관련 년도별 자료 미비.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년도별 정리 자료가 아닌, 최근 누적 현황 자료임 • 규제비용 산정 시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제외 조항 미적용 • 취급시설이 없는 시약판매업은 수량이 0으로 산정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 • 관리 책임자 및 점검원의 인건비 차이에 명확한 자료가 부족함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 임금실태 자료의 환경부문 초급숙련기술자 인건비를 책임자 및 점검원의 인건비 평균값으로 적용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수 = 34개 • 추가 선임 필요 관리자 인원수 = 1명 • 연간 인건비 단가 = (20.5일/개월) x (12개월) = 1,861,784,580원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 4.5%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394.7 백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A4-3. 법령명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규제 대안		•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영업자 • 신규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교육훈련)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일반국민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교육훈련)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화학사고 경감에 따른 안전성 확보(사고경감에 따른 손실비용 절감)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시약판매업 사업장의 교육비 및 기회비용 - (사업장 당 안전교육 대상자 수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사업장 수 × 교육비 단가) + (사업장 당 안전교육 대상자 수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사업장 수 × 8시간 인건비 단가) • 신규 허가 신고대상 사업장의 교육비 및 기회비용 - (사업장 당 안전교육 대상자 수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사업장 수 × 교육비 단가) + (사업장 당 안전교육 대상자 수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사업장 수 × 8시간 인건비 단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자의 관리자 인력절감에 따른 교육비 및 기회비용 절감 비용 - (안전교육 대상자 절감 규모 × 교육비 단가) + (안전교육 대상자 절감 규모 × 16시간 인건비 단가)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취급자 및 관리자의 안전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화학사고로 인한 일반국민의 피해 절감 편익이 기대됨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수 = 34개 • 추가 선임 필요 관리자 인원수 = 1명 • 16시간 교육비 = 88,000원/명 • 2일 인건비 단가 = 445,190원/명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59 백만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A5-1. 법령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수질오염 방지·제거 조치 의무 신설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규제대안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제거 조치 수행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제거 조치 수행(기타)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일반국민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구체적인 방제조치 수행에 따른 오염(우려)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환경오염예방)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개정안 시행규칙 제26조3에 따른 방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 의무의 준수를 위한 규제 부담이 발생함. • 피규제대상자는 공공수역의 방제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행위자등이나 그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공공수역의 오염 범위 및 오염 수준 등에 따라 방제조치 비용이 상이하며 방제조치 비용 단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게 때문에 정성분석함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발생 행위자가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편익이 기대됨
	비용·편익 지표값	
	기간/할인율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 정성분석
	기타	• 특이사항 없음

A5-2. 법령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규제사무명 : 여과재 세척 설비 설계 의무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2호 나목 1) 가), 다) 라)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도 허용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
	편익식별/구분	-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안 [별표17] 2. 나.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과 동일 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서 이미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기재하고 운영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개정안 [별표17] 2. 나. 다)및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뉴얼과 동일 사항일 뿐만 아니라 역세척 설계/여과재 교체 설계 및 자동방식/수동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제시한 구조와 작동법 외 대안이 없으므로 사업자별 어느 시설과 방식을 택하더라도 준수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개정안 준수 의무가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의 최근 5년간 여과형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개정안 [별표17] 2. 나. 다) 관련, 현행 역세척 설비 설치 의무 사례 개정안 [별표17] 2. 나. 라) 관련, 현행 여과형 시설 자동 방식 고려 사례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4.5%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분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A5-3. 법령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역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

항 목		내 용
규제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
규제대안		•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비점오염원 설치·운영하는 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기준 강화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일반국민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편익] •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효율성 증가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 매뉴얼에 따라 기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부담이 발생함 • 강화된 규제부담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움
	비용·편익 지표값	• 해당 사항 없음
	기간/할인율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 정성
	기타	• 특이사항 없음

A6-1.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사무명 : 야생동물 영업시설의 시설 기준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3]
규제대안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일반국민 등
	비용식별/ 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 준수(기타)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비용]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감염병 예방 및 국내생태계 보호)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
	편익식별/ 구분	•-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야생동물 영업자(475개소 추정)의 경우 1) 설비시설을 구비하고 운영관리 등의 의무와 2) 공간분리를 위한 칸막이 등 설치 부담 등의 규제비용이 발생함 - 다만, 1) 영업 유형 및 업체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대상 및 수량이 다르며, 운영 부담 등이 발생하는 비용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2) 규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시설·설비의 대상과 수량이 야생동물 영업 유형 및 업체의 규모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일부 영업장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대상자 및 단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성분석함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비용]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관리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야생동물 유래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 등의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비용·편익 지표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475개소 • 파티션 단가: 30,800원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분석
	기타	

A6-2.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사무명 :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11, [별표8의14]
규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담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익식별/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자실적 보고 등> → 영업자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서류 작성/보고 등 비용 발생 가능 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휴업/폐업신고서에 따른 야생동물의 <적절 처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리 결과 보고> → 적절 처리 결과의 보고 비용 발생 가능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 → 현재도 야생동물 개체관리 기록 혹은 유사기록 관리 중 → 추가 비용 없음 <판매계약서 제공> → 소요시간 특정이 어렵고, 계약서 작성 관련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비용 미발생
	비용·편익 지표값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기간/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4.5%
	균등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분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A6-3.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규제사무명 :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 제2항 및 제3항
규제대안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야생생물 영업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일반국민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야생생물 영업자 - 영업자의 교육이수(정량, 교육훈련, 직접)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일반국민 - 생태계보호 및 야생생물 질병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개선(정성, 교육훈련)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 -
	편익식별/구분	• -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 교육비용, 교육형태 : 현시점 기준 미확정 → 비대면 온라인녹화 교육으로 진행되는 <2025년도 동물보건사 필수 교육>을 기준으로 단가 적용 • 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 기회비용의 경우 개별 영업자의 시간당 임금을 파악하기 어렵고 비대면교육으로 진행될 경우 1년 동안 3시간의 교육을 수시로 수강하거나 비업무시간에 수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함
	비용·편익 지표값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인건비 시간 당 단가 = 10,030원/시간
	기간/할인율	• 10년 / 4.5%
	균등순비용	• 14.29 백만원
	기타	• 해당사항 없음

A7-1. 법령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사무명 :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

항 목		내 용
규제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규제대안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피규제 일반국민] •일반국민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 영업허가 신청(직접, 기타, 정량) [피규제 일반국민] •일반국민 - 취급 규모 기준의 야생동물 영업 및 관리 강화(정성,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 -
	편익식별/구분	• -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 영업 종류별 허가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등이 유사함에 따라 유의할만한 비용 부담 없음 • 본 개정안에 따라 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인원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는 업체 규모 또는 복수 영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허가신청 및 첨부서류 마련에 관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비용·편익 지표값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기간/할인율	• 10년 / 4.5%
	균등순비용	• (정성)
	기타	• -

A8-1. 법령명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 규제사무명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안 별표)
규제 대안		•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피규제기업·소상공인] •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비용식별/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기타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일반국민
	편익식별/구분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환경오염예방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공제조합 분담금 증가분에 대한 이자액 - 24년 공제조합별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폐기물 분야의 평균 처리단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개정안 적용 기준의 분담금과 이자액을 산출 • 보증보험사 납부 보험료 증가액 - 24년 연간 보증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균 처리단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개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연간 보증보험 보험료를 산출 •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를 신설하여 1,000원으로 적용 - 단, 비고2를 통하여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처리단가 0원 적용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현실적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액 확보로 방치폐기물 발생 시 신속 처리가 가능하므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대
	비용·편익 지표값	• (현황자료 및 지표값은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기간/할인율	• 10년/4.5%
	균등순비용	• 797.16 백만원
	기타	• -

B1-1. 법령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사무명 : 폐기물부담금 검 품목 삭제

항 목		내 용
규제 조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규제 대안		• 폐기물부담금 검 품목 삭제
피규제자	비용 부담자	• 해당 사항 없음
	비용식별/ 구분	• 해당 사항 없음
이해 관계자	편익 수혜자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검 제조·수입업자
	편익식별/ 구분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편익] • 검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 폐지(비용절감)
분석의 가정 및 결과	분석의 가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편익] • 검 수입·제조업자들에게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함에 따라, 2025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편익 발생 • 검 수입·제조업자는 총 34개소이며(2024년 기준), 최근 5개년도 검 폐기물부담금 평균 징수액은 2,307,963,002원임 • 2025년부터 해당 금액만큼 연간 절감 편익이 발생함
	비용·편익 지표값	• 2020년-2024년 5개년 평균 검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 2,307,963,002원/년
	기간/할인율	• 10년/ 4.5% 적용
	균등순비용	• -2,028.84(백만원)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부록A.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 규제 신설·강화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2.규제조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3.위임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11.28~2025.01.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기법·물법 등 매체별 법령에서는 업종특성이나 사용 연료의 특성과 상관없이 배출기준을 설정, 업종별로 규제부담 상이 ○ ‘171.1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는 업종별 적절한 환경관리 노력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환경관리 방식을 채택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허가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재검토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기술개발 등을 반영한 통합허가 재검토를 위해서는 최대배출기준 개정이 필요함 ○ 최적가용기법 2기 기준서에 따라 변경된 BAT-AEL 값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발전·폐기물소각·유기화학 등 8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변경 및 보일러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신설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증기, 폐기물소각, 유기화학, 철강, 비철금속, 석유정제, 무기화학, 비료질소 제조업 내 주요 시설에서 배출되는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개정 및 신설 - (신설) 보일러 시설(공통), 포름알데히드(발전·소각 업종),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불소화합물(비료 제조업) 기준 - (개정) 질소산화물,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염화수소, 염화비닐, 스틸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암모니아, 아연화합물, 황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8개 업종의 17개 물질의 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자) 통합관리사업장 ○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시민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통합관리사업장	통합관리사업장 약 1400개소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시민단체)	국민 전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오염배출 특성 및 농도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기준을 설정, 최적의 기준 설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 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미적용		0		0
15. 규제 정비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3조, 별표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1. (현행과 같음)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1)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 터빈)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6)	<삭제>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6)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3(6)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1(4)			
황 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 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100(6) 80(6)	<삭제>		

현 행			개 정 안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질소 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0(6) 70(6)	질소산 화물 (ppm)	<삭제>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 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80(15) 43(4)		가) 일반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 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시설(2015 년 1월 1일 이후 2019 년 12월 31일 이전 설 치시설)	38(4)
	(신 설)		폼 알데히 드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2) (현행과 같음)		
오염물 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오염물 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현 행			개 정 안		
		(표준산소농도)			(표준산소농도)
먼지 (mg /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삭제>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황산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30(12)	삭제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30(12)			

현 행			개 정 안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30(12)			
질소산화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70(12) 90(12) 70(12) 90(12) 70(12) 70(12)	삭제		
일산화탄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50(12) 200(12) 50(12) 200(12) 50(12)	삭제		

현 행			개 정 안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200(12) 50(12)			
염화수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15(12) 20(12) 15(12) 20(12) 15(12) 20(12) 15(12)			
(신 설)			불소 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7(12) 1.9(12)
(신 설)			납 화합물 (mg)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0.16(12) 0.36(1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Sm ³)	로그람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0.18(12)
	(신 설)		크롬화 합물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람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0.15(12)
	(신 설)		(mg /Sm ³)		0.19(12)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나)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람 이상 2톤 미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30(12)
황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28(4)
질소 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5(4)

3)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삭제>		
<삭제>		
질소 산화물 (ppm)	<삭제>	

현 행			개 정 안		
	(2) 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70(12)	<삭제>		50(12)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 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 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삭제>		50(12)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 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가) 현행 라) 이동		121(4)
	마)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 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삭제>		
일산화 탄소 (pp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50(12)	<삭제>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 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시설)	50(12)	일산화 탄소 (ppm) <삭제>		
	다)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 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48(12)	<삭제>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	45(12)	가) 현행 라) 이동		45(12)

현 행		개 정 안	
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마) 부타디엔 고무,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 또는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신 설)	200(12)	<삭제>	
		가) 스티렌 모노머 제조시설	16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시설	16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u>26(15)</u>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신 설)	25
	(3) <u>코크스</u>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u>20</u>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0

4)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u>16(15)</u>
	<삭제>	
	(2) <u>석탄코크스</u> 제조시설 중 연소 시설	12(7)
	(3) <u>석탄코크스</u>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u>12</u>
	<삭제>	

현 행			개 정 안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15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 마시설	40			
	라) 산재생시설	44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u>193(15)</u>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u>100(15)</u>
질소산 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 치한 시설)	200(15)	<삭제>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 치한 시설)	200(11)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200			
염화수 소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삭제>		
불소화 합물 (pp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3	<삭제>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암모니 아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5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리 처리시설	150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5)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현 행			개 정 안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황 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0	<삭제>		
질소 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103	<삭제>		
(신 설)			납 화합물 (mg/Sm ³)	가)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신 설)			아연 화합물 (mg/Sm ³)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3
(신 설)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산알칼리처리 시설	150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	19(4)

6)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삭제>	

현 행			개 정 안		
(mg /Sm ³)	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19(4) 28(12)	(mg /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19(4) 28(12)
황 산화물 (ppm) (신 설)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 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 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34(4) 202(8) 180(4)	황 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 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 산 재생시설 <삭제>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 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만 해당한다)	120(4) 180(8) 10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산 회수시설(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5(12)		<삭제>	<삭제>
질소 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 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 톤미만인 시설만 해당한 다)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148(4) 141(12)	<삭제>		
황화 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황화 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4)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4)

현 행			개 정 안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30(12)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암모니아 (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46	<삭제>		
벤젠 (ppm)	폐수소각시설	7	<삭제>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염화수소 (pp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질소산화물 (pp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93
	다)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신 설)	145
(신 설)		

7)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삭제>		
질소산화물 (ppm)	<삭제>	
	가)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35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 폐가스 소각시설	50(12)
먼지 (mg/Sm ³)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25

현 행			개 정 안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0
(신 설)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160(8)
(신 설)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60
(신 설)			벤젠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신 설)			아연화합물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신 설>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일산화탄소 (ppm)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인 시설)	48(12)
시안화수소 (ppm)	도료 제조시설	3
벤젠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5

현 행	개 정 안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5
	다) 도료 제조시설	5
포름알데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6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6
탄화수소 (ppm)	가) 염료 제조시설	180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180
	다) 도료 제조시설	180
	라) 플라스틱·고무첨가제 제조시설	180
크롬화합물 (mg/Sm ³)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0.3

8)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황산화물 (ppm)	황산 제조시설	218(8)
질소산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68
	나) 희질산 제조시설	195

9) 현행 8) 내용 이동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암모니아 (ppm)	(신 설) 질 산암모늄(초안) 제 조시 설	12	<삭제>		
불소화 합물 (ppm)	(신 설) 인 산 제 조시 설	3	<삭제>		
	(신 설)		먼지 (mg /Sm3)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 설	25

9)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질소 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 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 설	144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 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 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 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10) 현행 9)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질소 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 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 설	100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 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 설 및 표면처리시설	3
탄화 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35 100

현 행			개 정 안		
불소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불소 화합물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2
페놀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페놀 화합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2
11)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12)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1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12) 현행 11) 이동 12) 현행 12) 이동 14) 현행 13)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크롬 (mg /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크롬 화합물 (mg /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페놀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페놀 화합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14)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신 설)			15) 현행 14) 내용 이동 16) 영 별표 1 제4호(기초화학)~22호(시멘트)에 따른 업종(보일러)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현행	개정안		
	먼지 (mg/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유연탄 사용시 설	10(6)
	황산화물 (ppm)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석유코크스 사 용시설	91(6)
	질산화 물 (ppm)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 설치시설	60(4)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 전 설치시설	38(4)
<p>비고</p> <p>1. ~ 2. (생략)</p> <p>3. 가목1)부터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p> <p>4. 가목1)부터 14)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p>	<p>비고</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p> <p>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p>		

현 행	개 정 안
준을 말한다. 5. ~ 7. (생략)	준을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7.1.1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는 업종별로 적절한 환경관리 노력의 범위*을 정하고,
 -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오염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群
 - * 구체적인 기술이라기 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환경관리 기본원칙'의 개념
- 적정 노력을 기울였을 때 준수할 수 있는 배출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는 맞춤형 환경관리 방식을 채택
 - * BAT 적용시의 배출농도의 범위(BAT-AEL; BAT Associated Emission Level)에 근거하여 최대 배출기준 설정(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 이에, 적절한 환경관리를 적용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오염배출 특성 및 농도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최적화된 배출기준을 설정·적용 필요
 - * 연차적 제도 시행(2017~2023년까지 20개 업종 순차 시행)에 따라 2017~2023년 업종의 기준은 旣 규정. 금번 개정안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을 현행화하는 개정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최대배출기준 적용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대안2	대안명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강화
	내용	기존 최적가용기법(BAT)에 기반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설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사업장(대기, 수질 1·2종)이 더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현행 유지는 곤란 (입법 미비)
규제대안1	○ 제도 시행 이후 기술개발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등 통합관리 취지에 부합	○ 기술 개발 등으로 최적가용기법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발전된 기술 적용의 유인책이 적어짐
규제대안2	○ 기존 관리방식 유지로 현장의 혼란 최소화	○ 획일적 기준 설정 등 기존 한계 답습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산업계	해당업종별 실무협의체(업종별 업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등 수차례의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BAT-AEL) 등 의견 수렴	기준안에 대한 이견 없음을 확인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1) 기술 여건 발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재검토 등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등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채택 곤란
- (대안2) 「환경오염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용하나 통합허가를 받지 않는 배출규모가 적은(대기 또는 수질 2종 미만) 사업장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기준 역전으로 채택 곤란

3. 규제 목표

- 오염배출 특성 및 농도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 기준을 설정, 최적의 기준 설계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도입하면 누구든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임
- * 적정 기술을 도입한 모든 시설의 실배출 농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기준을 설정
 - 특히, 업종별 기술현황 조사(1년) 및 이해관계자 협의*(1년) 등 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 규정안을 마련,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
- * 업종별 기술작업반(TWG; Technical Working Group, 업종별 현장담당자, 환경전문가 등 281여명)을 구성, 해당 업종에서의 환경관리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대기법, 물법 등 7개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기존 제도와 중복성은 없고, 기존 허가체계를 통합한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 통합허가를 받는 경우 대기법, 물법, 폐기물법 등에 따른 10개 인허가 불필요
 - 경쟁영향평가
 - 동종 업종에 대하여 동일 기준 적용하므로 규제 도입에 따른 경쟁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업종 대형사업장(대기·수질 1·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규제자 선정 시 이미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적용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배출시설의 규모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작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허가배출기준 개정은 고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불필요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업종별 기술현황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규정으로, 현장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

- 일몰설정 여부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차단·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환경 및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기준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유연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배출기준은 개별법의 배출시설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는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시설 성능과 경제성을 평가, 적정 배출수준으로 BAT-AEL 제시

○ 타법사례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오염물질 등 오염물질 종류별로 시설별 또는 지역별 기준 설정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허용기준(예시) >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 ₂ 로서) (ppm)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 ₂ 로서) (ppm)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 현행 매체별 배출허용기준 >

구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잔류성
오염물질	암모니아 등 가스상 물질 18개 먼지 등 입자상물질 9개	BOD 등 31개 오염물질	소음, 진동	복합악취 및 암모니아 등 22개 지정물질	다이옥신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배출시설 중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시설별 (예 : 소각, 비료, 보일러 등)	지역별 (청정, 가, 나, 특례지역)	지역별 (공업, 상업, 주거지역 등)	지역별 (공업, 기타지역)	다이옥신 배출시설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오염물질별로 실배출 농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장에서 준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를 거쳐 최대배출기준을 개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국립환경과학원(통합환경관리연구과),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등 관련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최대배출기준 개정을 하더라도, 既운영중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자가측정 및 정기·수시검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면 되는 사항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시행('20.1.1.)
- 업종공통시설 기준서 발간('21.12)
-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 의결('22.8.11)
-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2기 기준서 발간('22.12)
- 폐기물 소각시설 2기 기준서 발간('22.12)
-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 의결('23.7.13)
- 철강제조업, 유기화학 2기 기준서 발간('23.12.)
-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 의결('24.3.14.)
-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 의결('24.6.25.)

2. 향후 평가계획

- 기존 매체별 법령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율 대비 개정안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율의 개선 비율을 주기적으로 평가
- * 정기·수시검사, 기록·보존, 연간보고서 등을 통해 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 필요 시 정비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5조 및 제33조, 별표8	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정

4. 종합결론

- 개정안은 현행 매체별 법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배출기준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대배출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관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
- 또한, 사업장의 실배출 농도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기준안을 마련,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비용이 미미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개인보호장구 보관 및 유지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활동제목	대기오염물질 최대배출기준 준수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분석년도 = 2025</p> <p>○ 규제시행년도 = 2025</p> <p>○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사업장 차원의 시설개선 및 관리 노력이 이미 수행되었으며, 5년 주기로 허가 조건이 재검토되는 통합허가제도 특성 상 향후에도 기준 강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장의 노력에 따른 부담은 발생하였으나, 해당 노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 정성분석 시행함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적용 시기</td> <td>[‘17-’20]</td> <td>➡</td> <td>[‘18-’21]</td> <td>➡</td> <td>[‘19-’22]</td> <td>➡</td> <td>[‘20-’23]</td> <td>➡</td> <td>[‘21-’24]</td> <td>➡</td> <td>[‘23.7-’27.6]</td> </tr> <tr> <td>업종 (20개)</td> <td>발전 증기공급 소각</td> <td>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수지 석유화학</td> <td>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td> <td>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td> <td>플라스틱, 섬유염색· 주류,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td> <td>시멘트</td> <td colspan="5"></td> </tr> <tr> <td>사업장수 (1,318개)</td> <td>294개</td> <td>239개</td> <td>184개</td> <td>161개</td> <td>429개</td> <td>11개</td> <td colspan="5"></td> </tr> </table>						적용 시기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23.7-’27.6]	업종 (20개)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염색· 주류,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사업장수 (1,318개)	294개	239개	184개	161개	429개	11개					
적용 시기	[‘17-’20]	➡	[‘18-’21]	➡	[‘19-’22]	➡	[‘20-’23]	➡	[‘21-’24]	➡	[‘23.7-’27.6]																															
업종 (20개)	발전 증기공급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염색· 주류,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시멘트																																				
사업장수 (1,318개)	294개	239개	184개	161개	429개	11개																																				

<표 참고-A>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5 제1호가목 10)영 별표1 제15호에 따른 업종의 질소산화물 규제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발생 여부 검토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ppm)		굴뚝수 (개)	BAT-AEL 상한값 (ppm)	비고
		현행	개정			
질소산화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144	100	35	100	추가 비용 발생 없음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25.5.

0. 일반사항

(0-1)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 본 개정안의 최대배출기준 및 비용발생 여부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됨

① 현행 최대배출기준 유지

-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음

② 최대배출기준 설정 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적용

-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개정 2022. 12. 28.>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규정 포함) 등과 같은 개별법이 본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먼저 강화>되었을 경우, 피규제자들은 먼저 개정된 개별법을 이미 준수하고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음 (<예1>, <예2> 참조)

(예1) <폐기물소각업종>의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도 <본 개정안> 보다 먼저 개정되어 <본 개정안(=소각용량 2톤 이상 경우, 50ppm) 보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의의견

개정안		수행안	수행 사유
[별표15] 최대배출기준 1)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질소산화물 (ppm)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70(12)	<input type="checkbox"/>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시 사업장 부담 가중 문제 ○ '17.1.1 시행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은 현행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할 허가배출기준보다 더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범위(한국환경공단, '18.9월) 현재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최대배출기준 ○ 현행법에 따라 당시 2톤/시 이상 소각시설 원소산화물의 최대배출기준은 70ppm 이며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현재배출기준」에 따라 85%(현재 85% 기준 폐지)를 적용할 경우 현재배출기준은 52.5ppm 산정되나, 대기법(50ppm)보다 완화된다는 이유로 대기법 기준을 적용(50ppm×85%)하여 대부분 업체가 42.5ppm 으로 적용받고 있음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칭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일산화수소 (ppm)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2(12) 15(12)	
	다) 지칭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출처)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의의견>, 2025.1.

(예2) 석유정제업종 의견서

- 현재도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법>을 중복 적용 받고 있음
- 'BAT-AEL' 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분리 요청
 - 과학적/통계적으로 산정하는 BAT-AEL 이 배출허용기준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로 인해 대기법과 통합법을 중복적으로 규제 받고 있는 상황인 바, 제도 개선을 요청
 - * 차기 BAT-AEL 설정 시 반영 필요

(출처) 대한석유협회 황** 팀장, 2025.02.10.~13. 02-3775-0520, 비대면

<참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규정이 타 개별법 보다 더 <강화>된 경우 <환경오염시설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당초 개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법」을 제정한 취지는 환경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환경복지를 제고함이 목적임
- 다만, 입법 시차로 인하여 타 개별법 규정이 먼저 강화될 경우, 사업장들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음

	<p>③ 최대배출허용기준 기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의 경우에는 ㉠ ㉡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 가능 - ㉠ [업체 최대배출값 ≤ 개정안 최대배출기준] : 규제비용 미발생 <p>※ 전자부품제조업(영 [별표1]제15호)의 질소산화물의 최대배출기준 강화 (144ppm→ 100pp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376호, 2025년 05월 30일)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현행 대비 <강화>됨 - 해당 업종 내 피규제대상업체들의 실제배출량 최대값이 100ppm으로 개정안 최대배출기준(=100ppm)을 초과하지 않음. 따라서 재입법예고에 따른 규제개정안에 의한 규제비용은 미발생 <p>(주) <전자부품제조업 질소산화물 배출량>, 2021-2022년의 개별 배출시설별 실제 배출량 자료.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됨. 2024년 논의 시점에 활용 가능한 최신 연도별 자료 활용</p> <p>(자료) <전자부품제조업 질소산화물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2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업체 최대배출값 > 개정안 최대배출기준] : 규제비용 발생 → <표 1-1> 참조
--	--

<표 1-1> <2020-2021년 실제배출량> 적용 시 업체의 배출값과 개정안 최대배출기준 비교						
	전체 사업장 수 (개)	전체 굴뚝수 (개)	2021-2022년 실제배출량이 개정안 최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			
			전체 굴뚝수	사업장 구분	굴뚝수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폐기물 소각)						
납화합물(ppm)	8	17	2	2-가	1	
				2-나	1	
크롬화합물(ppm)	6	7	1	2-다	1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에 따른 업종 (보일러 업종 공통)						
황산화물 (ppm)	1	1	1	16-가	1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무기화학)						
먼지(mg/Sm ³)	5	9	6	7-가	3	
				7-나	3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유기화학)						
포름알데히드 (ppm)	가)비스페놀A 제조시설	4	36	2	8-가	2
	나)아스페놀 또는페놀제조시설	3	34	2		2
계			14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2025.4.						
(주) 개별업체명은 익명 처리함						
(주)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유기화학)의 경우,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배출구임						
④ 단순 용어 변경						
- <개정안 [별표15] 13)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의 규제조문 변경의 경우, 현행 조문의 오염물질명인 <크롬>·<페놀>은 <크롬화합물>·<페놀화합물>의 기재 오류임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정정함 → 현행 대비 개정안의 규제 대상 범위는 동일함 →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 <표 1-2> 참조						

<표 1-2> 용어 정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14) 현행 13)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 배출기준 (표준산소 농도)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 배출기준 (표준산소 농도)
크롬 (mg/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크롬 화합물 (mg/Sm3)	주조공정의 용융·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0.3
페놀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페놀화합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3

⑤ 본 개정안에서의 <삭제> 조문

- 본 개정안에서 삭제된 업종별 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배출기준이 삭제되어 배출량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최대배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삭제> 조문의 경우에는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담에 변동사항이 없음
(출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5] 비고 3.
- 석유정제업종의 질소산화물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 경우에도 석유정제업종의 배출량 위반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피규제대상자 수 등의 변화 없음

	<p>(0-2) 본 개정안 마련에 적용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p> <p>(가) 본 개정안 마련에 적용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논의 시점에 <u>활용 가능한 최신</u> 연도별 자료 활용 - 이후 연도 기간 동안 설비/운영 개선 등 노력 수행됨 ○ <부록> 등에서 제시된 규제비용발생 가능 굴뚝수는 <2020-2021년 시점 기준 실제배출량>과 <개정안(현시점=2025년)>의 배출허용량을 비교한 결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본 개정안 마련 시점인 <2024년>에는 이미 신설비/신기술 적용 등이 시행됨 <p>(나) 본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관계전문가 의견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2024년>에 각 <학계 및 업종별/사업장 관계자>들로 <작업반> 운영 → 개정안 배출허용기준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이 <u>준수 가능한 수준의 기준</u>을 개정안에서 설정함 <p>(다) 업종별 피규제자들의 환경규제 준수 노력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1-1>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폐기물 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화합물(ppm) 및 크롬화합물(ppm)의 경우, 소각로 투입 폐기물의 물량/성상 조정 등을 통하여 개정안 준수 가능 (출처)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오**팀장, 인터뷰, 2025.3. - 규제비용 <u>미발생</u> ○ <표1-1>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에 따른 업종 (보일러, 업종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활용가능한 2020-2021년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16-가 업체의 황산화물 배출량이 개정안 배출기준 초과로 나타남 - 다만, 16-가 업체는 통합허가제도 시행 이후 본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대기부문의 배출기준을 위반한 사례 없이 준수하고 있음
--	---

	<p>○ <표1-1>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무기화학)</p> <p>- 7-가 업체의 경우, 2024.4.5. ~ 2024.5.4. 기간에 공장 전체 보수작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배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확인 결과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적정 수리됨을 자체 확인하였다고 함. 아울러, 환경규제기준 등에 대한 근무자 교육 실시 사례 있다고 밝힘</p> <p>(자료) 환경부 보유 자료, 24.07.</p> <p>○ <표1-1>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유기화학)</p> <p>- 8-가 업체가 보유한 비스페놀과 아세톤 제조시설임</p> <p>- 8-가 업체는 2023년 <대기> 부문 오염방지시설 <신설> 공사 시행함</p> <p>(자료) 「2024년(2023년 기준)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현황」, 한국환경산업협회 내부자료 확인, 2025.4.</p> <p>(라) 본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여부</p> <p>○ <표 1-1> 등에서는 2020-2021년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 기준을 초과한 대상수를 산정하였으나, 현시점(2025년)에서는 신설비·기술 적용 등으로 설비·운영 개선 등이 이루어짐</p> <p><부록></p> <p>1. 통합환경관리제도</p> <p>(1-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p> <p>○ 관련 법률</p> <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p> <p>○ 개념</p> <p>-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통합관리사업장)으로 통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환경관리방식</p> <p>○ 목적</p> <p>-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p>
--	---

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7개 개별법 10개 인·허가·신고를 <통합>하여 운영함
- ※ 7개 개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관리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개별법 vs. 환경오염시설법 허가기준 비교 >

(개별법)		(환경오염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허가배출기준 설정 ▪ 사람의 건강,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적정 수립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2024. 12. 30.(월).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169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 특징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 Best Available Technique : 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현황

○ 대상 업종 및 규모

- 20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20개 업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0개 업종

* 대기 1종·2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 수질 1종·2종 : 일일 폐수배출량 700m³ 이상 사업장

○ 제도 운영 현황

- 2017년부터 개별 사업장들을 통합허가제도에 편입하였으며, 2024년까지 진행한 결과 19개 업종 1,307개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마무리 함

- 2024년을 마지막으로 추가 업종 및 사업장 예정 없음

<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년도	사업장 수 (개)	업종
2017-2020	294	발전·증기·소각 업종
2021	239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2022	184	정유·비료·화학 업종
2023	161	제지·전자 업종
2024	429	반도체·플라스틱·섬유염색·도축·알콜·자동차부품 업종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 2024. 12. 30.(월).

(자료)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수>, 환경부 내부 자료, 2025.6.

2.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과 <개정안> 비교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2-1-1) 개정안 항목별 규제비용 발생 식별

○ <표 B-1> 참조

<표 B-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가능성 있는 업종 및 사업장 식별

개정안 유형	규제비용 발생 여부	비고
기존 기준 <유지> 경우	미발생	규제 변화 없음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사항을 본 개정안에서 반영한 경우	미발생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개정 사항을 본 개정안에서 반영한 경우 → 본 개정안에서는 이미 개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므로 규제비용 <u>미발생</u>
개별사업장의 최대 배출농도가 개정안 기준 <u>상회</u> 경우	<u>발생</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하고 있으므로, <u>약품비 등 운영관리비용</u> 추가 발생 가능성 있음

(2-1-2) <2020-2021년> 배출량과 <개정안> 비교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 규제비용 발생 2 요소 : ㉠ 시설개선비용 ㉡ 운영관리비용

<표 B-2> 배출농도 개선 관련 비용 발생 요소

항목	규제비용 발생 여부	비고
시설 개선	발생 가능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개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등에 따른 오염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설 들임. 따라서 오염배출최소화를 위한 시설(인프라)은 이미 갖추고 있음. 다만, 시설 보수작업 및 개선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약품비 등 운영관리 비용	발생 가능	개정 배출허용기준 충족을 위한 약품비 등 추가 발생 가능성 있음

(2-2) <2020-2021년> 배출량 적용시, 개정안에 따른 운영관리비용 추가액(=규제비용) 추산

- 이미 가동 중인 시설들이고 기존 규제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시설의 추가는 불필요. 다만, 약품비 등의 운영관리비 증가는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대한석유협회 비대면 조사 결과, 본 개정안 이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여 운영 중 (2025.02.10.)
- 만약 <2020년-2021년 배출량> 대비 본 <개정안>에 따라 운영·관리 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대상은 다음 <표 1-1>과 같음 → 그러나, 본 개정안 기준 설정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현시점 기준 규제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배출기준 개정안을 설정함
 - <표 1-1>의 자료는 <부록 1A> 참조

<부록 1A> <2020-2021년> 자료 기준 업종별 규제비용발생 가능 항목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폐기물 소각)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비고	현행 유지/완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	배출값		비용 발생 여부	사업장 수	전체 굴뚝 수	위반 가능 굴뚝 수
		현행	개정				평균	BAT-AEL 상한값				
납화합물 (ppm)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 시설	-	0.18	제정			0.03	0.24	발생	8	17	2
크롬화합물 (ppm)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소각시설	-	0.19	제정			0.04	0.2	발생	6	7	1

(자료) <배출값>, 2021-2021년 실제배출량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제공

(주) <배출값> 자료는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에 따른 업종 (보일러 업종 공통)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비고	현행 유지 /완화	대기환 경보전 법시행 규칙 [별표 8]	배출값		비용 발생 여부	사업장 수	전체 굴뚝 수	위반 가능 굴뚝 수
		현행	개정				평균	BAT- AEL 상한값				
황산화물 (ppm)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석 유코크스 사 용시설	-	91	제정			100.9	235.8	발생	1	1	1

(자료) <배출값>, 2021-2021년 실제배출량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제공

(주) <배출값> 자료는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무기화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비고	현행 유지 /완화	대기환 경보전 법시행 규칙 [별표 8]	배출값		비용 발생 여부	사업장 수	전체 굴뚝 수	위반 가능 굴뚝 수
		현행	개정				평균	BAT- AEL 상한값				
먼지 (mg/Sm ³)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 응, 탄화 및 발전시설	-	20	제정			8.6	36	발생	5	9	6

(자료) <배출값>, 2021-2021년 실제배출량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제공

(주) <배출값> 자료는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유기화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비고	현행 유지 /완화	대기환 경보전 법시행 규칙 [별표 8]	배출값		비용 발생 여부	사업장 수	전체 굴뚝 수	위반 가능 굴뚝 수
		현행	개정				평균	BAT- AEL 상한값				
포름 알데 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 이 제조시설	-	5	제정			0.23	13.97	발생	4	36	2
	나) 아세톤 또 는 페놀 제조 시설	-	6	제정			0.24	13.97	발생	3	34	2

(자료) <배출값>, 2021-2021년 실제배출량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제공

(주) <배출값> 자료는 2020-2021년의 실제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에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개정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작업 시행

□ 편익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편익항목	환경오염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19개 업종 1307개 사업장에 대하여 매체별 허가를 통합하고 허가 창구를 환경부로 단일화하는 등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한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구허가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최적가용기법의 현행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음 ○ 본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배출 총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은 국민건강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이같은 국민들의 건강개선에 따른 편익을 화폐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움 ○ 이에 정성분석 실시함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1.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2.규제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 별표5의10										
	3.위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1.24~2025.03.0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7.규제내용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에 공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시멘트 제조사 8개소 10개 공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 colspan="2">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시행 중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식을 통일하여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 규제 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 14조의 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 13조의 6제 1항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의 사용량 3. 폐기물의 원산지 국가 4. 별표 5의 3의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p>② 법 제 13조의 6제 2항에 따른 정보공개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 분기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별지 제 57호의 5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법 제 45조제 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별표 5의 10에 따른 정보공개 표기를 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 2항제 1호에 따라 폐기물 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조(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 14조의 14제 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 3. (생략)</p>	<p>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10] <u>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기(제14조의14제2항 관련)</u></p> <p>1.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표기를 해야 한다.</p> <p>가. 정보공개 표기</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th> </tr> <tr> <td style="padding: 5px;">본 제품은 생산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QR 코 드</div> </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원료: • 보조연료: • 기타: </td> </tr> </table> <p>나. 정보공개 표기방법</p> <p>1)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하고,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게 표기한다.</p> <p>2) <u>제조사 인터넷 주소 및 QR 코드는 제14조의14에 따른 가장 최신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u></p> <p>3) <u>폐기물 종류는 대체원료, 보조연료, 기타로 구분하고,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u></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 3. (생략)</p>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본 제품은 생산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QR 코 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원료: • 보조연료: • 기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본 제품은 생산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QR 코 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원료: • 보조연료: • 기타: 							

현 행	개 정 안
<p>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p> <p>가. ~ 카. (생략)</p> <p>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p> <p><u>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u>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u></p> <p><u>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u></p> <p>(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p>	<p>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p> <p>가. ~ 카. (생략)</p> <p>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삭 제></p> <p>3)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p> <p>나) <삭 제></p> <p>다) <삭 제></p> <p>4)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p>

현 행	개 정 안																																																																												
<p>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p> <p>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p> <p>6)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신 설></p>	<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 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right;">(단위)</p> <p style="text-align: center;">(년 분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정보 제공자</th> <th colspan="2">상호(명칭)</th> <th colspan="2">폐기물 사용량</th> <th colspan="2">폐기물 사용비율</th> <th colspan="2">폐기물 재활용률</th> <th colspan="2">폐기물 재활용률</th> </tr> <tr> <th>종류(사업장)</th> <th>주소(사업장)</th> <th>(톤/분기)</th> <th>(톤/분기)</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①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td> <td>② 폐기물의 위탁자 구분</td> <td>③ 폐기물의 반입장 (톤/분기)</td> <td>④ 폐기물의 원산지 국가</td> <td>납 (kg/ks)</td> <td>구리 (kg/ks)</td> <td>카드뮴 (kg/ks)</td> <td>리튬 (kg/ks)</td> <td>수은 (kg/ks)</td> <td>염소 (%)</td> <td>저위발열량 (kg/ks)</td> </tr>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계</td> </tr> <tr> <td>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분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방법</p> <p>1. ①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이 통용될 내장명칭에 따른 폐기물 명칭(소분류)과 호환번호(00-00-00)를 적습니다. 2. ②항은 폐기물을 위탁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를 가 나 다 순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p> </div>	정보 제공자	상호(명칭)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 사용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률		종류(사업장)	주소(사업장)	(톤/분기)	(톤/분기)	(%)	(%)	(%)	(%)	(%)	(%)	①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② 폐기물의 위탁자 구분	③ 폐기물의 반입장 (톤/분기)	④ 폐기물의 원산지 국가	납 (kg/ks)	구리 (kg/ks)	카드뮴 (kg/ks)	리튬 (kg/ks)	수은 (kg/ks)	염소 (%)	저위발열량 (kg/ks)	계											연간											분기											연간										
정보 제공자	상호(명칭)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 사용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률																																																																				
	종류(사업장)	주소(사업장)	(톤/분기)	(톤/분기)	(%)	(%)	(%)	(%)	(%)	(%)																																																																			
①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② 폐기물의 위탁자 구분	③ 폐기물의 반입장 (톤/분기)	④ 폐기물의 원산지 국가	납 (kg/ks)	구리 (kg/ks)	카드뮴 (kg/ks)	리튬 (kg/ks)	수은 (kg/ks)	염소 (%)	저위발열량 (kg/ks)																																																																			
계																																																																													
연간																																																																													
분기																																																																													
연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지속 제기됨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멘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내용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서식을 통일하여 시멘트 제조사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하고,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폐기물이 사용된 사실을 간략히 공개
규제대안2	대안명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공개
	내용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서식을 통일하여 시멘트 제조사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기를 확인하고 폐기물이 사용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일반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높음	시멘트 제조사는 폐기물 사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기를 수정 인쇄해야 하므로 시멘트 제품포장지 재고관리 필요
규제대안2	시멘트 제조사는 폐기물 사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인터넷에만 수정 게시하면 되므로 시멘트 제품 포장지 재고관리 불필요	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공개 표기가 없다면 폐기물이 사용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일반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낮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환경노동 위원회, 자원순환업생대 위, 시멘트업계, 전문가	'24.06.27, 국회, 입법공청회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우려 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필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 정
시멘트문제범대 의, 시민단체, 전문가	'24.09.27, 국회, 토론회	현행 폐기물 정보공개 내용 은 시멘트 제조사 홈페이지에 서 찾기가 어려워 일반국민의 정 보접근성이 저해되므로 개선 필 요	정보공개의 서식을 통일(별지 57호의5)하여 지자체의 홈페이 지·게시판에 공개(제14조의14 제2항)
시멘트문제 범대의	'24.10.28, 서울역, 대면회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정보 공개 필요 등	시멘트 제품 포장지의 정보 공개 방안 검토
시멘트문제 범대의	'24.12.04, 환경부, 대면회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상세한 정보공개 필요 등	정보공개의 실효성, 일반 국민의 정보접근성, 시멘트 제 조사의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
시멘트업계	'24.12.10, 서울역, 대면회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상세한 정보공개는 제조 공정상 어려움 등	하여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간 략히 공개(별표5의10)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시멘트 제조사 홈페이지에 공개 중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3. 규제목표

- 시멘트 제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정보제공을 통해 시멘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민들은 대부분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주택 등의 공간에 살면서 시멘트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음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인터넷과 포장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시멘트(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폐기물재활용업)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지속 운영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정보공개 의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정보공개 의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정보공개 의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미적용
사후 평가관리		정보공개 의무는 사전 심의·검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사후 평가·관리 대상인 측면이 있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정보공개 의무는 신기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の内容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설되는 규제 내용은 시멘트 제조사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공개의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과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공개하는 내용임
 - 인터넷 공개의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은 시멘트 제조사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중인 항목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터넷 공개의 서식을 통일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공개하는 내용은 폐기물이 사용된 사실을 간략히 적시하는 최소 수준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허가기관인 지자체는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매 분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후,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으로 추가 부담 없이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허가기관인 지자체는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매 분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으로 제출받은 후, 지자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으로 추가 부담 없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4.6.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4.6.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
- '24.9.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24.9.27.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국회 토론회

- '24.10~'25.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사항에 대하여 허가기관인 지자체에서 주기적 모니터링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대부분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주택 등의 공간에 살면서 시멘트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음
- 이에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멘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요구됨
- 따라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온라인)과 포장지(오프라인)에 공개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시행 중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식을 통일하여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인터넷 및 포장지 공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활동제목	시멘트의 포장지 및 인터넷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보 공개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1. 포장 시멘트 국내 출하량 현황			
	○ 본 개정안은 국내 출하 시멘트에 대해 적용됨			
	<표> 국내 시멘트 제품 종류별 판매 현황('23년 기준)			
	(단위 : 톤)			
		업체	벌크	포장
		A	7,765,513	276,344
		B	10,486,136	172,551
		C	5,760,559	-
		D	4,652,836	273,167
		E	3,473,703	120,727
		F	6,377,797	276,704
		G	5,651,943	165,148
		H*	-	-
		기타**	4,748,919	35,301
		* H는 非회원사로 관련 자료 확보 곤란		
	** 기타는 클링커를 수입·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 포장지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양은 전체 판매량의 2.6% 수준			
	(출처) <시멘트 국내 출하량>, 한국시멘트협회, 2025.02.			
	국내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는 8곳(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유니온)이며, 8개社(10개 공장) 모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이용해 시멘트(제품)를 제조			

	<p>2. <시멘트 제조사>의 비용 발생 요소 및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 <시멘트 제조사>의 비용 발생 요소 : ① ② ③ ① <시멘트 제조사> 의무(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분기별로 폐기물 중 중금속함량을 분석하고, 자율 양식에 따라 전산화 - (개정안) 분기별로 폐기물 중 중금속함량을 분석하고, 공통된 양식에 따라 전산화한 후 행정기관에 제출 - 전산화 한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지만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도 사용중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하는 과정으로, 작업난이도는 낮고 작업시간은 짧은 업무임. 따라서 현행 올바로시스템 담당자가 분기에 한번 입력,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man-month 등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분기별로 폐기물 중 중금속함량을 분석하고,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 (개정안) 분기별로 폐기물 중 중금속함량을 분석하고,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3년간) - 홈페이지 관리자가 1년에 2회 하던 업무가 4회로 증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다만, 1년 365일중 2일 증가한 업무에 대한 관리자 man-month 증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텍스트 데이터가 3년간 홈페이지 관리 서버에 누적되는 데이터량 및 그에 따른 전력소모량 등 또한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현행 시멘트제조사의 홈페이지 담당자가 기존 업무 작업횟수가 1년 중 2회에서 4회로 증가하고, 관련 텍스트 데이터의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기존 업무 대비 시멘트 제조사에게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정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폐기물 사용 정보를 시멘트 제품 포장지에 표기(분기별 갱신) - 개정안 시행 시 시멘트 포장지(포대)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	--

	<p>를 표기해야 하는 부담(인쇄 디자인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통상 시멘트 업체의 포장지 구매 주기가 3~6개월이고, 포장지 정보공개 표기의 적용이 시행 후 6개월인점을 고려해볼 때, 본 개정안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p> <p>- 또한, 포장지의 구매 주기(3~6개월)는 포장된 시멘트 제품이 최대 3~6개월 안에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례 시점 이전에 재고가 대부분 판매되어 소진될 것임. 그리고 그 판매량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건설공사가 많아 시멘트 수요가 높은 봄~여름 기간이 적용례 기간에 해당하여 재고소진의 어려움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p> <p>*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시멘트 제조사의 포장지 구매 주기 정보 협조</p>
--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시멘트를 사용하는 일반국민
활동제목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
편익항목	정보 접근성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본 개정안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시멘트 제품 포장지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멘트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임 ○ 다만, 이에 따른 편익을 화폐화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정성분석 함

규제영향분석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목 차>

1. 용기의 재사용 기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용기의 재사용 기준											
	2.규제조문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 제12조 제2항											
	3.위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3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감사원, '22.8. 먹는물 감사)* 먹는샘물 유통관리 미흡에 따른 대용량 먹는샘물(PC용기, 냉온수기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PC용기의 재활용 기준이나 폐기 기준이 없음(작업자가 시각 검사만으로 재사용 여부 판단) 이에 위생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폐기 규정 부재에 따라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 종사자의 후각·시각 검사만으로 폐기 여부 결정 * 10년 이상 사용중인 PC용기 28,677개('24.9월 기준) (출처) 시·도별 먹는샘물 업체 제조연월별 유통현황(환경부, 2024)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PC용기의 재사용 기한 및 폐기 요건 신설 ○ 바닥면 용기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유예기간 1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먹는물 제조·유통업체</td> <td>대용량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개소</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먹는물 중 PC용기+냉온수기를 사용·음용하는 '일반 국민'</td> <td>약 3백만명</td> </tr> </tbody> </table> <p>(자료)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먹는샘물 이용률(34.3%) 중 PC용기 판매 비중(17.0%) 고려, 대한민국 총인구 51,217,221명 (2024년 12월 기준)</p>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먹는물 제조·유통업체	대용량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개소	이해관계자	먹는물 중 PC용기+냉온수기를 사용·음용하는 '일반 국민'	약 3백만명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먹는물 제조·유통업체	대용량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개소											
이해관계자	먹는물 중 PC용기+냉온수기를 사용·음용하는 '일반 국민'	약 3백만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용기 폐기를 위한 기준연도 10년 규정마련으로 먹는물의 물리·화학적 안전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 편익 분석	피규제자	비용	편익	순비용								

	(단위:백만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 정비 계획		해당 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2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5조의2(용기의 재사용 기준) 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는 용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거 당시 먹는물이 아닌 물질이 혼입되었을 경우 2. 악취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3. 외관이 현저히 손상되었을 경우
<p><신 설></p>	<p>제12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의 제조일자를 용기의 바닥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p>
<p><신 설></p>	<p>부칙 <제2025-00호, 2025.6.23.></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는샘물 유통·보관 미흡에 따른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감사원, '22)
- PC용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조일자 표기, 사용년수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용기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폐기 의무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스파클, (주)대정 등	2024. 5. 9., 물기술인증원 서울 회의실, 업계 간담회	대용량 PC 용기의 재사용 기한(10년) 설정.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오래된 PC용기를 폐기중 ※ 스파클(약 36회, 3년사용), 동원샘물(약 35-40회, 4년 사용) 등	반영
지자체(울산,경남,부산)	2024. 5. 16., 물기술인증원 서울 회의실, 지자체 간담회	대용량 PC 용기 재사용 기한 설정에 동의함	반영
전문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경석)	2024. 7. 2., 환경부 인근 회의실, 용역 중간보고회	용기 재활용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업체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용기 세척 횟수에 따라 수질분석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검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PC용기를 사용횟수(약 40회)와 용기외관 상태를 고려하여 폐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 * 를 제외하고 대다수의업체가 평균 3~4년이면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스파클, 풀무원 등)
 -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는 해당 규제대안에 반대의견 없음
- * (사용자의 용기회수가 비협조적인 경우) 회수기간이 오래걸려 PC용기의 상태가 양호하며, 사용횟수 40회를 초과하지 않으나 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함
- 따라서 사용자의 용기회수가 비협조적인 경우, 오랜기간 동안 용기방치로 오염누적, 통 내에 쓰레기 적재 등 위생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시 폐기 의무 규정을 선택
- 또한 용기의 외관이 불량하여 오래된 PC용기로 보이는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3. 규제 목표

- 대용량 먹는샘물의 용기의 제조일자 기재 및 장기 재사용한 PC용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대국민 먹는물 안전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재사용 용기 폐기(10년)를 통해 장기간 먹는물 보관, 유통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먹물이 아닌 물질을 혼입하는 등에 대한 행위 제재는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 개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유연한 분류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캐나다 CBWA(Canadian Bottled Water Association)

1)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병은 100% 재활용 가능하고 워터 쿨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18 L 큰 병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필요하기 전에 40회 ~ 60회 재사용할 수 있음

2) 그 이상 재사용된 PC용기는 재활용하여 캐나다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자체 산업 운영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놀이터의 놀이시설, 휴대폰, 의류, 카펫에서 자동차 부품 등에 재활용 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캐나다 CBWA ^{**}	일치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47.52 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47.52		2,347.5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347.52		2,347.52
기업순비용		2,347.52	연간균등순비용	283.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를 취급하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회수·폐기처분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여 장기간 사용한 용기의 회수·폐기의 원활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 국가 예산 수반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감사원, '22년 먹는물 감사) 대용량 먹는 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강화, 대용량 먹는 샘물 재사용을 위한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대용량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수립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 의견수렴 및 행정 예고 등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4. 종합결론

- 국민 먹는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사용하는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제조일자 표시 및 사용연수 규정에 대한 제재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47.52		2,347.5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347.52		2,347.52
기업순비용		2,347.52	연간균등순비용	283.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대용량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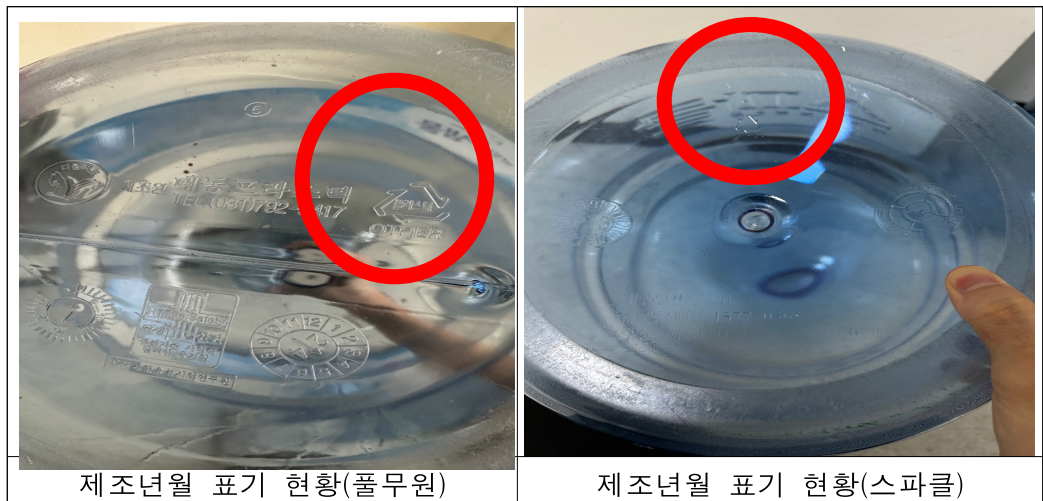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10L 이상 PC용기 사용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	
활동제목	10L 이상 PC용기 관련 규정 준수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2,347,528,63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매년 10년이상 노후PC용기 교체개수 × PC용기 가격(28,677*9,900)	
근거설명	0. 일반 사항	
	가) 10 리터 이상의 PC 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 현황	
	<표 0-1> 2024년 10리터 이상 업체별 출고량	
	업체명	10리터 이상 출고량(개/년)
	(주)동원에프앤비	9,733,281
	(주)포천그린	5,660,525
	하이트진로음료(주)	5,425,073
	(주)대산에스엠	3,595,623
	(주)하이엠샘물	3,520,767
	연천에프앤비	3,493,068
	우리샘물(주)	2,986,847
	샘소슬(주)	2,852,064
	포천음료(주)	2,442,464
	지리산청학동샘물(주)	2,125,959
	미소음료(주)	2,047,188
	(주)지리산산청샘물	2,023,547
	강원샘물(주)	1,084,708
	백봉음료	206,760
	한국공항(주)	168,106
	(주)동해샘물	56,909
(주)금산인삼골	1,044	
(출처) <시·도별 먹는샘물 업체 대상 취합 자료> (환경부, 2025.5.)		

	<p>1. 규제 내용 및 현황</p> <p>가) 규제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먹는샘물 용기(이하 PC용기)의 사용 기한 부재로 인하여 부적정 용기에 인입된 먹는샘물 유통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발생 우려 ○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소재 먹는샘물 용기의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폐기 의무화 - PC용기 수거 시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용기 교체 의무화 - 바닥면 용기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단, 1년 유예기간 적용) <p>나) 먹는샘물 PC용기 사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용기는 대용량(10리터 이상) 먹는샘물 용기로 사용 중 ○ 먹는샘물 생산업체들의 PC용기 교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시기별·외관 손상에 따라 교체하고 있음 - (예) 스파클 : 외관 손상 및 약 36회(약 3년) 사용 후 교체 - (예) 동원샘물 : 외관 손상 및 약 35-40회(약 4년) 사용 후 교체 (출처) <스파클, 동원샘물 현황> (2024.5. 업계 의견수렴) ○ 안전관리 상 부적정 먹는샘물 PC용기 발생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 구매자가 용기 반환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대부분 발생 → 장기간 용기 방치로 인하여 오염누적, 통 내 쓰레기 투입 등 위생문제 발생 우려 <p>다) 규제비용 발생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비용 발생 요소 : ① ② ③ ① 노후 PC용기 교체 → 규제비용 발생 가능 ②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관련 : 10L 이상 PC용기의 상태가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기를 새로운 용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함. 다만, 그 수를 추정할 수 없어 정성적으로 분석함.
--	--

③ PC용기 바닥면 용기 제조일자 표기(1년 유예) : 바닥면에 <표시 또는 부착> 방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스티커/수기 표시/생수통 교체 시 새 용기의 바닥면에 인쇄 등 다양한 방법 적용될 것으로 여겨지나, 먹는샘물 PC용기 생산업체의 바닥면 제조년월은 기시행 중인 사항임
 → 다만, 바닥면에 제조년월일 표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에서 동판을 구매하여, 플라스틱 사출 시 업체 당 동판 구매비용 약 200,000원 발생하지만 해당하는 업체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정성분석함.

(출처) <플라스틱 동판 비용-대동플라스틱> (유선통화확인, 2025.6.)



제조년월 표기 현황(폴무원)

제조년월 표기 현황(스파클)

(출처) <환경부> (정부청사 PC용기 임의조사, 2025.6.)

2. 규제 비용 산정

가) 10년 이상 사용 PC용기 개수

○ 10년 초과 사용 노후 PC용기 개수 : 28,677개

(자료) <시·도별 먹는샘물 용기현황 조사> (환경부, 2024.9.)

○ (가정) 매년 동일한 수준의 10년 이상 노후 PC용기 발생

나) PC용기 가격

○ PC용기 교체 단가 = 9,900원/개 (18.9리터 용량)

(출처) <PC용기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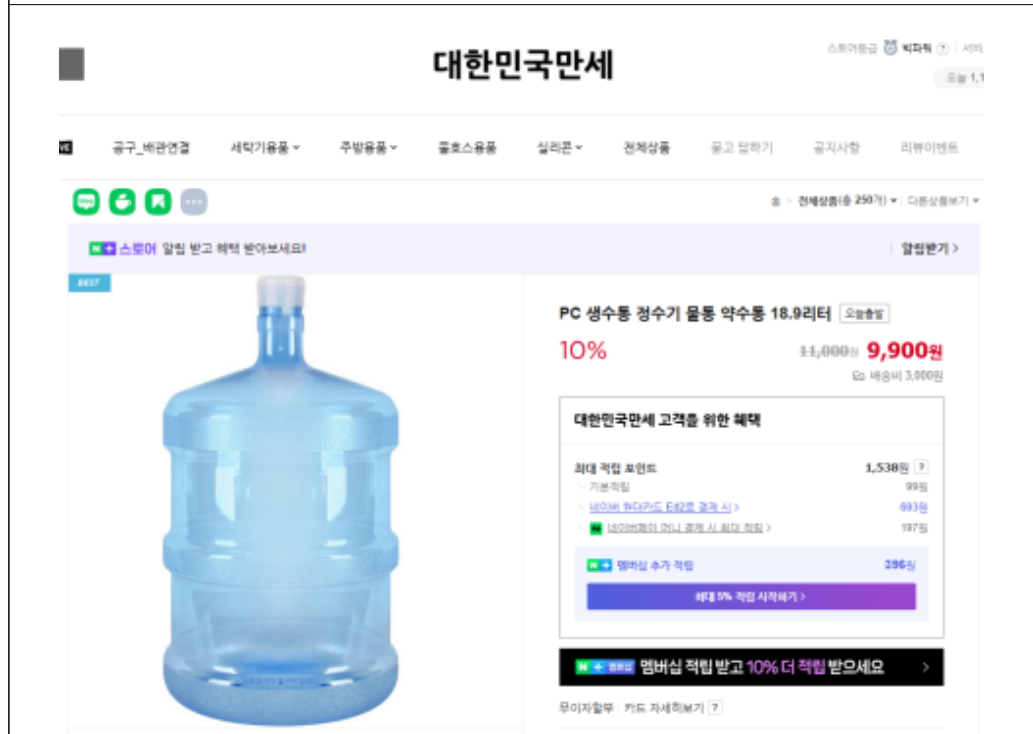
<https://smartstore.naver.com/koreafighting/products/11178685655?nl-query=%EC%83%9D%EC%88%98%ED%86%B5+%EA%B0%80%EA%B2%A9&nl-ts-pid=i9ZOnsqVJLhssLo>

fvdKsssstcZ-403199&NaPm=ct%3Dm85hmo8o%7Cci%3D284c8e46b1a5581b5083d29b
e67dff9cf5983a76%7Ctr%3Dairsp%7Csn%3D269026%7Chk%3Df82b881382eb8d5ed
a286f61d72001515cec13b4 (2025.03.12. 검색)

- 먹는물 생산자의 PC용기 구매 가격은 파악이 불가하여 네이버쇼핑 판매 소비자 가격 적용

※ 먹는샘물 생산자들은 다량 구입을 통하여 소비자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PC용기를 매입할 것임. 다만, 먹는샘물 생산자들의 PC용기 매입단가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대상 가격 적용

[그림 1] 18.9리터 정수기용 생수통 가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다) 규제비용 산정

○ 규제비용 = (노후PC용기 교체개수 × PC용기 가격) = 28,677개/년 × 9,900 원/개 = 283,902,300

[표] 향후 10년간 규제비용

년도	규제비용 (원/년)
2025	283,902,300
2026	283,902,300
2027	283,902,300
2028	283,902,300
2029	283,902,300
2030	283,902,300
2031	283,902,300
2032	283,902,300
2033	283,902,300
2034	283,902,300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10L 이상 PC용기 사용 먹는샘물 소비자
활동제목	10L 이상 PC용기 관련 규정 준수
편익항목	국민건강 개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먹는샘물 유통 시 사용되는 PC용기의 경우 대부분 3-4년 정도에 새로운 용기로 교체되고 있으나, 일부 노후 PC용기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노후 PC용기의 경우 위생문제 발생 가능성 등의 민원 발생 및 국민들의 건강 위해 우려 있음 ○ 본 개정안은 10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먹는샘물용 PC용기의 폐기와 함께 PC용기의 제조일자를 용기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함. 이같은 대용량 먹는샘물용 노후 PC용기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향후 국민들의 먹는물 안전이 강화될 것임 ○ 다만, 먹는물 강화에 따른 편익을 화폐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성분석 함

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6~2025.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등에 기초하여 위험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주기를 보다 차등화(1~4년)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택·집중 관리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 현재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서 취급시설 검사주기(영업허가자는 1년, 영업허가자가 아니면 2년)가 구분되어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 위험도(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 등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절차상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안전진단 주기가 취급시설 검사주기와 중복될 여지가 커 안전진단 주기 개정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현행: 1~2년 → 개정 : 1~4년) ※ 대부분의 사업장은 검사주기가 완화 또는 현상유지되나, 예외적으로 주기가 강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설치검사 및 정기·수시검사(이하 “정기검사 등”),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당초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등 완료 보고자 변경 취지는 규제 강화가 아니지만, 절차 신설로 규제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변경 취지] 검사 완료시 검사결과 제출 절차 간소화 ·(현행) 검사기관(검사 완료) 통보 → 사업장 제출 → 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부) ·(개정) 검사기관(검사 완료) 통보 → 사업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 안전진단 주기 구분 변경 ·(현행)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4년·8년·12년으로 구분 (개정) 취급시설 <검사주기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이 구분함(4년·8년·12년)* * 대부분의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주기가 완화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강화되는 시설이 일부 있을 수 있음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해관계자	취급시설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실시와 관련하여, 고위험도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장의 편의성 증대 ○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등의 검사일정과 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상 중복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 비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영업허가 면제, 1군 가)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2) 일부 사업장(1군 다)의 안전진단 주기 단축	1) 검사주기 완화 2) 안전진단주기 완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허가 대상 1년, 영업허가 비대상 2년이지만, 이는 업종·취급량(연간)만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규모 및 사고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검사주기 변경함 - 안전진단 주기도 당초 취급시설 위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업장의 규모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함 - 본 개정안으로 일부 취급시설의 경우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단축으로 검사 차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도 있으나,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안전진단 주기 등을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p>규모, 위험도에 비례하게 설정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인 개정임</p> <p>○ 신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3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들은 4년마다 정기검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규제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p> <p>○ 아울러,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등의 수행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함</p> <p>- 설치검사 및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검사결과지 제출에 따르는 행정부담 완화</p>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해당 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 규제 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u>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u>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u>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u>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u>설치(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증설, 위치변경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u>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u>전(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기를 말한다)</u>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u>받아야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u>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이하 이 조에서 “위험도”라 한다)가 가위험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1년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위험도가 나위험도·다위험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도로 구분된 취급시설: 2년</p> <p>3.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p> <p>4.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p> <p>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부터 직전 3년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 <p>가. 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p> <p>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p> <p>다.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u>발생</u>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p> <p>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u>결과신고서</u>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2. 제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u>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u></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36호의3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u>발생하거나 발생할</u>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⑥ 제5항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⑦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u><삭 제></u></p> <p>⑧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u>수행한</u>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u>지체없이</u>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u>검사결과통지서</u>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⑧ (생 략)</p> <p><u><신 설></u></p> <p>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 략)</p> <p>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p> <p>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p> <p>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p> <p>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해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u>취급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⑩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⑪ (현행 제8항과 같음)</p> <p>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이란 <u>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u></p> <p>제24조(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이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u></p> <p>③ <u>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u></p> <p>④ <u>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생략)</p>	<p>③ <u>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1. <u>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u></p> <p>2. <u>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u></p> <p>④ <u>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법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며, 일단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취급량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물질관리·시설관리·영업관리 등에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 건강보호와 환경적 위험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허가 대상 1년, 영업허가 비대상 2년이지만, 이는 업종·취급량(연간)만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규모 및 사고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검사주기 변경 필요
 - 안전진단 주기도 당초 취급시설 위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업장의 규모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등의 수행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등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내용	1. 취급시설 검사주기(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군 사업장 위험도 가: 1년 나. 1군 사업장 위험도 나 및 다: 2년 다. 2군 사업장: 3년 라. 하위규정수량 미만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사업장: 4년 마.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면제 2. 안전진단 주기 :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이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p>경우 안전진단 실시</p> <p>3. 검사 및 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 : 검사 및 진단 결과를 기업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실시</p> <p>4. 수시검사 대상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으로써 일부 검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수시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p>
규제대안2	대안명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안전진단 주기는 현행 유지)
	내용	<p>1. 취급시설 검사주기</p> <p>가.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00톤 이상: 1년</p> <p>나.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0톤 이상: 2년</p> <p>다.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톤 이상: 3년</p> <p>라.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20톤 미만: 4년</p> <p>2. 안전진단 주기 : 현행 유지</p> <p>3. 검사 및 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 : 검사 및 진단 결과를 기업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실시</p> <p>4. 수시검사 대상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으로써 일부 검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수시검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p>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	<p>○ 유독물질 추가 지정으로 산업계 이행 부담 지속 증가</p> <p>○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정기검사·안전진단을 수행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이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p> <p>○ 검사 및 진단 결과 통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 수행으로 산업계 부담 존재</p> <p>○ 취급시설 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고</p>

		임에도 수시검사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등 위험에 비례한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로 안전은 담보하면서 관리효율화 및 사업장 제도 이행 부담 완화 ○ 기업이 수행하던 검사·안전진단 결과 신고 의무를 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시검사 대상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로 복잡한 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 우려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도와 연계성 저하 ○ 화학사고 규모는 취급시설 내 체류된 물질 양 등에 의해 영향이 있으나, 연간 취급량은 화학사고규모와 연계성이 낮아 위험에 비례한 제도 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산업계, 시민사회)	2023. 4. 19,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2차 공개토론회	검사주기가 연장되는 대상의 안전관리 보 완 필요	수시검사를 통해 보완
산업계 간담회 (산업계)	2024. 8. 8.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산업계 간담회	전반적인 개정 방향 에 대한 이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화학안전정책포럼 및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도 및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한 취급시설 검사 주기를 차등화함

- 안전진단 주기를 검사 주기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 검사·진단 결과의 신고 주체 변경 및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함
-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적은 사용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사고 위험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형태(화관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구분)보다는 사업장 내에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양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사용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는 관리 역량이 높은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
- 아울러,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면서 현행 안전진단 주기도 사업장의 규모와 정기검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차등화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검사 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 주기와 연계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는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규제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대안 1을 선택

3. 규제 목표

- 영업허가 대상 여부로 구분되던 취급시설 검사주기를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구분되던 안전진단 주기를 위험도·정기검사 주기와 연계 및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의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점으로 관리 가능
- 규제대상 사업장이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검사기관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수시검사 대상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 완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업허가 여부 및 연간 취급량을 기준으로 차등화되던 현행 취급시설 검사주기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향범위에 따른 위험도와 유해·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되던 안전진단 주기를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한 합리적인 안전진단 주기로 변경되더라도 규제 대상 사업장의 기존 이행사항임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신고의 주체를 기업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규제 대상 사업장의 기존 이행사항을 검사기관이 대신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취급시설 검사 규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은 연구실·학교 실험실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 등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대상자 중에서 주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경쟁영향평가 :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정기검사) 사업장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 (안전진단) 정기검사 주기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본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진입제한 또는 경제제한적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대상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 주기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 분류·규정하고 있어 유연한 분류 체계를 설정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은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의 시설 규모, 위험도에 따른 검사 및 진단 주기를 피규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를 차등화하는 규정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대해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의 주기를 차등화하는 규정으로 신사업 또는 규제의 일부를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반년부터 최대 5년까지 취급설비의 특성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구 분	기준 근거	검사주기	점검내용
화학설비 호스	CCPS - Plant Guidelines for Technica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 Safety	0.5 년	외관검사
염소 배관	Chlorine Institute Pamphlet 60	1.0 년	안전성 확인
플렉시블호스 및 신축흡수배관 이음부	CCPS - Plant Guidelines for Technical Management of Chemical Process Safety	1.0 년	외관검사
부식성 가스용 스프링식 안전밸브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8	1.0 년	기능확인
위험 화학물질 배관 주입구	ANSI B31.3/API RP 574, Section 5.1/API 570, Section 4	3.0 년	외관검사
안전상 중요한 수동식 밸브	Recognized & Accepted Good Engineering Practice	3.0 년	작동시험
저장탱크(대기압)	API 620, API 650, UL 142	5.0 년	외관검사
고위험물질 배관	ANSI B31.3/API RP 574, Section 5.1/API 570, Section 4	5.0 년	두께측정
압력용기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API RP 572, ANSI/NB-23, API 510	5.0 년	외관검사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방법 개선방안 마련(명지대, 2014)

○ 타법 사례

<타법 사례 : 취급시설 검사>

법령	구분		검사주기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대상시설		1년
	영업허가 비 대상시설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기계		3년 (이후 2년)
	압력용기		3년 (이후 2년,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4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고압가스특정제조	4년
		가연성 및 독성 외의 가스	2년
		가연성 및 독성 가스	1년
	정밀진단	고압가스 제조시설	4년
	용기 재검사	차량에 고정된 탱크	1년, 2년, 5년
		저장탱크	5년
압력용기		4년	
도시가스 사업법	정기검사	도시가스 시설	1년
	안전성평가	도시가스 시설	5년
	정밀안전점검	가스공급시설 중 15년(고압), 20년(중압) 경과 노후시설	5년
위험물질 안전관리법	정밀정기검사	특정(준)옥외탱크저장소	12년 (이후 11년)
	중간정기검사	특정(준)옥외탱크저장소	4년 (이후 4년)

<타법 사례 : 안전진단>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고압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안법	연안법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24조	법 제16조의3	법 제17조의 2	법 제47조 또는 자율신청	법률 제15조
진단명	안전진단	정밀안전검진	정밀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	정밀안전진단
진단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압가스 제조시설 노후시설	가스공급시설 노후시설	화학설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실시주기	4년, 8년, 12년	완성검사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4년	설치완료 이후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매 5년	지방노동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자율신청	2년
진단분야	일반관리분야 시설분야 선택분야	일반분야 장치분야 특수·선택분야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	경영·관리분야 화학설비분야	일반안전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및 화공분야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취급시설 검사 대상 사업장 약 13,354개(정기검사 1~2년 주기) 중에 최소 약 12,946개 사업장(96.9%, 정기검사 주기 3년 이상)이 기존의 취급시설 검사주기보다 완화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이행하거나 이행 의무사항으로 인자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규제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하여 취급시설 검사주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의견 종합 후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소요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선행연구 및 유사법령 조사('23.2~3.)
 - 관련 선행연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국내·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검사 대상, 안전진단 항목 등 현황을 조사

-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4.)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4~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4.8)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4.9)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 실시
 -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 홍보
- 개정사항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해당 규제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개정	'25.8.7 시행

4. 종합결론

- 본 개정은 취급시설 검사 주기 및 안전진단 주기 등을 위험에 비례하여 설정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른 획일적인 검사 주기를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검사 주기로 차등화하고 안전진단 주기를 정기검사 주기와의 연계함으로써, 사업장의 규모·위험도 등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취급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임
- 이를 통해, 대규모이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집중관리하고, 소규모이면서 위험이 낮은 사업장은 검사주기를 완화하여 자율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

고, 제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검사 주기 차등화와 이를 연계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규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허가 대상 1년, 영업허가 비대상 2년이지만, 이는 업종·취급량(연간)만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장 규모 및 사고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검사주기 변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주기도 당초 취급시설 위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업장의 규모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함 - 본 개정안으로 일부 취급시설의 경우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단축으로 검사 차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도 있으나,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안전진단 주기 등을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비례하게 설정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인 개정임 ○ 신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3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들은 4년마다 정기검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규제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등의 수행 절차를 효율화(간소화)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함

▶▶▶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사업

- 설치검사 및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검사결과지 제출에 따르는 행정부담 완화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취급시설 규모 및 위험도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주기 차등화 및 정기검사와의 연계를 고려한 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활동제목	취급시설의 검사 주기 차등화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0. 일반 사항</p> <p>0-1) 개정안 부칙 제1조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p>0-1) 정기검사 등 수수료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수행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현황 - <표-1> 참조 <p><표-1> 한국환경공단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행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th> <th>안전진단 건수 및 수수료</th> <th>정기검사 건수 및 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건수 (건)</td> <td>169</td> <td>18,197</td> </tr> <tr> <td rowspan="4">수수료 (원)</td> <td>최대</td> <td>57,428,800</td> <td>115,023,700</td> </tr> <tr> <td>최소</td> <td>2,014,100</td> <td>17,600</td> </tr> <tr> <td>평균</td> <td>12,513,047</td> <td>966,877</td> </tr> <tr> <td>합</td> <td>2,114,704,900</td> <td>17,594,252,600</td> </tr> <tr> <td colspan="2">비고</td> <td>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td> <td>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td> </tr> </tbody> </table> <p>(자료) <건수, 수수료 총액>,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2025.4.</p>				안전진단 건수 및 수수료	정기검사 건수 및 수수료	건수 (건)		169	18,197	수수료 (원)	최대	57,428,800	115,023,700	최소	2,014,100	17,600	평균	12,513,047	966,877	합	2,114,704,900	17,594,252,600	비고		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	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
			안전진단 건수 및 수수료	정기검사 건수 및 수수료																							
	건수 (건)		169	18,197																							
	수수료 (원)	최대	57,428,800	115,023,700																							
		최소	2,014,100	17,600																							
		평균	12,513,047	966,877																							
		합	2,114,704,900	17,594,252,600																							
	비고		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	2020.~2024. 기간 검사 완료 자료 취합																							
	<p>0-2)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수수료 평균을 검사 수수료 단가로 설정할 수 없음 -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의 특징과 규모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단가를 특정하기 어려움 - 정기검사의 경우,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자료 <표-1>에 따라 최대 115백만원 																										

	<p>에서 최소 17.6천원으로 수수료 격차가 너무 커 평균값을 정기검사 수수료 단가로 모든 취급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의 경우, 2015년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4년(위험도 가, 고), 8년(위험도 나, 중), 12년(위험도 다, 저)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표-1>의 안전진단 수수료를 납부한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은 대다수가 위험도 가(고) 사업장으로 취급시설 규모가 크기에 <표-1>의 안전진단 수수료 평균값을 수수료 단가로 모든 취급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p>1. 각 조문별 규제비용 발생 요소 검토</p> <p>1-1) 개정안 23조1항의 <신증설/위치변경/변경 등 포함> 조항 관련</p> <p>→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부담 없음. 현행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제2항제6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 있음. 또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즉, <u>현행에서도 동일한 의무 부여되므로</u>, 개정안에 따른 <u>추가적인 규제부담 없음</u></p> <p>1-2) 개정안 제23조제2항 정기검사 주기 → 2. <정기검사> 항목 참조</p> <p>1-3) 개정안 제23조제3항 중 <정기검사 기한 1년 연장> 조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항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정확한 비용 및 편익을 산정이 어려움 <p>1-4) 개정안 제23조제5항 수시검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검사의 경우, <u>현재도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현행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현행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수시검사 대상임</u> →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부담 없음 <p>(예시) 2018년 1월 15일 화학사고 발생 후, 해당 사업장은 같은 해 1월 16일</p>
--	---

	<p>검사 신청하였고, 1월 17일에 수시검사를 받음(자료. 환경공단. 2018)</p> <p>1-5) 개정안 제24조 안전진단 → 3. <안전진단> 항목 참조</p> <p>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0조,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 추가) → 4. <신규사업장> 항목 참조</p> <p>2. 정기검사</p> <p>2-1) <현행> 정기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p> <p>2-1-1) 정기 검사 수검 대상</p> <p>○ 피규제 대상 범위</p> <p>-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25.8.7 시행) 제2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p> <p>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p> <p>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p> <p>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p> <p>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p>
--	--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12항 :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2-1-2) <현행>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 취급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되, 단,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표 A-1-1> **현행** 정기검사 대상&미대상 사업장 수

		개수 (개)	정기검사 주기
취급시설 보유(정기검사 대상)	영업허가	9276	1년마다
	영업허가 미대상	4078	2년마다
취급시설 미보유(영업허가)		10995	정기검사 미대상 사업장
전체		24349	

(주) <영업허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에서 제시하는 영업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 중 <제조업, 판매업 중 취급시설이 있는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중 영업허가를 받은 사용업>의 개수

(주) <영업허가 미대상> 개수는 <사용업 중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 개수

(주) 하나의 사업장이 다수의 허가를 보유 가능. 다만, 정기검사는 취급시설별로 시행됨

(주) <영업허가, 전체> 개수는 환경부 취합자료, 2025.4.

(자료) 환경부, 2025.4. 및 2024.12.

<표 A-1-2>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장별 취급시설 개수

사업장별 취급시설 개수 분포	해당 사업장 개수	사업장별 취급시설 개수 분포	해당 사업장 개수
1-10	11,141	121-130	1
11-20	601	131-140	6
21-30	166	151-160	1
31-40	83	161-170	3
41-50	41	171-180	1
51-60	30	181-190	1
61-70	12	211-220	1
71-80	15	221-230	3
81-90	7	241-250	1
91-100	3	331-340	1
101-110	9	1151-1160	1
111-120	3		

항목	사업장별 취급시설 개수
평균	4.9
중앙	2.0
최대	1,155
최소	1

(자료) <사업장별 취급시설 개수>, 한국환경공단 내부자료, 2025.6.

※ 환경공단에서 취급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환경공단 외 검사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2-2) <개정안> 정기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2-2-1) <개정안> 정기 검사 규정

- 개정안에서는 <규정수량 (1군/2군)> 및 <위험도 (가/나/다)> 및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1~4년으로 변경

- <표 A-2-1> 참조

<표 A-2-1> 정기검사 주기 비교			
	취급시설 구분	정기검사 주기	비고
현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1년	시행규칙 23조 2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대상	2년	시행규칙 23조 2항
개정	1군 & 가 위험도	1년	23조 2항 1호
	1군 & 나 위험도	2년	23조 2항 2호
	1군 & 다 위험도		
	2군	3년	23조 2항 3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23조 2항 4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 시설	3년 이내	23조 2항 5호
<p>(주)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현행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별표4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p> <p>(주)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p>			
<p>○ <개정안>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A-2-2> 참조, 본 규제사무의 피규제 대상은 취급시설이나(정기검사는 취급시설별로 이행), 자료의 부족으로 개정안 분류(1군/2군/가/나/다)에 따른 사업장별 취급시설 수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 다만, <표 A-1-2>의 사업장별 취급시설 분포와 그 대푯값(평균, 중앙값)을 통해 대상 사업장의 취급시설 수를 추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1군/2군/가/나/다에 따른 사업장 수를 대리지표로 활용(각 분류별 취급시설 수=사업장별 취급시설 수*각 분류별 사업장 수) 			

<표 A-2-2> <개정안>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 수

	<개정안>		개수	비고
23조2항1호	1군	가 위험도	90	1년마다
23조2항2호		나 위험도	135	2년마다
23조2항2호		다 위험도	183	2년마다
23조2항3호	2군	가 위험도	39	3년마다
23조2항3호		나 위험도	221	3년마다
23조2항3호		다 위험도	655	3년마다
소계 1 <1호부터3호 합>			1323	
23조2항4호	최하위 규정수량이상 이면서 1호/2호/3호아닌 것, 그리고 운반업 아닌 것		11261	4년마다
소계 2 <1호부터4호 합>			12584	
23조2항5호	운반하는 취급시설		770	3년 이내
계			13,354	

(자료) 환경부, 2025.4.

(주) 본 비용편익분석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정기검사 면제)을 식별하지 못함. 이에, 이들은 제23조 2항4호의 취급시설로 포함됨

(주)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5.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8.7.)」 제20조 등에 따른 신규 허가·신고 대상으로 잠정 예상되는 사업장은 미반영 (<4. 신규사업장> 참조)

2-3) 정성분석 시행

○ 데이터 한계로 피규제대상자 숫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피규제대상자(정기검사 대상자)가 아닌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시설을 식별하지 못함
→ 제23조2항4호의 취급시설로 포함됨

○ 정기검사 수수료 수준을 특정하기 어려움

-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자료 <표-1>에 따라 최대 115백만원에서 최소 17.6천 원으로 수수료 격차가 너무 커 평균값을 정기검사 수수료 단가로 모든 취급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이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시설의 특징과 규모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수수료 단가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그 결과는 <3. 안전진단>에 함께 기술

3. 안전진단

3-1) <현행>과 <개정안> 안전진단 주기 비교

○ <현행> 안전진단 주기

- 현행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의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4년, 8년, 12년으로 규정

<표 B-1-1> <현행> 안전진단 주기

위험도		안전진단주기
24조2항1호	<가>위험도	매 4년
24조2항2호	<나>위험도	매 8년
24조2항3호	<다>위험도	매 12년
24조2항4호	제19조2항 각호 해당 시설	매 12년

(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전,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가, 나, 다 위험도 대신, 고, 중, 저 위험도로 분류 (각 안전진단 주기는 동일)

○ <개정안> 안전진단 주기

- 개정안에서는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제안되었으며, 안전진단은 정기검사 4회차에 실시하도록 제안함
- 개정안에서는 정기검사와 연계를 통해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에 해당하는 시설(영업허가 대상)은 안전진단 대상이며,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 해당하는 시설(영업신고 대상)과 영업허가 면제시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3-2) 안전진단 대상

○ 안전진단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과 연계됨

- <표 B-1-2> 참조

<표 B-1-2> 현행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과 그 주기

(주) 안전진단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과 연계됨

현행		개수 (개)
24조2항1호	<가>위험도	129
24조2항2호	<나>위험도	356
24조2항3호	<다>위험도	838
24조2항4호	제19조2항 각호 해당 시설	na
소계		1323
그 외		23026
계		24349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25.5.

<표 B-1-3> <개정안>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수와 그 주기

		<개정안>	개수	안전진단 주기
23조2항1호	1군	가 위험도	90	최소 4년마다
23조2항2호		나 위험도	135	최소 8년마다
23조2항2호		다 위험도	183	최소 8년마다
23조2항3호	2군	가 위험도	39	최소 12년마다
23조2항3호		나 위험도	221	최소 12년마다
23조2항3호		다 위험도	655	최소 12년마다
소계 1 <1호부터3호 합>			1323	
23조2항4호	최하위 규정수량이상 이면서 1호/2호/3호아닌 것, 그리고 운반업 아닌 것		11261	미대상
소계 2 <1호부터4호 합>			12584	
23조2항5호	운반하는 취급시설		770	미대상
계			13,354	

(자료) 환경부, 2025.4.

(주) 본 비용편익분석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정기검사 면제)을 식별하지 못함. 이에, 이들은 제23조 2항4호의 취급시설로 포함됨

(주) 네 번째 정기검사 마다 안전진단을 하여 최소 정기검사 주기의 4배 마다 안전진단 수행, 개정안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연장되는 경우 그보다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음

(주)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5.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8.7.)」 제20조 등에 따른 신규 허가·신고 대상으로 잠정 예상되는 사업장은 미반영 (<4. 신규사업장> 참조)

	<p>3-3)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수준을 특정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4년(위험도 가, 고), 8년(위험도 나, 중), 12년(위험도 다, 저)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표-1>의 안전진단 수수료를 납부한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은 대다수가 위험도 가(고) 사업장으로 취급시설 규모가 크기에 <표-1>의 안전진단 수수료 평균값을 수수료 단가로 모든 취급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2021년 이전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위험도를 고, 중, 저로 구분, 2021년부터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위험도를 가, 나, 다로 구분(환경부령 제911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고, 중, 저 위험도 취급시설은 각각 가, 나, 다 위험도로 안전진단 적용) -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의 특징과 규모 등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 단가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 정성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 미대상인 1군 가위험도 사업장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단축(2년→1년)되어 정기검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1군 다위험도 사업장의 경우 안전진단 주기가 단축(12년→8년)되어 안전진단 수수료가 기존보다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영업허가 대상인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1년→2년)과, 영업허가 대상인 2군 사업장(1년→3년), 영업허가 대상인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1년→4년), 영업허가 미대상인 2군 사업장과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2년→3년, 4년)은 정기검사 주기를 연장되어 정기검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군 사업장의 경우(가 위험도 4년, 나위험도 8년 → 12년) 안전진단 주기가 연장되고,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은 안전진단이 면제되어 안전진단 수수료가 기존보다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 개정안으로 일부 취급시설의 경우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 단축으로 검사 차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도 있으나,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안전진단 주기 등을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비례하게 설정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인 개정임
--	---

	<p>4. 신규 사업장</p> <p>4-1) 피규제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제20조와 화평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가 추가되어 73종의 물질이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8호) 기준) ○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73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기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 신규로 화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34개로 산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통계조사(화관법 제10조)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함.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73종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3,781개소 중 기존 영업허가 사업장(1,526개소), 취급시설 미보유 사업장(1,295개소), 화관서 등 제출 사업장(385개소),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통계조사 결과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541개소)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34개소의 사업장을 산출하였음.(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내부자료. 2025.6) <u>해당 34개 사업장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여 정기검사(4년) 대상, 안전진단 미대상, 영업신고 대상(관리자 1인 선임 대상, 안전교육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미대상 임</u> <p>(출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환경부 내부자료(규정수량 고시 제정안). 2025.6</p> <p>4-2)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정기검사>, <3. 안전진단>에서 기술한 수수료 단가를 설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정성분석을 해당 항목에서 수행함. <4. 신규 사업장>에도 해당 사유로 정성분석을 시행 ○ 3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급시설들은 4년마다 정기검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규제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직접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활동제목	검사결과지 제출의무 면제
편익항목	비용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검사 및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의 완료 보고자를 사업장에서 검사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 개정안에서는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이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제23조제8항, 개정안 제24조제4항 등) ○ 검사결과지 제출에 따르는 비용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성분석 시행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6의2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6~2025.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자를 선임 해야함.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의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되어 영업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자 선임기준 또한 차등화를 하고자 함(「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정부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물질별 특성에 따라 관리자 선임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장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고자 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자인 경우 사업장 종사자 수 등의 기준으로 기존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영업신고는 1명 선임으로 합리화. ○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선임이 면제되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영업신고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5,394.7			15,394.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약판매업 사업장은 관리자 선임 비용 발생	영업허가 규정을 적용받다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관리자 선임비용 절감 가능성 있음, 판매업						

			가능성 있음	종사자 수에 따른 관리자 추가선임 완화로 관리자 선임 비용 절감 가능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영업신고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경우 관리자 선임 부담 절감되고 신규 영업허가·신고 사업장의 경우 규제 비용 발생 등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비례하게 관리자 선임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차등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를 위한 것임 ○ 시약판매업 사업장의 경우 영업허가·신고와 동일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을 관리자 선임기준에 적용하여 안전 담보 및 기존 영업자와 형평성 제고 ○ 판매업 영업허가의 종사자 수에 따른 관리자 추가 선임 기준 완화(500명당 1명 에서 5,000명당 1명)로 사용업(5,000명당 1명)과의 형평성 확보 및 규제 합리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394.7	0	1,861.78	
15. 규제 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 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u></p> <p>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p> <p>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p> <p>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p> <p>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p> <p>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p> <p>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p> <p>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p>	<p>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 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각 호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p> <p><별표 신설></p>	<p>별표 6의2</p> <p><u>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 개정(안)</u></p> <p>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p> <p>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다음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인원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p> <p>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th> </tr> </thead> <tbody> <tr> <td>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r> <tr> <td>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r> <tr> <td>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r> <tr> <td>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td> </tr> <tr> <td>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td> </tr> </tbody> </table>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현 행	개 정 안						
	<p>2) 종사자 수에 따른 다음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th> </tr> </thead> <tbody> <tr> <td>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허가영업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자 5백명당 1명</td> </tr> <tr> <td>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영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자 5천명당 1명</td> </tr> </tbody> </table> <p>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p> <p>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 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 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 할 수 있다.</p> <p>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 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 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 다.</p> <p>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 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p> <p>4. 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다만 시약판매업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 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p> <p>비고</p> <p>제1항가목 단서를 적용할 때 종업원 10명 미</p>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허가영업 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허가영업 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현 행	개 정 안
<p><부칙 신설></p>	<p>만의 영업자가 취급량의 일시 증가 등으로 종업원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영업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1.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관리자선임 필요성 존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

* 취급에 따른 영업을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함

**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연간사용량이 기준 이하인 사용업

*** 영업허가 사업장 '15년 12,192개소에서 '24년 19,412개소로 약 59.2% 증가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도 기술인력 선임 등 의무 준수(통계 출처: 환경부 통계)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25.8.7 시행)에 맞추어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관리자 선임기준을 차등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
	내용	현 관리자 선임 수, 대상 사업장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는 연간취급량과 종사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과 -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시약판매업 이외엔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을 설치·운영하는 신고자에게만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내용	현행 판매업 관리자 기준(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선임)으로 모든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에게 관리자 선임 의무 부과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규제대안1에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모와 물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행정 효율성 감소, 시약판매업의 사고대비 능력 부족한 상황 발생
규제대안1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력 기준을 정하여 사업장 안전 관리 확보 및 시약판매업의 사고 대비 능력 제고	기존 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의 선임 의무 발생 (영업허가 비대상->영업허가, 신고 / 기준 이상 시약판매업)
규제대안2	사업장 안전관리 정도 제고	기존 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의 선임 의무 발생 (영업허가 비대상->영업허가, 신고 / 기준 이상 시약판매업)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 (화학안전정책 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관리 필요	일부 반영
산업계 (화학안전정책 포럼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영업신고 시 기술인력 선임면제로 교육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반영
시민사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최대보유량으로 관리할 경우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위험작업 증가하는 것이 우려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허가자”)와 차등화된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해 영업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 가능
-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대상과 같은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자(이하 “시약판매업자”)에게 1명의 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면서 과도한 규제 부담은 덜 수 있음

3. 규제 목표

- 관리자 선임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합리성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사업장 관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고위험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이 존재하는 시약판매업에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여하여 업종별 형평성과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 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자는 관리자를 종사자, 취급량 등의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평균 관리자 선임 수는 2.3명임. 영업신고자와 기준 이상의 시약판매업자에게 기존의 최소 기준인 1명의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여 규제 정도를 최소한으로 규정함

* 출처) 환경부 통계, 별표 참고

- 모든 시약판매업자가 아닌 영업허가, 영업신고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대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규제를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시설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렵기에 정성 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⑤ 예비분석내용	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인원인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상이 아님. 또한 영업허가와 신고는 제도 목적에 맞추어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취급규모, 위험도 등의 기준으로 구분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위험도(취급규모)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로 관리자 선임 기준 차등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관련 규정으로 지속적·일관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 설정 곤란하며,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왔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규제 대상 여부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정의 취지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충됨
네거티브 리스트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업 개시 이전에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법령	내용	관련 조항
독일 Arbeitssicherheitsgesetz	안전관리자((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는 취급시설 설치 및 유지, 기술 장비 및 작업절차 구매, 개인보호구 선정 등을 지원해야 함	제6조
	사업장재해와 직업병 예방대책의 시행을 위해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를 선임	제22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사고 지휘관(scene incident commander)은 최소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29 CFR 1910.120(q)(6)

○ 타법 사례

법령	내용	관련 조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마다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법 제1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용 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함	법 제20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법 제7조
광산안전법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해야 함	법 제1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법 제33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5,394.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394.7		15,39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394.7		15,394.7
기업순비용		15,394.7	연간균등순비용	1,861.78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자, 시약판매업자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 일부 대상자의 안전교육 등 이행 중이며 규제 정도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신규 및 기존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관리자 선임신고 등은 기존 취급자들에게도 적용되던 절차로 규제 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으며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행정 집행 담당자인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의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선행연구 조사('23.03~'23.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와 관련된 허가, 인력선임, 안전교육 등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함
-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05)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05~'23.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함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3.9) 및 하위법률 개정안 마련(~'23.9)

2. 향후 평가계획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현황 분석,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지속 파악 예정(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현황 등)

3. 규제 정비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비대상 요건을 사용업이 아닌 업종에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취급자에게 영업허가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 외 요건 확대	'25.8.7. 시행 추진

4. 종합결론

-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 반면 안전관리에서의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피규제집단에 대해서도 선임 기준이 완화가 되어 발생하는 편익 총량이 비용 총량보다 커 비용 절감이 발생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5,394.7		15,39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394.7		15,394.7
기업순비용		15,394.7	연간균등순비용	1,861.78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활동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준수
비용항목	노동
비용	15,394,706,63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신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수 x 추가 선임 필요 관리자 인원수 x 연간 인건비 단가) = (34개) x (1명/개) x (222,595원/명·일) x (20.5일/개월) x (12개월) = 1,861,784,580원(34*1*222595*20.5*12)
근거설명	<p>0. 일반 사항</p> <p>0-1) 개정안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조(영업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p>0-2) 규제 개정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발생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의무 선임 규정 적용 ○ 강화 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완화 규정에 따른 <절감 편익> 발생 가능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항목 정성분석 시행

1. 현행 및 개정안 조문 비교		
현행	개 정 안	규제비용 발생 여부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u>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u>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u>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u>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u>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 개정(안)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u>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	
1.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나. 유해화학물질 <u>운반업 외의</u> 영업을 영위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다음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인원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현행	개 정 안		규제비용 발생 여부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종사자 수에 따른 다음의 구분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허가 영업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완화 → 편익 발생 가능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영업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1.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		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현행	개정안	규제비용 발생 여부
<p>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검할 수 있다.</p>	<p>임자를 검할 수 있다.</p>	
<p>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추가 규제비용 미발생</p>
	<p>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 <u>관리자</u> 1명</p>	<p>강화 → 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 발생 가능</p>
<p>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략)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또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 <u>관리자</u> 1명. 다만 <u>시약판매업</u>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u>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u>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추가 규제비용 미발생 강화 → 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 발생 가능</p>
	<p>비고 제1항가목 단서를 적용할 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업자가 취급량의 일시 증가 등으로 종업원 10명 이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규제비용 발생 여부									
	다만, 제29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 개정안에 따른 규제 영향 검토</p> <p>① 개정안 [별표6의2] 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제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영업허가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장 중 일부>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8.7.)」 제20조 등에 따른 신규 신고 대상으로 잠정 예상되는 사업장(<참고-A>)>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기존 영업허가자가 아닌 경우 추가 규제 부담 발생 가능) - 다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규정을 적용받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수는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기준에서 명확히 파악이 어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5.8.7.)」(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 추가)으로, 신규로 유해화학물질이 지정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신규 허가·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수는 아래와 같음 <p><참고-A>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신규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 추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신규 사업장 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34</td> <td>개정안 [별표6의2] 제3호에 따른 관리자 1인 선임 의무 발생</td> </tr> </tbody> </table> <p>(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신규 신고 대상 사업장 수>, 환경부 내부자료, 2025.6.</p> <p>(주) <신규 사업장 수>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5.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8.7.)」 제20조 등에 따른 신규 허가·신고 대상으로 잠정 예상되는 사업장 수</p>				신규 사업장 수	비고	허가	0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신고	34	개정안 [별표6의2] 제3호에 따른 관리자 1인 선임 의무 발생
	신규 사업장 수	비고									
허가	0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									
신고	34	개정안 [별표6의2] 제3호에 따른 관리자 1인 선임 의무 발생									

	<p>○ 화평법 제20조와 화평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가 추가되어 73종의 물질이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8호) 기준)</p> <p>○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73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기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 신규로 화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34개로 산출됨</p> <p>- 화학물질 통계조사(화관법 제10조)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함.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73종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3,781개소 중 기존 영업허가 사업장(1,526개소), 취급시설 미보유 사업장(1,295개소), 화관서 등 제출 사업장(385개소), 영업허가·신고 면제 사업장(통계조사 결과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541개소)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34개소의 사업장을 산출하였음.(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내부자료. 2025.6) 즉, 다른 기존 지정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신규 지정될 수 있는 73종 물질만으로 의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34개로 파악됨. <u>해당 34개 사업장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여 정기검사(4년) 대상, 안전진단 미대상, 영업신고 대상(관리자 1인 선임 대상, 안전교육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미대상 임</u></p> <p>※ 출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환경부 내부자료(규정수량 고시 제정안). 2025.6</p> <p>○ 인건비 단가</p> <p>※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관리책임자> 및 <점검원>으로 구성됨.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인건비 단가는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평균 인건비 단가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해당 조사자료가 미비함.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에 있어 책임자와 점검원의 역할 구분이 크지 않고, 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의 인건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자료의 <환경부문 중급숙련기술자(=222,595원/일·인)> 인건비 적용</p>
--	--

<참고-0>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건비 단가 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건비 단가 (원/일)	월 근무일수 기준 (일/월)	1년 기준 인건비 단가 (원/년)
[a]	[b]	[c=a×b×12]
222,595	20.5	54,758,370

(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혹은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으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

(주) <인건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 <환경부문 중급숙련기술자(=222,595원, 1인1일기준)>, <월평균근무일수(=20.5)> 및 <1년=12개월> 적용. 점검원 및 책임자의 인건비 평균값으로 적용함

(자료) <인건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4.),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통계/임금실태/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 (2025.05. 접속)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업,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5일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 연간 총 추가 인건비 산정

= (신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수 x 추가 선임 필요 관리자 인원수 x 연간 인건비 단가)

= (34개) x (1명/개) x (222,595원/명·일) x (20.5일/개월) x (12개월)

= 1,861,784,580원

※ 부칙 제7조은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규 73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p>② 개정안 [별표6의2] 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 사업장의 규제 부담</p> <p>○ 관리자 1인 선임에 따른 추가 규제부담 발생 가능(시약판매업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별표6의2] 제4호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고 사업장의 경우 <u>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u>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기준에서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3조제2호나목에 따라 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된다.(점검원 미선임 가능, 책임자 1명 선임),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동일하게 1명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p>○ 피규제 대상 : 취급시설 <보유> 시약판매업 신고자임</p> <p>※ 취급시설이 <없는다> 시약판매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시설이개정안 별표6의2 제4호에서 “다만 <u>시약판매업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u>최하위규정수량 미만</u>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u>제외한다</u>”라고 규정되어 있음 → 수량 기준은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산정될 수 있음 → 취급시설이 <없는다> 시약판매업은 수량이 <u>0으로 산정됨</u> → 취급시설이 <없는다> 시약판매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u> <p>○ 2024년 12월 기준, 취급시설 보유 시약판매업체 수 = <u>376개</u></p> <p>(주) <취급시설 보유 시약판매업체 수>는 <u>2024년 12월 기준 시약판매 영업 허가 보유 중인 사업장</u></p> <p>(자료) <취급시설 보유 시약판매업체 수>, 환경부 내부자료, 2024.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별표6의2]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의 경우 <u>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u>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가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시약판매업체들 중 상당수는 기존 허가 대상 영업(사용업, 판매업,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을 <u>겸하고 있을</u>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및 제38조 등에 의하여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하고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추가 선임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활용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시약판매업체 중 허가대상营业을 겸하고 있는 업체의 개수 혹은 비중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정성분석 시행함
--	---

	<p><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p> <p>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 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u>둘 이상</u>의 유해화학물질 <u>영업자</u>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u>공동으로 활용</u>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 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 인건비 단가</p> <p>- 인건비 단가 자료는 <참고-0> 과 동일</p> <p>③ 개정안 [별표6의2] 제1호 나목 2)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종사자 수에 대한 기준 개정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p> <p>○ ‘피규제자의 <u>규제부담 완화</u> 가능성 있음</p> <p>- ‘개정안 [별표6의2] 제1호 나목. 2)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 개정으 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의무가 완화되어 <u>규제 부담이 완화</u>할 가능성이 있음</p> <p>○ 피규제 대상자 수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자료 부족</p> <p>- 만약,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가 다른 허가 대상 영업(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을 겸 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수(제조업, 보관저장업의 경 우, 현행 판매업과 같이 500명당 1명의 점검원 추가 선임 기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실제 인력 감축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 음</p> <p>- 한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중 타 허가 대상 영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 등의 정확한 비중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피규제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p> <p>○ 정성분석 시행</p> <p>- 피규제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확보 등의 한계로 인하여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u>정성분석</u>함</p>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2.규제조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6의3										
	3.위임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6~2025.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에 따른 관리 차등화의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되어 영업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 설정을 하고자 함(「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정부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상자별로 합리적인 안전교육 시간을 설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영업허가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에 따른 영업자가 고용한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 일정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약판매업의 경우 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부여(개정안 제33조, 별표6의2)에 따른 시약판매업의 관리자와 시약판매업의 취급담당자에게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 자	피규제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th> <th>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피규제자</td> <td></td> <td>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의 적절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제고하고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6.59			76.5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면제에서 영업허가,	영업허가에서 영업신고,								

			신고로 전환된 사업장과 최하위 규정수량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판매업 사업장의 안전교육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면제로 전환된 사업장의 안전교육 대상자 감소과 판매업 사업장으로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절감 발생 가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 사업장의 관리자와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교육대상자로 추가되어 규제비용 발생 가능 ○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서 영업허가·영업신고 대상으로, 혹은 영업허가 대상에서 영업신고 대상·면제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의 관리자와 취급담당자는 각 경우 교육대상자로 추가 혹은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어 규제비용 발생 혹은 절감 가능 ○ 기존 판매업 영업허가 사업장의 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로 규제비용 절감 가능 ○ 사업장의 규모, 위험도에 비례하게 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설정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을 차등화하기 위한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정임 		
				11.영향평가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미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세부기준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미적용	76.59	0	9.26
	15.규제정비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생 략)																																	
별표 6의2		별표 6의3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대상</th> <th>교육시간</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8시간</td> </tr> <tr> <td>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td> <td>매 2년마다 8시간</td> </tr> <tr> <td>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td> <td>(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td> <td>(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body> </table>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대상</th> <th>교육시간</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8시간</td> </tr> <tr> <td>가.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td> <td>매 2년마다 8시간</td> </tr> <tr> <td>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td> <td>매 2년마다 16시간</td> </tr> <tr> <td>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td> <td>(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td> </tr> <tr> <td>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시약 판매업 영업자가</td> <td>매 2년마다 8시간</td> </tr> </tbody> </table>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시약 판매업 영업자가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16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가.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시약 판매업 영업자가	매 2년마다 8시간																																		

현 행		개 정 안	
	2년마다 8시간)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15.1.1.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업허가의 의무와 그에 따른 관리자선임 필요성 존재.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차등화 필요성***과 피규제자의 요구가 증대된 상황

* 취급에 따른 영업을 법 제27조에 따라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함

** 현행 시행규칙 제31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연간사용량이 기준 이하인 사용업

*** 영업허가 사업장 '15년 12,192개소에서 '24년 19,412개소로 약 59.2% 증가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도 기술인력 선임 등 의무 준수(통계 출처: 환경부 통계)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25.8.7 시행)에 맞추어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자별 안전교육 시간을 합리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유지
	내용	현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영업허가자와 동일) - 시약판매업 중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시약판매업이 아닐 경우 영업허가, 영업신고 대상)을 설치·운영하는 신고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현 제도상 최소 시간)
규제대안2	대안명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자보다 축소된 교육시간 부여 + 모든 시약판매업 관리자 선임
	내용	-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는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

		- 시약판매업자에게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2년마다 8시간의 교육 의무 부여(현 제도 상 최소 시간)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미비
규제대안1	법 개정으로 기술인력이 면제된 영업신고자의 사고대비능력 확보 및 시설이 있어 사고대비가 필요한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	안전교육시간 측면에서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의 차등화 미비
규제대안2	영업신고자의 교육 비용 절감 및 시설이 없는 시약판매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기술인력이 면제된 영업신고자의 안전관리 능력 보완 미비, 시설이 없는 시약판매업자의 교육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판매업의 관리 필요	일부 반영
산업계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영업신고 시 기술인력 선임면제로 교육 등 보완 조치 마련 필요	반영
시민사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지정토론자)	2023. 5. 3, 화학안전정책포럼 제2주제 3차 공개토론회	최대보유량으로 관리할 경우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위험작업 증가하는 것이 우려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업신고자 교육시간)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신고자”)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허가자”)와 같은 교육시간 의무를 부여하였음. 사업장의 규모와 취급 물질에 따른 관리 차등화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는 관리자 선임의무 차등화(시행규칙 개정안 제33조, 별표 6의2)와 영업신고자의 기술인력 선임 면제(법률 제28조개정)로 달성가능하며, 안전교육 시간은 영업허가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보완하고자 대안을 선택함
- (취급시설 있는 시약판매업 교육시간) 영업허가와 영업신고 대상과 같은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자(이하 “시약판매업자”)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되 그 교육시간은 기존 안전교육 제도상 최소시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면서 대상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은 덜 수 있어 해당 대안을 선택함

3. 규제 목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의 적절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여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제고
- 사고위험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이 존재하는 시약판매업에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업종별 형평성과 시약판매업의 안전관리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 의무가 있으며, 영업허가자는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이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함. 영업신고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교육시간을 부여하여 규제 정도를 최소한으로 규정함
- 모든 시약판매업자가 아닌 영업허가, 영업신고 수준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대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규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현행 제도상 최소한의 시간인 2년마다 8시간(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운반업 취급담당자)으로 교육시간을 설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시설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되므로,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이 어렵기에 정성 모델이 적절

④ 대상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⑤ 예비분석내용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취급규모, 위험도 등의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의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상이 아님
⑥ 차등화적용 여부	기업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아닌 사업장의 위험도(취급규모)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여부와 시약판매업의 취급시설의 규모로 안전교육 시간 차등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 *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관련 규정으로 지속적·일관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 설정 곤란
- *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왔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규제 대상 여부가 구체적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정의 취지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충됨
네거티브 리스트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불가
사후 평가관리		인체·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취급 이전에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여 사후 평가관리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인 신기술 관련 규제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법령	내용	관련 조항
유럽 Directive 98/24/EC	고용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 및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필요	제8조
미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화학 물질에 대한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의무	29 CFR 1910.1200(h)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감독자에 대한 교육	29 CFR 1910.146(g)
	위험 물질 취급 및 비상 대응 관련 근로자 교육	29 CFR 1910.120(e)

○ 타법사례

법령	내용	관련 조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2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법 제23조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6.59 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6.59		76.5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6.59		76.59
기업순비용		76.59	연간균등순비용	9.2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제도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자, 시약판매업자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 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 일부 대상자의 안전교육 등 이행 중이며 규제 정도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신규 및 기존 대상 사업장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안전교육 이행 등은 기존 취급자들에게도 적용되던 절차로 규제 집행 여건상 변화는 크지 않으며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행정 집행 담당자인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절차를 마련하였기에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의 재정적 부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선행연구 조사('23.03~'23.0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와 관련된 허가, 인력선임, 안전교육 등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함
- 화학안전정책포럼 참여 및 논의('23.05)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 법률 전문가 자문의견 청취('23.05~'23.9)

-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법제연구원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규제의 적정성, 실효성 및 법리적 정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반영함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부처,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실시(~'23.9) 및 하위법률 개정안 마련(~'23.9)

2. 향후 평가계획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에서 반기별로 제출하는 현황 분석, 지방환경관서에서 수행하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성 지속 파악 예정(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현황 등)

3. 규제 정비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기존 사용업에만 적용되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비대상 요건을 다른 업종에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취급자에게 영업허가와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와 달리 기술인력 선임과 그 교육의 의무가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영업허가의 대상자 조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허가 면제(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25년 8월

4. 종합결론

-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시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 정도와 범위를 최소화한 반면 안전관리에서의 편익이 매우 큼
- 또한 피규제집단에 대해서도 선임 기준이 완화가 되어 발생하는 편익 총량이 비용 총량보다 커 비용 절감 발생이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6.59		76.5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76.59		76.59
기업순비용		76.59	연간균등순비용	9.2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안전교육 대상 추가 및 교육시간 규정>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활동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18,128,460	18,128,460
	2026	0	0
	2027	18,128,460	16,600,774
	2028	0	0
	2029	18,128,460	15,201,826
	2030	0	0
	2031	18,128,460	13,920,767
	2032	0	0
	2033	18,128,460	12,747,663
	2034	0	0
	합계	90,642,300	76,599,49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신규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수 x 추가 선임 필요 관리자 인원수 x (16시간 교육비 + 2일 인건비 단가) $= (34\text{개}) \times (1\text{명/개}) \times (88,000\text{원/명} + 445,190\text{원/명}) = 18,128,460\text{원}$		
근거설명	<p>(1) 일반 사항</p> <p>1-1) 부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부칙 제7조(영업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p>1-2) 피규제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37조와 별표 6의3 개정에 따른 피규제대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별표 6의3 제2호가목 개정과 제3호나목 신설에 따라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약 판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이하 “취급담당자”라한다)이 교육대상자로 추가됨 ○ 시행규칙 제37조와 별표 6의3 개정 외의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피규제대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법률 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별표 6의2 개정에 따라 영업허가 면제 대상(현행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영업허가(하위 규정수량 이상)·영업신고(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대상으로, 혹은 영업허가 대상에서 영업신고 대상·면제(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 허가·신고 사업장의 경우 교육대상자 증가 가능(기술인력-면제에서 허가로 변경되는 경우 한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취급담당자-면제에서 허가·신고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신고·면제 사업장의 경우 교육대상자 감소 가능(기술인력의 선임 및 교육의무면제-허가에서 신고·면제로 변경되는 경우, 별표 6의2에 따라 관리자 1명만 선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 대상 관리자 감소-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되는 경우, 면제의 경우 교육의무 면제) - 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0조,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 추가) 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허가·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장(34개의 신규 영업신고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 제20조와 화평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가 추가되어 73종의 물질이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기준)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73종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기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 신규로 화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34개로 산출됨. 화학물질 통계조사(화관법 제10조)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함.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73종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
--	---

	<p>장 3,781개소 중 기존 영업허가 사업장(1,526개소), 취급시설 미보유 사업장(1,295개소), 화관서 등 제출 사업장(385개소), 영업허가 신고 면제 사업장(통계조사 결과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541개소)를 순차적으로 제외하여 34개소의 사업장을 산출하였음.(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내부자료. 2025.6) 즉, 다른 기존 지정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신규 지정될 수 있는 73종 물질만으로 의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34개로 파악됨. <u>해당 34개 사업장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여 정기검사(4년) 대상, 안전진단 미대상, 영업신고 대상(관리자 1인 선임 대상, 안전교육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미대상 임</u></p> <p>※ 출처) 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환경부 내부자료(규정수량 고시 제정안). 2025.6</p> <p>- ④ 판매업 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6의2] 제1호 나목 2)에 따른 <판매업>의 종사자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중 점검원 선임 기준 완화(500명당 1명→5,000명당 1명)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감소 발생 가능.</p> <p>1-3) 규제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소</p> <p>○ 규제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소는 ㉠교육비 ㉡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교육대상자 인건비) 존재</p> <p>(2) 교육훈련비용 : 교육비 및 기회비용</p> <p>○ ㉠교육비</p> <p>- <교육비 단가> = 44,000원/일 (1일 8시간 기준)</p> <p>(자료) <교육비 단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경비 (환경부 고시 제 2018-23호, 2018.2.9.)</p> <p>○ ㉡교육시간에 대한 기회비용</p> <p>-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인건비(환경분야)를 적용</p> <p>- <참고-0> 참조</p>
--	--

<참고-0>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사업체별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의 평균 인원과 인건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사업체 평균 인원 (명)	인건비 (원/일)
기술인력	1	258,71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3	222,595
취급담당자	14.03	190,631

<자료> <사업체 평균 인원>, 환경부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수요 및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현황, 환경부 보유 자료

(자료)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정책연구실-280호(2024.12.4.),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통계/임금실태/엔지니어링협회 2024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 (2025.05. 접속)

(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혹은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으로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 월평균 근무일수 : 20.5일

○ 적용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주) 기술인력은 고급숙련기술자, 관리자는 중급숙련기술자, 취급담당자는 초급숙련기술자 적용

	<p>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p> <p>[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p> <p>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2</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p> <p>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부칙 <제2018-23호,2018.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피규제대상별 발생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약판매업(①)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취급담당자는 매 2년마다 8시간씩 안전교육을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시행규칙 제35조제3호에 따라 고시된 한국환경보전원 등 6개기관)에서 대면교육 이수하여야 함. 그에 따라 44,000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며, 8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기회비용으로 발생 - 시약판매업 외(②) 영업허가, 영업신고, ③ 신규 영업 신고 판매업, ④ 기존 판매업)의 기술인력(영업허가 대상 사업장만 해당)은 안전교육기관에서 매 2년마다 16시간씩 안전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 필요 → 그에 따라 88,000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며, 16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기회비용으로 발생 - 시약판매업 외(②) 영업허가, 영업신고, ③ 신규 영업 신고 판매업, ④ 기존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안전교육기관에서 매 2년마다 16시간씩 안전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 필요 → 그에 따라 88,000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며, 16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기회비용으로 발생 - 시약판매업 외(②) 영업허가, 영업신고, ③ 신규 영업 신고 판매업)의 취급담당자는 안전교육기관에서 매2년마다 8시간 대면교육 이수와 함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8시간 온라인교육(무료) 이수 필요. 그에 따라 교육비 44,000원과 16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기회비용으로 발생

(3) 교육대상자의 규제비용 분석

①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 사업장

- 취급시설 보유 시약판매업 <사업장 수> = 376개로 실제 피규제대상인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장별 시약의 수량에 대한 자료 부재로 현황 파악 어려움
(자료) <피규제 대상 시약판매업 사업장 수>, 환경부 내부자료. 2024.12.
- 타 영업허가 결직 시약판매업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력수요 미발생 및 교육수요 미발생** 가능
 - 현행 시약판매업체들 중 상당수는 기존 영업허가 대상 영업(사용업, 판매업,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을 **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에 의하여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선임하고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추가선임이 없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그 경우 취급담당자 또한 교육이수를 하고 있으므로(법률 제33조) 추가적인 교육이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 ①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영업허가 규정을 적용 받던 사업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제38조(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아울러, 취급량 기준(규정수량 고시 미수립), 사업장별 시약 수량 등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피규제사업장 여부 및 피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실제 인원 수의 특징이 어려움
-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을 직접취급하는사람(취급담당자)> 규모의 파악

	<p>이 어려움. <참고-0>의 취급담당자 평균인원은 영업허가 사업장의 사업장별 취급담당자 인원 수이기에 시약판매업의 취급담당자에게 적용이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사유로 정성분석을 시행하면, 시약판매업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별(관리자 1명, 취급담당자 다수)로 매2년간 44,000원의 교육비와 관리자 인건비(222,595원)와 취급담당자 인건비(190,631원/명)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모든 시약판매업에 대해서가 아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적용하여 법 제27조, 제28조의 영업허가(하위 규정수량 이상)·영업신고(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마련함 <p>②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서 영업허가·영업신고 대상으로, 혹은 영업허가 대상에서 영업신고 대상·면제 대상으로 변경되는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허가/신고/면제)가 변경되는 사업장의 현황 파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으로 유형대상을 분류하여 제시해야 하나, 아직 해당 규정수량 기준 고시가 수립되지 않고 사업장별 최대보유량*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장을 구분(허가/신고/면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대보유량은 시설의 규모를 반영한 기준으로, 단순 축적량인 연간 사용량과 구별, 현행 법령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의 기준으로, 현재 최대보유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으로 정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의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영업허가/신고/면제 구분 - 영업허가 대상자의 관리자 선임 인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규제 대상자 전체 개별 사업장의 취급량과 종사자 수 등이 필요하나 정확한 자료가 부재(개정 시행규칙 별표 6의2) ○ 위와 같은 사유로 정성분석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의 경우,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88,000원과 16시간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517,424원이 발생(면제→허가) 또는 절감(허가→신고·면제)의 가능성 있음 - 관리자의 경우,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88,000원과 16시간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445,190원이 발생(면제→허가·신고) 또는 절감(허가→신고·면제)의 가능성 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담당자의 경우,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44,000원과 16시간 교육(온라인 포함)에 따른 기회비용 381,262원이 발생(면제→허가·신고) 또는 절감(허가→면제)의 가능성이 있음 <p>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0조,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특정표적장기독성, 피부부식성 1B, 1C 추가) 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허가·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장(34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개수는 잠정적으로 제5차 화학물질통계조사와 규정수량 고시(안)을 가지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산출 결과 34개소로 같이 예상되나, 규정수량 고시가 수립되지 않아 추후 피규제대상자 변동의 여지가 있음.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34개소 사업장은 신규 영업신고 사업장으로 예상됨(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내부자료. 2025.6) - 해당 피규제대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는 선임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개정안 [별표6의2] 제3호)와 취급담당자임 - 신규 사업장의 관리자 수는 영업신고 사업장별 1명이기에 신규 관리자인 교육대상자는 34명이고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88,000원과 16시간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445,190원이 발생. 따라서 25년부터 격년으로 $(34\text{개}) \times (1\text{명}/\text{개}) \times (88,000\text{원}/\text{명} + 445,190\text{원}/\text{명}) = 18,128,460\text{원}$의 비용발생 ※ 부칙 제7조은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규 73종의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신규 사업장의 취급담당자 수에 기존 영업허가자의 취급담당자 수 평균(14.03명)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 규모가 달라 부적절함. 취급담당자는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44,000원과 16시간 교육(온라인 포함)에 따른 기회비용 381,262원이 발생하나 34개소의 취급담당자 수(사업장별 취급담당자 인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성분석 시행 <p>④ 판매업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6의2] 제1호 나목 2)에 따른 <판매업>의 종사자수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선임기준 완화(500명당 1명→5,000명당 1명)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감소 발생 가능. 다만, 판매업에 대한 종사자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드시 인력절감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만약,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가 다른 허가 대상 영업(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을 겸
--	---

	<p>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수(제조업, 보관저장업의 경우, 현행 판매업과 같이 500명당 1명의 점검원 추가 선임 기준)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실제 인력 감축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중 타 허가 대상 영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 등의 정확한 비중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피규제 대상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정성분석 시행, 관리자의 경우 절감되는 1명당 2년마다 교육비 88,000원과 16시간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 445,190원 절감(허가→신고·면제)의 가능성 있음
--	--

규제영향분석서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 차>

1. 수질오염 방지·제거 조치 의무 신설
2. 여과재 세척 설비 설계 의무
3. 역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질오염 방지·제거 조치 의무 신설								
	2.규제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3.위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7.23~2025.09.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수질오염사고의 구체적인 방제 조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마련 필요 ○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방지 2.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3.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수거 4.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에 사용된 자재 및 약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한 처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20%;"></th> <th style="width:50%;">유형</th> <th style="width:30%;">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버리는 행위를 한 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버리는 행위를 한 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버리는 행위를 한 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수역에 유류 등 오염물질 유출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오염물질 신속 제거, 오염 확산 방지 등)를 규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함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피규제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물환경 안전성 제고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복지 편익이 기대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6조의3(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 법 <u>제 1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방 지와 누출·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방지</u> <u>2.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u> <u>3.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수거</u> <u>4.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에 사용된 자재 및 약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한 처리</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수질오염사고의 구체적인 방제조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마련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내용	1.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방지 2.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3.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수거 4.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에 사용된 자재 및 약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한 처리
규제대안2	대안명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내용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구체적인 방제조치(오염물질 신속 제거, 오염 확산 방지 등)를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 유출 등으로 공공수역 오염 발생 시, 신속한 방제 가능	특이사항 없음
규제대안2	조치해야 할 사항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행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수질오염 방제관련 경험이 적은 행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빠른 방제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특이 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2가 간략해서 피규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 수질오염사고 방제 관련 경험이 적은 피규제자일 경우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방제조치가 지연될 수 있고, 방제가 지연될 경우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
 - 따라서, 피규제자가 방제 관련 경험이 적다는 전제하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각 단계별(유출·누출 방지 → 확산방지 → 제거 및 수거 → 방제 자재 안전한 처리)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조기에 방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대안1 선택

3. 규제목표

- 공공수역에 유류 등 오염물질 유출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오염물질 신속 제거, 오염 확산 방지 등)를 규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유류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2024년 1월 경기도 평택시 관리천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가 늦어져 오염사고 범위가 8.5km로 확산되어 사고 수습에 약 30일, 총 138억원의 비용이 발생함
- 본 규제는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수단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본 규제사무는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취해야 할 방제조치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본모델/예비분석표 모델 등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④ 대상 업종	공공수역을 오염 또는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자는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음
⑤ 예비분석내용	본 규제사무는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취해야 할 방제조치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본모델/예비분석표 모델 등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또, 공공수역을 오염 또는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자는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 아님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와는 무관
- 일몰설정 여부 : 방제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에 일몰 설정 대상아님(일몰설정 예외기준에 해당)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공공수역에 유류 등 오염물질 유출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오염물질 신속 제거, 오염 확산 방지 등)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방
식 적용 불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Clean Water Act」 :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출한 자는 즉각적으로 유출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 오염물질 제거, 차단, 복구 등)를 신속히 시행해야 함을 규정
- (EU) 「Water Framwork Directive(2000/60/EC)」 : 오염물질 유출 시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는 즉시 당국에 통보하고, 오염 확산방지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① 제6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는 행위자에게 있으며, 조기에 조치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될 경우 처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법령에서도 오염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가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수 있으며(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규정(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하고 있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한 수준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정안 마련('25.6월)

2. 향후 평가계획

-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내용을 분석하는 '수질오염사고와 대응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정책 효과를 검증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오염발생 행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오염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에 해당됨
- 또한,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영 및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아니며, 유사 입법례가 있고,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도 높으며, 행정적·재정적으로 집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		0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물환경 안전성 제고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복지 편익이 기대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위자 등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공공수역 오염물질 방제조치 수행 대상 행위자 등
활동제목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제거 조치 수행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규제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규정은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 예정 (부칙 참조) - 2025년 시행 예정 <p>1. 현황</p> <p>○ 피규제대상자 : 공공수역의 방제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행위자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2항 및 제1항 1호/2호/4호 행위의 행위자등 <p>○ 피규제대상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2항 및 제1항 1호/2호/4호 행위의 ‘행위자등’은 매우 많으며,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6호, 2024. 1. 23., 일부개정]</p> <p>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u>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u>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u>정당한 사유 없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2024. 2. 6.></p> <p>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p> </div>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 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2019-2023년 5개년 간 수질오염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사고는 총 666건 발생
- 2023년에는 128건 발생
- <참고 A-1> 참조

<참고 A-1>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현황

구분	발생 건 수 (건)
총건수 (건)	666
2023	128
2022	99
2021	139
2020	162
2019	138

(자료) '2023년도 수질오염사고와 대응 연차보고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 p.7.

○ 2023년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대응조치 현황

- 2023년 발생한 수질오염사고의 대응조치는 <참고 A-2> 참조

<참고 A-2> 2023년 수질오염사고 대응조치 현황

구분	건 수 (건)
계 (건)	128
물리적 방제	45
물리·화학적 방제	16
오염원 회수	38
폐사물 고기수거	29

(자료) '2023년도 수질오염사고와 대응 연차보고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4., p.39.

2.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분석

○ 개정안에 따른 주요 규제 내용

현행	개 정 안
신설	<p>제26조의3(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방지와 누출·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방지 2.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3.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수거 4.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에 사용된 자재 및 약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한 처리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u>공포한 날부터 시행</u>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제73조제3항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비점오염원의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 서식 제40호의2, 제40호의3, 제40호의5는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부담 발생 요소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행규칙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제15조2항에 규정된 수질오염사고의 구체적인 방제조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 것임. 이에 따라 피규제자들에게는 개정안 시행규칙 제26조3에 따른 방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 의무의 준수를 위한 규제 부담이 발생함 ○ 정성분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공공수역의 오염 범위 및 오염 수준 등에 따라 방제조치 비용이 상이하며 방제조치 비용 단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이에 정성분석 시행
--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구체적인 방제조치 수행에 따른 오염(우려)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편익항목	환경오염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수역에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 수질오염물질의 신속 제거와 확산 방지를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수질오염사고의 구체적인 방제조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본 규제개정안에서는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발생 행위자가 조치해야 할 구체적인 방제조치를 규정됨에 따라 물환경 안전성 제고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복지 편익이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환경복지 편익을 화폐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정성분석 시행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여과재 세척 설비 설계 의무		
	2.규제조문	[별표 17] 제2호 나목 1) 가) 개정, 다) 및 라) 신설		
	3.위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7.23~2025.09.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오염물질 저감 성능 유지를 위해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여과형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고 수밀구조로 되어 있어 시설의 점검과 여재교체 및 세척 등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자동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다만, 전기 공급이 어렵거나 여과재 역세척수의 처리를 위한 관로 매설이 어려운 현장여건 등을 고려, 역세척 방식을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하고, 여과재 세척이 바람직하나 여과재 교체 방식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형 시설의 설치기준에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여과재 세척(역세척) 설비 설치 또는 여과재 교체 방식으로 여과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제거하도록 함 - 역세척의 방법은 무인운전에 의한 자동 역세척 방식과 인력에 의한 수동 역세척 방식으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동역세척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다만, 시설 설치 현장 여건에 따라 자동 운영이 불가한 경우 수동 역세척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첨부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고려하여 저감시설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뉴얼 상 중요사항을 상향입법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 업체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24년 기준 약 4,000개소(누적)	
		피규제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 수입업체	약 92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자가 적절한 설비를 갖춘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여과형 시설의 기본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요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로 기 운영·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입법 규정한 것으로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 현행 매뉴얼에서 권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준수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 규제 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 제1항 관련)</p> <p>1. (생 략)</p> <p>2. 시설유형별 기준</p> <p>가. (생 략)</p> <p>나. 장치형 시설</p> <p>1) 여과형 시설</p> <p>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u>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u></p> <p>나) (생 략)</p> <p><신설></p> <p><신설></p> <p>2) ~ 5) (생 략)</p>	<p>[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 제1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시설유형별 기준</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장치형 시설</p> <p>1) 여과형 시설</p> <p>가)----- ----- -----<u>여과재,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 등을 -----.</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여과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재 세척(이하 “역세척”이라 한다)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다만,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역세척을 갈음할 수 있다.</u></p> <p>라) <u>역세척은 무인운전에 의한 자동 방식과 인력에 의한 수동 방식으로 구분하며,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자동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 <p>2) ~ 5) (현행과 같음)</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본적인 설치기준 규정 필요
-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은 주로 지하에 매설되며 수밀구조를 갖추고 있어 관리자가 시설의 상태점검, 주기적 준설 및 여과재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자동 역세척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임
- 다만, 전기인입이 어렵거나, 정체수 및 역세척수의 이송처리를 위한 관로의 매설 등이 어려운 일부 지역(도로, 교량 등)의 경우 자동역세척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 관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동역세척 방식을 적용하거나 여과재 교체방식을 적용하는 등 현장여건 반영 필요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0월)'의 여과형시설 설치기준 중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관리 강화
- (정부개입 필요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을 법률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설계도 허용
	내용	여과형시설의 처리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세척(역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과형시설의 역세척이 곤란할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는 구조의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성능을 관리하는 것도 허용
규제대안2	대안명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내용	여과형시설의 처리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세척(역세척)할 수 있는 구조로만 설계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여과형시설이 설치되는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과형시설 설치 가능	여과재 교체형으로 설계된 여과형시설의 적정 관리 필요
규제대안2	여과형시설의 처리성능 적정관리에 유리	여과재를 교체하는 구조는 여과형시설로 인정받지 못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입·제조업체	'23.4.17/서울역 KTX 회의실/ 대면회의	시설 유형분류 개선, 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 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안 연구용 역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입·제조업체	'23.4.27/서울역 KTX 회의실/ 대면회의	시설의 설치허용 범위, 관련 규정 개정 이전 조치방안	관련규정 개정 이전 설치허용 범위 등 조 치방안 제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의 선택

- 여과형 시설의 설치기준에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여과재 세척(역세척) 설비를 두어 여과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제거하도록 함
 - 역세척의 방법은 무인운전에 의한 자동 역세척 방식과 인력에 의한 수동 역세척 방식으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동역세척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다만, 시설 설치 현장 여건에 따라 자동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 역세척 방식과 여과재 교체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선택 근거

- 여과형 시설의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를 위해서는 여과재의 잔류 고형물 제거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거나, 주로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의 특성상 인력에 의한 수시 유지관리가 어려움
- 여과재 내의 잔류 고형물을 제거하여 시설의 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회복하고, 다음 강우에도 지속적인 처리효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과재를 역세척 하는 등 관리 필요
 - 강우 시에 가동되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척 설비는 무인운전에 의한 자동 역세척 방식이 우선 고려되는 것이 타당함

- 전기 공급이 어렵거나, 정체수나 역세척수의 이송처리를 위한 관로 매설이 어려워 무인운전이 불가한 환경의 경우 인력에 의한 수동 역세척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역세척과 수동역세척으로 구분함
- 또한, 여과재 역세척보다 여과재 교체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역세척 없이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역세척과 관련한 사항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 목표

- 여과형 시설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처리효율 확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본 규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설 설치자가 여과형 시설 설치 시 강우 종료 후 여과재의 잔류 고형물 제거를 위한 역세척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음 강우 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능력을 지속 담보하여 시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하도록 함
 - (수단1) 여과형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여과재에 축적된 이물질 제거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해당 시설이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시설 설치단계부터 역세척 또는 여과재 교체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함
 - 역세척 설비 설치 권고사항은 이미 신고 사업자 및 국고보조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 준수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에서도 성능검사 시 여과형 시설에 역세척 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환경부, 2020.10)
- (수단2)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 23.6.9)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여과재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여과재 역세척 설비 도입이 바람직하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역세척 방식에 갈음하여 여과재 교체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타당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설의 처리효율을 확보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은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한정적으로 열거할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속한 시장출시 등과 관련성이 없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의 일부면제나 유예 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독일은 EU의 물관리지침(WFD)*을 기반으로 한 연방수자원법(WHG)**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물관리협회(DWA***)에서 지침(DWA-A 138-1)****을 발간하여 빗물 침투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Water Framework Directive(WFD)

** Wasserhaushaltsgesetz(WHG)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며, 유역 단위의 수질관리, 오염원 관리,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 Deutsche Vereinigung für Wasserwirtschaft, Abwasser und Abfall e. V.(DWA)

**** DWA-A 138-1 : 빗물 침투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

○ 타법사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중 정수시설(급속여과) 시설기준에 역세척 관련 사항 제시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상세히 제시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설계도 허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설계도 허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첨부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20.10)을 고려하여 저감시설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도입('20.10)으로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에 따라 성능검사 받은 여과형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성능검사* 시 역세척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01호 (2024.10.17.))
- 따라서, 사업자가 여과형 시설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비점오염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기술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이미 행정적 집행기반이 마련된 사항으로, 규제의 집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이나 운영기관이 필요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신고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한국환경연구원, '23.5~'24.6)

2. 향후 평가계획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업체(제조·수입 업체) 등 관련 피규제자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민원발생 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여과형 시설의 장기적·지속적인 적정 처리효율을 담보하기 위해 역세척 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 현행 매뉴얼의 권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여과재 세척(역세척)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척이 어려운 경우 여과재 교체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설계도 허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로 기 운영·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 규정한 것으로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 ※ 현행 매뉴얼에서 권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준수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여과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되,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설계도 허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																																									
활동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준수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나목 1) 가), 다) 및 라) 규정은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 예정 (부칙 참조) - 2025년 시행 예정 <p>1. 현황</p> <p>○ 본 개정안 준수 의무가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의 최근 5년간 여과형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동안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의 여과형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모두> 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됨 (<표 1-1> 참조) <p><표 1-1>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의 최근 5년간 여과형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개, %)</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합계</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r> </thead> <tbody> <tr> <td>여과형 시설 [a]</td> <td>3,147</td> <td>668</td> <td>904</td> <td>403</td> <td>429</td> <td>743</td> </tr> <tr> <td rowspan="2">역세척 방법</td> <td>자동</td> <td>286</td> <td>403</td> <td>338</td> <td>266</td> <td>383</td> </tr> <tr> <td>수동</td> <td>1,471</td> <td>382</td> <td>501</td> <td>65</td> <td>163</td> </tr> <tr> <td>분류 계 [b]</td> <td>3,147</td> <td>668</td> <td>904</td> <td>403</td> <td>429</td> <td>743</td> </tr> <tr> <td>역세척 방법 비율 [c=b/a, %]</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p>(자료) <여과형시설, 역세척 방법 분류>,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센터, 2025.8.</p>	분류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과형 시설 [a]	3,147	668	904	403	429	743	역세척 방법	자동	286	403	338	266	383	수동	1,471	382	501	65	163	분류 계 [b]	3,147	668	904	403	429	743	역세척 방법 비율 [c=b/a, %]	100%	100%	100%	100%	100%	100%
분류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과형 시설 [a]	3,147	668	904	403	429	743																																				
역세척 방법	자동	286	403	338	266	383																																				
	수동	1,471	382	501	65	163																																				
분류 계 [b]	3,147	668	904	403	429	743																																				
역세척 방법 비율 [c=b/a, %]	100%	100%	100%	100%	100%	100%																																				

	<p>2. 규제 조문 및 규제부담 검토</p> <p>2-1)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의 상향입법 조항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7] 제2호 나목 1) 가) 개정, 다) 및 라) 신설 ○ 본 규제 개정안은 이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u>기준수되고 있는 사항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상향 입법함으로써 법적구속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규제 부담이 다소 발생하나 이를 정량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수 사항을 현황자료 및 근거법령을 통해 밝히고 정성분석함 -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첨부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고려하여 저감시설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p>2-2) 조문별 규제 부담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개정안 [별표17] 2. 나. 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과 동일 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비점오염 저감계획서에서 이미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기재하고 운영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음 ○ <u>개정안 [별표17] 2. 나. 다)및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과 동일 사항일 뿐만 아니라 역세척 설계/여과재 교체 설계 및 자동방식/수동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제시한 구조와 작동법 외 대안이 없으므로 사업자별 어느 시설과 방식을 택하더라도 준수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참고 A>, <참고 B> 참조
--	---

<참고 A> 개정안 [별표17] 2. 나. 다) 관련, 현행 역세척 설비 설치 의무 사례

“여과형 시설은 인위적인 구조물 내에 여재층과 여재의 세척 및 강우 종료 후 정체수를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

.....

.....

되고 강우가 종료된 후에는 여재층에 역세척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강우유출수 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

여과형 시설은 인위적인 구조물 내에 여재층과 여재의 세척 및 강우종료 후 정체수를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강우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품질의 여과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여재로 구성된 여재층을 초기강우가 통과하면서 여재층의 공극이나 표면에 오염물질이 포획되고 강우가 종료된 후에는 여재층에 역세척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강우유출수 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또 강우종료 후 인위적인 구조물 내에 정체되는 정체수를 배수하여 다음 강우 시 정상적인 여과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과조의 폐색을 낮추고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여과형 시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과조 전단에 전처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48.

	<p><참고 B> 개정안 [별표17] 2. 나. 라) 관련, 현행 여과형 시설 자동 방식 고려 사례</p> <p>나) 설치기준 해설</p> <p>(1) 설치위치 및 설치조건</p> <p>⑥ 무인운전이 가능토록 하며, 단지 등 구역 내 설치되는 시설은 중앙감시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감시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p> <p>나) 설치기준 해설</p> <p>(1) 설치위치 및 설치조건</p> <div style="border: 1px dashed #add8e6; padding: 5px; margin: 10px 0;"> <p>여과형 시설을 이용해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치조건 및 입지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수구역 대부분이 불투수면일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여재 교체, 협잡물제거, 장비 수선 등이 가능한 위치 및 구조로 한다. ③ 시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시설 구조물의 깊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오염물질 제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시설과 조합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⑥ 무인운전이 가능토록 하며, 단지 등 구역 내 설치되는 시설은 중앙감시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감시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div> <p>(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49.</p> <p><여과형 시설 자동 운전></p> <p>⑤ 여과형 시설은 …… …… . 이에 자동운전을 실시하여 불규칙적인 운전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역세척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p> <p>⑤ 여과형 시설은 강우발생 시에만 운영되어 불규칙한 운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지하에 매설되고 심도가 깊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자동운전을 실시하여 불규칙적인 운전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역세척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역세척 설비는 역세척 폐수 처리가 가능해야하고 역세척 전에 정체수를 우선 배제해야 한다.</p> <p>(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9.</p> <p><역세척 설비 설치 관련 규정></p> <p>⑤역세척 설비를 부득이하게 <u>설치 못할 경우</u> 인력에 의한 역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p> <p>(5) 역세척 설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add8e6;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우가 종료되면 48시간 이내에 역세척을 실시한다 ② 역세척은 여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역세척수로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역세척 폐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역세척 설비를 부득이하게 설치 못할 경우 인력에 의한 역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 </div>
--	---

	<p>(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8.</p> <p>○ 정성분석 시행</p> <p>- 본 규제 개정안은 이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기준수되고 있는 사항임</p>
--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준수로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
편익항목	환경오염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기본적인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 및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임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은 국민들의 물 건강 개선으로 연결됨. 다만, 국민의 물 건강 개선 편익을 정량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성분석 시행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역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			
	2.규제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 나목 1) 나) 개정			
	3.위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제2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7.23~2025.09.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 성능 유지를 위해 여과재 세척 시기, 자체 점검 등 여과형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시설의 적정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형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에 여과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여과재 역세척 실시, 손실수두* 증가 여부의 주기적 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 물이 흐르면서 마찰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물의 높이(수두)로 나타낸 값으로 여과재 세척, 교체 등 여과재 관리 판단 기준 - 여과재의 손실수두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여과재 교체방안 강구, 여과조 내 침전물 제거 등 여과조 유지관리 기준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첨부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고려하여 저감시설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뉴얼 상 중요사항을 상향입법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여과형 시설의 오염물질 처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여과재 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는 현행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입법 규정한 것으로		

		로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제76조제2항 관련)</p> <p>1. (생 략)</p> <p>2. 시설유형별 기준</p> <p>가. (생 략)</p> <p>나. 장치형 시설</p> <p>1) 여과형 시설</p> <p>가) (생 략)</p> <p>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u>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기준(제 76조제2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시설유형별 기준</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장치형 시설</p> <p>1) 여과형 시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u>여과재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경우 강우 종료 후 역세척을 실시하고 손실수두 증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손실수두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다) <u>역세척을 갈음하여 여과재를 교체하는 구조로 설계한 경우 손실수두 증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수두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기존 여과재와 포획된 오염물질은 적정히 처리하여야 한다.</u></p> <p>라) <u>여과조 내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리 사항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여과재 세척 시기, 시설 성능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적정 관리·운영 방안 제시 필요*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20)’의 중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상향입법
- (정부개입 필요성)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므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을 법률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여과재 교체 및 침전물 제거
	내용	세척·점검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규제대안1	대안명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내용	여과형시설 설계유형(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에 따라 강우종료 후 역세척 실시 및 손실수두 증가 여부 주기적 점검으로 여과재 교체 등 관리
규제대안2	대안명	여과형시설 관련 통합 관리기준 제시
	내용	여과형시설은 강우종료 후 역세척 실시 및 손실수두 증가 여부 주기적 점검으로 여과재 교체 등 관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특이사항 없음	유형별 시설관리 미흡
규제대안1	여과형시설 유형별로 역세척, 여과재 교체 방안 강구 및 침전물 제거 등 여과조 유지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특이사항 없음
규제대안2	여과형 시설의 통합적 관리기준 제시	여과형시설의 설계유형에 맞는 적정 관리방안 부재로 효율적 시설관리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입·제조업체	'23.4.17/서울역 KTX 회의실/대면회의	시설 유형분류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안 연구용역 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여과형 시설의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를 위해서는 여과재의 잔류 고형물 제거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거나, 주로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의 특성상 인력에 의한 수시 유지관리가 어려움
- 여과재 내의 잔류 고형물을 제거하여 시설의 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회복하여 다음 강우에도 지속적인 처리효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과재를 역세척 하는 등 관리 필요
 - 역세척 수행으로 여과재 내 고형물을 제거하여 여과재를 초기조건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처리 효율과 손실수두를 회복하도록 함
- 여과재의 손실수두는 처리능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이므로 여과재층의 손실수두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손실수두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대안1)
- 상기 사항은 매뉴얼에 명시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 목표

- 여과형 시설의 관리·운영 기준을 상세히 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처리효율 확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를 위해 운영·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설 설치 및 관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설 설치·관리자는 여과형 시설 설치 시 여과재의 고형물 제거를 위한 역세척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강우 종료 시 역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과재의 손실수두 증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 회복 불가 시 여재 교체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이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
 - 또한, 매뉴얼 개정('15)에 따른 역세척 설비 설치 권고사항은 이미 신고 사업자 및 국고보조 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 준수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에서도 성능검사 시 여과형 시설에 역세척 설비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피규제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관리·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은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 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한정적으로 열거할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속한 시장출시 등과 관련성이 없음
규제 샌드박스		규제의 일부면제나 유예 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독일은 EU의 물관리지침(WFD)*을 기반으로 한 연방수자원법(WHG)**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물관리협회(DWA***)에서 지침(DWA-A 138-1)****을 발간하여 빗물 침투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Water Framework Directive(WFD)

** Wasserhaushaltsgesetz(WHG)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며, 유역 단위의 수질관리, 오염원 관리,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 Deutsche Vereinigung für Wasserwirtschaft, Abwasser und Abfall e. V.(DWA)

**** DWA-A 138-1 : 빗물 침투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

○ 타법사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중 정수시설(급속여과) 시설기준에 역세척 관련 사항 제시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상세히 제시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20)에 반영되어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으로 신고 사업자 및 국고보조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 준수되고 있는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도 확보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기술검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이미 행정적 집행기반이 마련된 사항으로, 규제의 집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이나 운영기관이 필요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신고제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한국환경연구원, ‘23.5~’24.6)

2. 향후 평가계획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검업체(제조·수입 업체) 등 관련 피규제자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민원발생 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종합결론

-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여과형 시설의 장기적·지속적인 적정 처리효율을 담보하기 위해 역세척 설비의 관리·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 현행 매뉴얼의 권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여과형 시설 내 여과재 관리를 통한 장기적·지속적 처리효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여과재 세척 실시 및 점검 의무는 현행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입법 규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비용 발생없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여과형시설 설계유형별(역세척 구조, 여과재교체 구조) 관리기준 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활동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기준 강화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나목 1) 나) 규정은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 예정 (부칙 참조) - 2025년 시행 예정 <p>■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비용 추산</p> <p>○ 개정안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 나목 1) 나) 개정 <p>○ 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대비 규제 부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별표 18] 제2호 나. 나)다)라) 등은 강우 종료 후 역세척, 손실두부의 증가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여과재 교체 또는 방안 강구 등을 <u>법적으로</u> 규정함에 따라 현행(매뉴얼 규정 내용)에 비하여 <u>규제 부담이 강화됨</u> <p>※ 해당 사항들은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준수되고 있으나 현행 <매뉴얼>에서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개정안에서는 이들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u>법적 근거를 마련</u></p> <p>(주) <매뉴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이하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8.</p> <p>(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참고 1> 및 <참고 2> 참조</p> <p>○ 정성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별표 18] 제2호 나. 나)다)라)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u>기</u>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

	<p>임</p> <p>- 다만, 상향 입법함으로써 법적구속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규제 부담이 다소 발생하나 이를 정량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수사항을 현황자료 및 근거법령을 통해 밝히고 정성분석함</p> <p><참고 1> <현행> 역세척 설비 설치 의무 관련 매뉴얼</p> <p><강우 종류 후 역세척 실시></p> <p>여과형 시설은 인위적인 구조물 내에 여재층과 여재의 세척 및 강우종료 후 정체수를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강우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품질의 여과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여재로 구성된 여재층을 초기강우가 통과하면서 여재층의 공극이나 표면에 오염물질이 포획되고 강우가 종료된 후에는 여재층에 역세척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강우유출수 처리가 가능토록 한다. 또 강우종료 후 인위적인 구조물 내에 정체되는 정체수를 배수하여 다음 강우 시 정상적인 여과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과조의 폐색을 늦추고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여과형 시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과조 전단에 전처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48.</p> <p><역세척 설비 운영(자동 운영)></p> <p>(5) 역세척 설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우가 종료되면 48시간 이내에 역세척을 실시한다 ② 역세척은 여재 내 포획된 고품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역세척수로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역세척 폐수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역세척 설비를 부득이하게 설치 못할 경우 인력에 의한 역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 </div> <p>(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8.</p>
--	---

<참고 2> <현행> 손실수두 회복 방안 강구 규정

<손실수두 회복>

② 역세척의 방법에는 수세척과 공기세척+수세척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여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세척+수세척의 방법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입상여재의 경우에는 공기세척이 50m³/m²/h 내외가 좋고 수세척은 40m³/m²/h정도로 한다. 역세척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 ~ 5분 정도로 수행한다. 그러나 여재의 형상, 입경, 비중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세척 조건은 여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재 내 고형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여재의 초기조건으로 환원되어 처리효율과 손실수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8.

<여재 선택 시 고려 사항 / 여재 회복 방안 강구 관련>

여재를 선정할 때에는 여재의 손실수두가 높지 않고, 투수능이 여과선속도의 1.5 ~ 2배 이상의 여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 장시간 물속에 잠겨있어도 강도가 변하지 않고, 역세척시 마모가 발생하지 않으며, 균등계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종류의 여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③ 여재층의 두께는 6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재층의 두께가 작을 경우 고형물 제거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초기우수의 유입유량이 강우사상별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두께 이상의 여재층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작은 강우량일 때 매우 낮은 여과속도가 발생하며 이때 미세 고형물이 여재층 내부로 더 많이 이동하므로, 여재층이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여과사(濾過沙)처럼 입경 작은 여재일수록 표면여과가 대부분이나 여재의 입경이 증가할수록 여재내 입자상물질 포획층이 증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2020.10., 환경부, p.157.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효율성 증가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편익항목	환경오염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강화는 저감시설의 처리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물 건강 개선에 기여할 것임 ○ 다만, 이 같은 물 건강 개선에 따르는 편익을 정량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성분석 시행함

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
2.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3.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			
	2.규제조문	별표 8의13			
	3.위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4.28~2025.06.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라, 야생생물 영업 허가 기준을 시행 규칙에서 구체화할 필요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임 			
	7.규제내용	야생동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가운데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본 규제가 정하는 규모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 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예외기준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5. 규제 정비 계획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3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별표 8의13]</p> <p><u>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제29조의7 관련)</u></p> <p>1. 공통 기준</p> <p>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p> <p>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사 관련 부속시설에 가축과 야생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p> <p>다. 영업시설은 야생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야생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p> <p>라.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야생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p> <p>마.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p> <p>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개별 기준</p> <p>가. 야생동물 판매업</p> <p>1)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p> <p>(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p> <p>(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p> <p>(3) (1)과 (2)에도 불구하고, 뱀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 1.5배 이상일 것</p> <p>2)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p> <p>3)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p> <p>4) 격리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p> <p>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야생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p> <p>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p> <p>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 대해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p>

현 행	개 정 안
	<p>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야생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야생동물 수입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p>다. 야생동물 생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의 경우)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라)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p> <p>마) 사육설비는 야생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p> <p>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체중 3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야생동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소리를 내는 야생동물의 경우), 악취방지설비(냄새가 나는 야생동물의 경우) 등을 갖춰야 한다.</p> <p>2) 사육실</p> <p>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p> <p>나)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p> <p>(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1/3 이상인 야생동물은 꼬리 길이를 제외한다)</p> <p>(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p> <p>(3) (1)과 (2)에도 불구하고, 뱀목의 경우 사육설비 둘레의 길이가 몸길이의</p>

현 행	개 정 안
	<p>1.5배 이상일 것</p> <p>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p> <p>마) 사육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조류는 제외한다).</p> <p>3) 분만실</p> <p>가)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p> <p>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p> <p>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조류는 제외한다).</p> <p>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야생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p> <p>4) 격리실은 가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p> <p>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p> <p>1) 야생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판매업,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p> <p>2)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3)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p> <p>비 고 제1호(공통기준)의 가목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함
- 야생생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하며, 본 규제도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영업허가 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되는 법률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규정
	내용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안(규정 없음)
	내용	규정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없음
현행유지안	없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미흡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야생동물 영업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5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23.6, '24.8, '24.11, '25.1, '25.4)	파충류/양서류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기준마련 필요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파충류/양서류 기준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시에 영업과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 규제는 동물 영업자에 대해 이미 규제를 적용해 온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영업자 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였음

3. 규제 목표

-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영업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한 규제로 해당 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야생동물 영업자를 특정하기 불가능
④ 대상 업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등에 따른 해당 업종 특정 불가능
⑤ 예비분석내용	-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관련 정 보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규제차등화 필요 여부 판단 불가능 - 향후 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업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시설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동물복지법(Tierschutzgesetz)」은 제2절 동물 관리 제2조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거나, 돌보아야 하는 사람의 의무로 1. 종(種)에 따라 동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먹이를 주고 보호하며 행태에 적합하게 수용(收容)할 것, 2. 종 특유의 운동 가능성을 제한하여 동물에게 고통이나 예방할 수도 있는 괴로움 또는 상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 3. 동물에게 적합하게 먹이를 주고 손질하며 행태에 적합하게 수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스위스: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4)은 제1장 ‘총칙’ 제4조 ‘원칙’에서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의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통, 통증, 상해를 입히거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존엄(dignity)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동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방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동물 관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타법사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 11](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피규제자 대부분 규제에 공감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와 관련하여, 야생생물법 제22조의11제2호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생산·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규제에 대한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높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관리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22. 12. 13.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예 따라 제22조의8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시설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3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수정 및 보완	'26년~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위한 설비 기준 준수
비용항목	설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 조문</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13]</p> <p>○ 규제 시행 시기</p> <p>- 본 규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 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영업의 내용·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5</p> </div>

	<p>○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개정 전 향후 신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475개에 한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함</p> <p>A. 피규제자의 영업 구분 현황</p> <p>○ 피규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p>○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5개 업체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부합하는 업체들임 <p>(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점 기준, <u>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안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규제 개정안에 관련한 영업자의 정확한 개수 파악은 현시점에서 어려움.</u> 다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5개로 파악됨</p> <p>(주) 본 규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업체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짐</p> <p>(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7.</p> <p>○ 47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겸업 사례도 많음. 한 개 혹은 복수의 영업을 수행 중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	--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B. 규제의 주요 내용

B-1. <설비 기준 준수 부담> 관련 개정안 항목

- 공간분리 관련 부담
 - 칸막이, 커튼 등 구비 및 공간분리 작업 비용
- 기타 설비시설 구비 부담
 - 개정안 [별표 8의13]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따르면, 공간 분리 뿐 아니라, 설비시설(급수·배수시설, 소독장비, 소방시설, 사육설비, 체온유지설비, 소음방지설비, 악취방지시설 등)의 구비 의무 제시됨

B-2a. 공간 분리 기준 관련 규제비용

- 비용 단가 및 규모의 특정이 어려움
 - 규제개정안에 따라 공간 분리를 위한 칸막이, 커튼 등의 구입 비용이 발생 가능
 - 다만, 영업 유형 및 업체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대상·수량이 각기 다르고 비용 단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규제비용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
- 보유개체 손실 방지를 위하여 상당수 영업장은 공간 분리 기준이 기준수 되고 있음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 야생동물 영업자들은 전염병 등에 따른 보유 개체의 폐사 발생 시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 방지를 위하여 개정안 [별표 8의13]에서 요구하는 공간 분리가 대부분 기준수되고 있음

(출처) 주코피아(ZUCOPIA, 하남시) 및 티그리스게코(하남시), 크레다이브게코(부천시) 영업장 현장방문 및 영업자 면담 결과, 2025.7.

- 파충류·양서류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여 개체별로 독립된 케이지에 수용·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공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음. <참고1>를 통하여 475개 업체를 분류군별(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로 구분한 결과, 약 86.8%가 파충류 및 양서류에 해당되어 대부분 영업자가 공간을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참고1 참조)

< 참고1 > 야생동물 분류군별 영업장 수

분류군	영업장 수(개소)		비율(%)
포유류	30	4.7	
조류	54	8.5	
파충류	422	66.9	86.8
양서류	126	19.9	
합 계	632	100.0	

(자료)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 시행 관련 영업현황 실태조사’, 에코파이 연구 수행, 환경부, 2025.5., p.19.

(주) 하나의 2개 이상의 동물 분류군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류군으로 중복 분류됨

B-2b. 공간분리 외 <기타 설비> 구비 관련 규제비용

- 비용 단가 및 규모 특정이 어려움
 - 영업 유형 및 업체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대상 및 수량이 다르며 비용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본 규제 개정안 대상 사업장들은 대부분 소음·진동관리법 및 악취방지법 등에 따라 기규제되고 있음
 - 소음, 악취 방지 의무는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 만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님. 본 규제 개정안 대상 사업장들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및 악취방지법 등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규제 개정안은 소음 및 악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본 규제 개정안에 의한 추가 비용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

<p>C. 정성분석</p> <p>○ 정성분석 시행</p> <p>- 규제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업장의 경우 <u>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u>, 야생동물 영업 유형 및 업체의 규모에 따라 규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u>시설·설비의 대상과 수량이 매우 상이</u>하고, 비용 <u>단가를 특정</u>하기 어려움.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p> <p><참고></p> <p><참고 B-2-1> 영업 구분별 공간 분리 관련 규정</p> <p>① 사육실/격리실 분리 : 판매업[제2호가목1)], 수입업[제2호나목1)], 생산업[제2호다목1)가])</p> <p>②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분리 : 위탁관리업[제2호라목1)]</p> <p>③ 판매실 분리 : 생산업 중 판매 겸업[제2호다목1)가])</p> <p>④ 분만실 분리 : 생산업[제2호다목1)가]) → 분만실은 포유류 등 해당</p>			
업종	분리 필요 공간	비고	
판매업	사육실/격리실 분리	현재도, 손실방지를 위하여, 격리 대상 개체의 전염성 질병이 다른 개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실>을 타 공간들과 분리하고 있음	(출처) 주코피아, 티그리스게코, 크레다이브게코 등 야생동물 영업장 현장방문 및 영업자 면담 결과, 2025.7.
수입업	사육실/격리실 분리		
생산업	사육실/격리실 분리		
생산업	분만실/격리실 분리		
생산업	사육실, 분만실(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의 경우)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u>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포함)</u>	기존 개체들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기존 개체들의 영향 차단을 위한 공간분리 준수 중. 격리실은 영업 손실의 최대 위험 요소인 <u>전염병 방지</u> 위한 것임. 타 시설과 격리실의 분리 관련 개정안은 칸막이/커튼 등을 허용하고 있음	
생산업	판매실 별도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	생산자들은 고객들로 인하여 보유 개체들의 <u>폐사/스트레스</u> 등 방지를	

		하는 경우)	위하여 생산실을 대부분 분리하여 운영 중
	위탁업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분리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 등은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 가능 (전염병 방지 목적인 격리실 경우 칸막이/커튼 등 허용됨)
	위탁업	개별 휴식실	비용 규모, 필요 대상 규모 등 특징이 어려움
	위탁업	동물병원과 같이 하는 경우 야생동물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 입원실 분리	위탁관리업과 동물병원 검업 사례가 많지 않으며, 주요 영업 대상인 동물병원 입원 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실과 입원실은 분리 운영될 것임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등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의 시설 기준 준수사항 규정
편익항목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국내생태계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제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시설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관리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야생동물 유래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 등의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야생동물 복지 증진,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 유래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 등의 편익을 화폐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2.규제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별표 8의 14			
	3.위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4.28~2025.06.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라, 야생생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할 필요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임 			
	7.규제내용	야생동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가운데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본 규제가 정하는 규모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예외기준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5. 규제 정비 계획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8의14와같다.</p> <p>[별표 8의14]</p> <p style="text-align: center;"><u>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의11 관련)</u></p> <p>1. 공통 준수사항</p> <p>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의13에 따른 영업장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p> <p>나.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p> <p>다.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위해 방지를 위해 외부 공간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거나 시설물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p> <p>라.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행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2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마.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영업장별로 관리책임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도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p> <p>바. 야생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p> <p>사. 노화나 질병이 있는 야생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된다.</p> <p>아.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p>

현 행	개 정 안
	<p>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p> <p>자. 영업장 내부에는 영업허가증 및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p> <p>차.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p> <p>카.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p> <p>타. 영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p> <p>파.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p> <p>하.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 야생동물 생산업자,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별지 제31호의18서식의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등)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종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p> <p>거. 야생동물 판매업자, 야생동물 수입업자</p>

현 행	개 정 안
	<p>및 야생동물 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야생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p> <p>너. 야생동물 판매업자, 수입업자, 생산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서의 야생동물 처리계획에 따라 야생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u>2. 개별 준수사항</u></p> <p><u>가. 야생동물 판매업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등에 특화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 운송업체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2)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야생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3)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 확인서를 지참한 상태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4) 야생동물 판매 시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5) 야생동물 판매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번호, 업소

현 행	개 정 안																																									
<p>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나) 야생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p> <p>다)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한 야생동물 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p> <p>라) 야생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p> <p>마) 판매 시의 건강상태</p> <p>바) 판매일 및 판매금액</p> <p>6) 5)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야생동물 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야생동물 매매 계약서(예시)</p> <p>1. 계약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매매(분양) 금액</td> <td style="width: 35%;">금 원 정 (₩)</td> <td style="width: 20%;">인도(분양)일</td> <td style="width: 30%;">년 월 일</td> </tr> </table> <p>2. 야생동물 기본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야생동물의 종류</td> <td style="width: 25%;">품 종</td> <td style="width: 15%;">성별</td> <td style="width: 45%;">암 / 수</td> </tr> <tr> <td>출생일</td> <td colspan="3"></td> </tr> <tr> <td>입수일</td> <td>생산자/수입자 정보</td> <td colspan="2">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td> </tr> <tr> <td></td> <td>특징</td> <td colspan="2"></td> </tr> </table> <p>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현재 상태</td> <td colspan="3">[]양호 []이상 []치료 필요</td> </tr> <tr> <td rowspan="4"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세부 기록</td> <td style="width: 10%;">일자</td> <td style="width: 30%;">질병명 또는 상태</td> <td style="width: 30%;">처치내역</td> <td style="width: 20%;">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매매(분양) 금액	금 원 정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야생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특징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매매(분양) 금액	금 원 정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야생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특징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현 행	개 정 안																															
	<p>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매 도 인 (분 양 인)</td> <td style="width: 15%;">주소</td> <td colspan="3"></td>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서명 날인</td>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인)</td> </tr> <tr> <td>영업허가 번호</td> <td colspan="3"></td> </tr> <tr> <td></td> <td>연락처</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성 명</td> <td colspan="2"></td> <td></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매 수 인 (입 양 인)</td> <td style="width: 15%;">주소</td> <td colspan="3"></td>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서명 날인</td> <td rowspan="2"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인)</td> </tr> <tr> <td>연락처</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성 명</td> <td colspan="2"></td> <td></td> <td></td> </tr> </table> <p>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p> <p>9)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u>나. 야생동물 수입업자</u></p> <p>1) 야생동물 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p> <p>2)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3) 야생동물 수입업자가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u>다. 야생동물 생산업자</u></p> <p>1)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해야 한다.</p>	매 도 인 (분 양 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허가 번호					연락처	성 명					매 수 인 (입 양 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 명				
매 도 인 (분 양 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허가 번호																															
	연락처	성 명																														
매 수 인 (입 양 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 명																														

현 행	개 정 안
	<p>2) 개체관리카드에 출생일, 출산야생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p> <p>3)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p> <p>4) 별지 제31호의19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5) 야생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야생동물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u>라.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u></p> <p>1)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p> <p>2) 야생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p> <p>3)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4)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p> <p>가) 허가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품</p>

현 행	개 정 안
	<p>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p> <p>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p> <p>라)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p> <p>마) 위탁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p> <p>5) 야생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야생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함
- 야생생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하며, 본 규제도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되는 법률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내용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외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안
	내용	규정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없음
규제대안2	없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미흡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야생동물 영업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5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23.6, '24.8, '24.11, '25.1, '25.4)	파충류/양서류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기준마련 필요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파충류/양서류 기준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 8에서 규정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본 규제는 동물 영업자에 대해 이미 규제를 적용해 온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였음

3. 규제 목표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업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한 규제로 해당 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야생동물 영업자를 특정하기 불가능
④ 대상 업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등에 따른 해당 업종 특정 불가능
⑤ 예비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규제차등화 필요 여부 판단 불가능 ○ 향후 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업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 되면 준수사항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신기술·신산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동물복지법(Tierschutzgesetz)」은 제2절 동물 관리 제2조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거나, 돌보아야 하는 사람의 의무로 1. 종(種)에 따라 동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먹이를 주고 보호하며 행태에 적합하게 수용(收容)할 것, 2. 종 특유의 운동 가능성을 제한하여 동물에게 고통이나 예방할 수도 있는 괴로움 또는 상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 3. 동물에게 적합하게 먹이를 주고 손질하며 행태에 적합하게 수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규정하고 있음

- 스위스: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4)은 제1장 ‘총칙’ 제4조 ‘원칙’에서 동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 조의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고통, 통증, 상해를 입히거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존엄(dignity)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동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방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동물 관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타법사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별표 12](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으로서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이며, 여러 차례의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피규제자 대부분 규제에 공감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와 관련하여, 야생생물법 제22조의11제2호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생산·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규제에 대한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높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관리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22. 12. 13.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22조의8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수정 및 보완 검토할 예정임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4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수정 및 보완 검토	'26년~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령 제 14조의4에서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제로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기 규제를 적용해 온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야생동물에게 적용하며, 야생동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설정되었음

별첨**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의 실적보고 등 서류 작성 및 보고의무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 조문</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별표8의14]</p> <p>○ 규제 시행 시기</p> <p>- 본 규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보관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8</p> </div> <p>○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개정 전 향후 신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475개에</p>

한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함

A. 피규제자의 영업 구분 현황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475개 업체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부합하는 업체들임

(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점 기준,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안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정확한 업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5개로 파악됨

(주) 본 규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업체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짐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7.

- 47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결과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겸업 사례도 많음. 한 개 혹은 복수의 영업을 수행 중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p>B. <야생동물 영업자의 실적보고 등 서류 작성 및 보고의무>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비용 발생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 이전에는 영업허가의무 및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었음 - 따라서, 아래에서 제시되는 모든 규제 항목들은 새로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임 ○ <행정 비용> 관련 주요 규제 내용 및 비용 발생 요소는 다음 ①②③④와 같음 <p>① <영업자실적 보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서류 작성/보고 등의 <u>추가 부담 발생</u>. 다만, <u>업체별 규모 특정이 어려움</u> ※ 영업자 실적 보고 : 수입업자[개정안 제2호 나목 2)], 생산업자[개정안 제2호 다목 4)] 등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1호의19서식] 제출 <p>② 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휴업/폐업신고서에 따른 야생동물의 <적절 처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리 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적절 처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추가 부담 발생</u> → 다만, <u>업체별 규모 특정이 어려움</u> ※ 야생생물 양도양수보관 신고서 등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출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16서식] <p>③ <야생동물 개체관리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면담 결과 개체관리카드 및 판매기록 등 자료를 업체 <u>자체적으로 현재도 작성/관리</u>하고 있으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별지 제31호의 18서식] 작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u>업체별 [별지 제31호의 18서식] 작성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움</u> ※ 개체관리카드 : 개정안 제1호(공통 준수사항) 하목/거목 등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별지 제31호의 18서식] 작성 및 보관
--	---

	<p>④ <판매계약서 제공></p> <p>※ 판매업자 계약서 제공 : 개정안 제2호 가목 5)</p> <p>※ 업체 면담 결과 개최관리카드 등을 통하여 질병 여부 등을 관리/기록하고 정보 제공하고 있음. 매매금액 등도 현행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예시)<야생동물 매매계약서> 작성 의무 발생. 기존 방식과 개정안(예시)<야생동물 매매계약서> 작성 비용의 증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p> <p>C. 정성분석 시행</p> <p>○ 규제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서류 작성 등의 <행정> 부담 발생함, 다만 추가적인 행정 부담에 따르는 개별 업체들의 비용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p> <p>○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p>
--	---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의 상주 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비용항목	노동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 조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별표8의14] - 개정안 [별표 8의14] 제1호(공통준수사항) 마목 <p>○ 규제 시행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보관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8</p> </div> <p>○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개정 전 향후 신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475개에 한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함</p>

A. 피규제자의 영업 구분 현황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475개 업체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부합하는 업체들임
 - (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점 기준,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안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정확한 업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5개로 파악됨
 - (주) 본 규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업체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짐
 -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7.

- 47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결과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겸업 사례도 많음. 한 개 혹은 복수의 영업을 수행 중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p>B. 주요 규제 내용 및 비용 발생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장 별로 관리책임자 1명 선임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장에 영업자가 상주하는 경우 영업자 본인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음- 다만, 규제 개정안에 따라 영업자 본인이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영업자가 상주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발생 <p>C.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자 본인이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인력의 추가 고용 부담은 미발생○ 영업자가 관리책임자로서 상주해야 하는 부담은 발생 가능. 다만, 본 규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상주 부담>의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움<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장 방문 조사 결과, 영업자가 상주하고 있었음 (출처) 주코피아(ZUCOPIA, 하남시) 및 티그리스게코(하남시), 크레다이크게코(부천시) 영업장 현장방문 및 영업자 면담 결과, 2025.7.○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	---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의 운영 및 관리 준수사항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 조문</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별표8의14]</p> <p>○ 규제 시행 시기</p> <p>- 본 규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보관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8</p> </div> <p>○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개정 전 향후 신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475개에 한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함</p>

A. 피규제자의 영업 구분 현황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475개 업체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부합하는 업체들임
 - (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점 기준, 개정안 시행전이므로 개정안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정확한 업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75개로 파악됨
 - (주) 본 규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업체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짐
 -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7.

- 47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결과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겸업 사례도 많음. 한 개 혹은 복수의 영업을 수행 중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p>B. <야생동물 영업자의 운영 및 관리 기준>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 야생동물의 탈출 방지 위한 시설물의 관리·점검 -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 확보 -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야생동물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의 청결 유지, 야생동물 소음 최소화 -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 폐업 시 야생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 등 <p>C. 정성분석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적 사육 의무 등과 같은 야생동물 영업자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함 ○ 다만, 업체 규모, 영업 종류, 복수 영업 여부 등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영업장마다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비용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이에 정성분석 시행함
--	---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등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규정
편익항목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제 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영업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는 국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보건 복지 증진과 같은 편익을 발생시킬 것임 ○ 다만, 이러한 편익 규모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성분석 시행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의무			
	2.규제조문	제29조의12제2항 및 제3항			
	3.위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4.28~2025.06.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라, 야생생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교육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할 필요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임 			
	7.규제내용	야생동물 영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 관련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가운데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본 규제가 정하는 규모 기준으로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5. 규제 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9조의12(교육) ①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2.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p>②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년 3시간 이상의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야생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p>4.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p> <p>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함
- 야생생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하며, 본 규제도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에 따라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되는 법률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야생동물 영업자가 이수하는 교육 관련 규정
	내용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 관련 사항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안
	내용	규정 없음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없음
규제대안2	없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미흡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규정한 교육에 대해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영업자	5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23.6, ’24.8, ’24.11, ’25.1, ’25.4)	없음	없음

3. 규제 목표

-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과정에서 야생동물의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업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한 규제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특정하기 불가능
④ 대상 업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등에 따른 해당 업종 특정 불가능
⑤ 예비분석내용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규제차등화 필요 여부 판단 불가능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동물원 및 수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와 관련하여, 국립생물자원관 및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여 행정의 집행 가능성을 높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관리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라 영업자가 받는 교육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본 규제는 야생동물 영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제로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설정하였음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야생동물 영업자가 이수하는 교육 관련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118.18		118.1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18.18		118.18
기업순비용		118.18	연간균등순비용	14.2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야생동물 영업자가 이수하는 교육 관련 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의 교육 이수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14,292,750	14,292,750
	2026	14,292,750	13,677,273
	2027	14,292,750	13,088,299
	2028	14,292,750	12,524,688
	2029	14,292,750	11,985,348
	2030	14,292,750	11,469,232
	2031	14,292,750	10,975,342
	2032	14,292,750	10,502,719
	2033	14,292,750	10,050,449
	2034	14,292,750	9,617,655
	합계	142,927,500	118,183,75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교육 대상자수 X 총 교육시간 X 시간당임금 (475*3*10030)		
근거설명	<p>○ 규제 조문</p> <p>-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12(교육)</p> <p>○ 규제 시행 시기</p> <p>- 본 규제는 2025년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한 것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p> </div>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12. 14.] 제22조의8

A. 피규제자의 영업 구분 현황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475개 업체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부합하는 업체들임

(주) 본 규제 개정안에 따라 향후 업체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짐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7.

○ 47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결과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겸업 사례도 많음. 한 개 혹은 복수의 영업을 수행 중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 <표-1> 참조

<표-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개 정 안	비 고
<p>제29조의12(교육) ①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 생물자원관</p> <p>2.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p> <p>②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u>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u> <u>까지의 기간 중에</u> 매년 3시간 이상의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u>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u> <u>에 3시간 이상</u>의 야생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u>추가교육</u>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영업자가 <u>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u>할 수 있다.</p> <p>1.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p>	<p>○ 교육비 및 3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p> <p>-규제 개정안이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고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므로 2025년부터 규제비용이 발생함</p> <p>-<u>각 영업구분별 영업장 당 1명의 교육대상자(영업자)가 존재함</u></p> <p>○ 추가 규제부담 발생하나, 그 규모를 특정할 수 없음</p> <p>- 영업정지처분 발생 여부 및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p> <p>○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내용 중 중복 사항은 제외됨. 하나의 교육으로 판매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수입업 등 모든 야생동물 영업 내용을 포괄할 예정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교육만 이수하면 됨</p>

<표-1> 개정안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개 정 안	비 고
<p>2. 야생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p> <p>3.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p> <p>4.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p> <p>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 개정안에 따른 교육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1인(법인일 경우 대표자 포함)이고, 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 교육 대상자가 모든 종업원이 아니라 영업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책임자 1인으로 한정하는 의미임. 따라서 업체별 1인의 교육대상자를 가정함.</p>
<p>2. 향후 10년간 교육대상자 수 추산</p> <p>○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개정 전 향후 신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475개에 한하여 규제부담을 분석함</p> <p>○ (가정)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교육만 이수</p> <p>○ 향후 10년간 교육대상자 수 추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B-1>에 따른 전체 475개 영업장의 교육대상자 수는 <표 C-1> 참조 - 교육 이수 의무는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와 받은 <이듬해>에 발생. 규제시행일이 2025.12.14.이므로, 2025년에 첫 교육 이수 의무 발생 	

(주) 개정안 제29조의12(교육) 제2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년 3시간 이상의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표 C-1> 영업 구분 별 교육대상자 수 추산

영업 구분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229	5	151	41	16	12	14	6	1	475

(자료) <영업업체 수>, 환경부 내부자료, 2025.7.

(주) 복수 영업허가 보유한 업체라도 영업별로 교육 이수 필요하지 않고 1회의 교육 이수로 같음됨

- 본 개정안 제29조의12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야생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 이해, 동물복지·방역·안전 관리 등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짐. 즉, 영업의 종류별로 교육 내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영업자가 복수의 영업허가를 가진 경우에 주체가 동일하므로 동일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에서는 영업허가 신청자 및 허가자 중 복수 허가를 가진 영업자의 경우에도 한 회의 교육 수강으로 해당 영업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9조의12제4항 단서조항에서 교육대상 영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 중 중복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C. 향후 10년간 규제비용 추산

- 야생동물 영업자 교육형식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1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2025년 8월부터 야생동물 영업자 허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이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이 민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온라

	<p>인(사이버) 교육을 운영할 예정임. 그리고 2027년 1월부터는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 신청자 및 허가자가 비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개정안에 따라 총 3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며,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 학습진도율(100%)과 학습평가(60점 이상)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수료증을 자동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임. (국립생물자원관 내부자료, 2025년 7월 18일)</p> <p>○ 규제비용 = ①교육비용 + ②교육시간에 대한 기획비용</p> <p>○ ①교육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수료 없음 - 현재 야생생물법에는 영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관련해 수수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와 교육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교육 수수료 없이 교육 진행 협의 중에 있고, 25년 11월 개최하는 영업자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업무 협의 : '25.6월 등) 추후 개정안 제29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 소속 교육전문기관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경우 교육수수료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 <p>(참고) 야생동물 관리 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야생생물 조사, 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교육'은 본 개정안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허가자 대상 의무교육과 교육 내용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총 5시간으로 구성되고, 무료로 진행중임. (출처: https://ehrd.me.go.kr/kor/edusch/eduschDetail.do?menuNo=110001&searchCk=&searchType=&searchMonth=&searchView=&searchYear=2025&courseseqno=18857&period_seqno=&searchGeneralEdu=1&searchKeyword=&searchDtTypeArr=R&startDay=2025-01-01&endDay=2025-12-31,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조사일 : 2025년 9월 3일)</p> <p>○ ②교육시간에 대한 기획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간 당 기획비용 = 10,030원/시간(= 2025년 최저임금) - 기획비용의 경우 개별영업자의 시간당 임금을 파악하기 어렵고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경우 1년 동안 3시간의 교육을 수시로 수강하거나 비업무시간에 수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인 10,030원/시간을 적용함 <p>(자료) <인건비 단가>, 최저임금위원회,</p>
--	--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2025.06.접속)

○ 향후 10년간 규제비용(교육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추산

- 규제시행일이 2025.12.14. 임을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2025년에 첫 번째 교육이수 의무 발생 가정함
- <표 D-1> 참조

<표 D-1> 규제비용 추산

	교육 대상 업체 (개/년) [a]	업체 별 영업자 (명/개) [b]	교육 대상자 (명/년) [c=a*b]	교육비용		교육시간 기회비용		규제비용 계 (원/년) [z=e+g]
				교육 수수료 (원/회) [d]	교육비용 (원) [e=c*d]	인건비 단가 (원/회) [f]	기회비용 (원) [g=c*f]	
2025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26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27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28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29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30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31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32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33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2034	475	1	475	0	0	30090	14292750	14292750

(주) <교육 1회 당 인건비 단가>, 3시간*10,030원/시간=30,090원/회

(준) <10,030원/시간>, 2025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등
활동제목	야생동물 영업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편익항목	야생동물 안전관리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질병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임 ○ 다만, 이러한 편익의 화폐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정성분석 시행

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인 야생동물 취급 규모				
	2.규제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3.위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4.28~2025.06.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임 				
	7.규제내용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가운데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본 규제가 정하는 규모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 편익 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예외기준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 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 정비 계획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4조의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의4(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u>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 및 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월평균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은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1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영업장내에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2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 또는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는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함
- 야생생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하며, 본 규제도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되는 법률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내용	특정 규모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여 영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야생동물 취급 전체 사업자를 영업허가 대상으로 설정
	내용	야생동물을 취급하여 영업하려는 자는 취급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허가 대상 사업자를 한정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효율적·효과적 관리 가능	- 해당 사항 없음
규제대안2	- 해당 사항 없음	- 취미로 사육하는 사인 간 거래 등 집행이 어려운 대상까지 포함하여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인 규정화 가능성 - 행정력 과다 소요 - 행정력 분산으로 인한 주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

		- 규제대안1보다 규제대상의 순응비용 증가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영업자	5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23.6, '24.8, '24.11, '25.1, '25.4)	파충류/양서류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	포유류/조류와 별도의 파충류/양서류 기준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4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설정하는 ‘규제대안1’을 선택.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규제대안1의 경우, 야생생물법 제22조의 5가 규정한 허가 대상 야생동물영업자의 범위를 특정 규모 기준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규제의 현실화를 통해 규제대상 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반면, 규제대안2의 경우, 야생동물 영업자 전체를 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규제목표 달성에 이상적인 대안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으로 인해 규제대안으로서 부적합
 - 야생동물에 대한 사인 간 거래 등 규제집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대상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비현실적이며 형식적인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해당 대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영업행위를 모두 감시·관리하여야 하므로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규제대상의 범위를 사실상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하여,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예를 들어, 야생동물에 대한 영업이 대규모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는 오히려 소홀해질 가능성이 큼

3. 규제 목표

-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일정 수준에서 설정함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 등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영업자의 사육 및 판매 현황을 조사함
- 본 규제 시행 이후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규모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한 규제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하여, 본 규제가 정하는 규모 기준으로 취급하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를 특정하기 불가능
④ 대상 업종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등에 따른 해당 업종 특정 불가능
⑤ 예비분석내용		○ 야생동물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시행되는 규제로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규제차등화 필요 여부 판단 불가능 ○ 향후 본 규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 업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 영업허가 대상 규모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신기술·신산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영업허가 대상 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정한 사항이므로 포괄적 규정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영업허가 대상 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정한 사항이므로 유연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영업허가 대상 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정한 사항이므로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영업허가 대상 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정한 사항이므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영업허가 대상 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를 정한 사항이므로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미국>

-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미국의 경우 주와 도시 별로 '희귀애완동물법'(Exotic Pet Law)을 제정해 개인의 야생동물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앨라배마주는 몽구스와 라쿤, 여우, 스컹크 등의 소유, 판매를 금지

<유럽연합>

-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는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업 종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습성과 생태 등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 대표적으로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다면 'WCA'(Wildlife and Countryside Act)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 부과. 또한 '위험한 야생동물법'(Dangerous Wild Animals Act)을 제정해 지정된 야생동물 종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조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타법사례

- 「동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서 '반려동물 영업' 허가 대상을 규정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야생동물의 영업에 대한 허가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한 규제로서,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으로 설정된 야생동물 영업자의 규모와 추가비용 발생 정도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피규제자 대부분 규제에 공감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5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규제자와 충분한 소통이 기추진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허가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적절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였고 야생동물 영업자들의 허가신청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높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관리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2. 12. 13.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22조의5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의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규모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 본 규제 시행 이후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의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규모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 14조의4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의 현실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규모 기준을 수정 및 보완	'26년~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령 제 14조의4에서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본 규제는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무분별한 야생동물 영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규제로서 비록 야생동물 영업 현황에 대한 정보 부재로 규제대상의 규모와 비용부담 정도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피규제자 대부분 규제에 공감하고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관리체계를 이용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이 높음
- 본 규제는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0	연간균등순비용	0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야생동물 취급 규모 기준 설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영업허가 대상 야생동물 영업자
활동제목	영업허가 신청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4조의4 ○ 주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야생동물 관련 영업자는 허가 신청 필요 ○ 본 규제영향분석서의 분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안에 따라 취급 규모 기준의 야생동물을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 하는 영업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득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함 -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따른 비용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분석함 -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영업허가 신청> 관련 비용에 한정함 ○ 본 규제영향분석서의 피규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제개정안 피규제대상은 야생생물법 개정안(25.12.14. 시행 예정)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영업자임

A. 개별 업체 영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A-1. 개별 업체별 영업 현황 <실태 조사>

- 475개 업체 대상으로 영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시행
 - 475개 중 465개 응답
 -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으로 구분되지만, 복수의 영업을 단일 업체에서 수행하는 겸업 사례도 다수 발견됨
 - 영업구분별 영업장 수 및 비율은 <참고 표 B-1> 참조
- (자료) '야생생물 영업허가 제도 시행 관련 영업현황 실태조사' (초안), 환경부/에코파이, 연구수행기간 2025.2.-2025.5., 2025.6.

<참고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A-2.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피규제자 전체> 영업 현황 분석

- 개정안의 피규제대상인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 = 475개
 - (주) 본 규제 개정안 이전에는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영업현황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주) 야생동물 영업 업체 수(=475)개는 본 규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의 사전 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업체들임
 - (자료) 환경부 내부 자료, 2025. 5.
- <참고 표 B-1>의 465개 샘플 조사에 따른 영업 구분별 비율을 475개 피규제대상 업체 전체에 비례적으로 적용
 - <표 B-1> 참조

<표 B-1> 영업 구분 별 업체 수 설문 조사 자료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개) [a]	224	5	148	40	15	12	14	6	1	465
비율 (%) [b]	48.17 %	1.08 %	31.83 %	8.60 %	3.23 %	2.58 %	3.01 %	1.29 %	0.22 %	100.00 %

(자료) 환경부 조사 자료, 2025.7.

(주) 전체 475개 중 465개 응답

B. 규제비용 발생 요소 및 규제비용 산출

B-1. 허가 신청 건수 산출

○ (가정) 개정안 시행 전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관리가 없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2조의5에서 규정하는 야생동물 영업자 현황 조사 결과 475개로 파악됨. 향후 10년간 475개 업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가정에 따라 허가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에 일시적으로 발생

○ 허가 신청 건 수 = 798 건

- 475개 업체는 중 복수의 영업 중인 업체들은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 필요

(자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 11서식] 중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문구 참조

- 가령, <표 C-1>에서 판매생산 겸업인 업체는 2개의 허가(판매 및 생산) 필요

<표 C-1> 영업 허가 신청 필요 수 추산 (개)

	판매	생산	판매 생산	판매 생산 위탁	판매 생산 수입	판매 생산 수입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위탁	계
업체 수 [a]	229	5	151	41	16	12	14	6	1	475
영업 종류 [b]	1	1	2	3	3	4	2	2	3	
영업 허가 신청 필요 수 [c=a*b]	229	5	302	123	48	48	28	12	3	798

(자료) <전체 업체 수(=475개)>, 본 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환경부 내부자료, 2025년초 기준

B-2. 규제비용 발생 요소 식별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①허가 신청 수수료 ②허가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비용으로 구성됨
- 영업별 영업허가 신청을 위한 영업허가신청서 작성, 서류구비 등에 비용이 소요되나 업체 규모 또는 복수 영업 여부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비용을 정성분석
- <표 D-1> 참조

<표 D-1> 허가 신청 관련 비용 발생 여부 검토		
구분		비고
① 허가 신청 수수료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의11서식], 영업허가신청서상 “수수료없음”
② 허가 신청 서류 작성· 제출 (첨부 서류)	0. 허가신청서 작성·제출	
	첨 부 자 료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13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공중위해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이수서(영업허가 이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주) 추후 개정안 문구 수정 예정 : 별표 8의3 → 별표 8의13

C. 정성 분석 시행

○ 정성분석

- 본 개정안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자들의 경우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비에 시간·인력 등이 소요됨. 다만, 소요 시간·인력 등은 영업 업체의 규모 또는 복수 영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정성분석 시행함

② 피규제 일반국민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등
활동제목	취급 규모 기준의 야생동물 영업 및 관리 강화
비용항목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 사업의 취급 규모 기준을 설정함 ○ 개정안을 통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다만, 이러한 편익을 화폐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으로 정성분석 시행

규제영향분석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목 차>

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규제조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안 별표)		
	3.위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9.09~2025.09.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가 그 처리를 이행하는 보증제도를 '9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용보관량을 포함하여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이행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조치됨 ○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취소,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원인자인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후, 업체가 이를 미이행하게 되면 업체가 가입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는데 ○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공제조합에 이행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업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직접 폐기물을 처리함 ○ 따라서,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단가가 미반영되면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행보증 물량보다 적게 처리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방치폐기물 장기 적체로 인해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실적인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필요 ○ 참고로, 원인자와 처리이행보증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7.규제내용	○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p>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p> <p>○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 관련 공무원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폐기물처리업체</td> <td>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td> <td>5개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td> </tr> <tr> <td>관련기관</td> <td>관련 공무원 등</td> <td>환경부, 지방자치단체</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이해관계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	5개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관련기관	관련 공무원 등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이해관계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	5개 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관련기관	관련 공무원 등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p>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p> <p>○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을 통해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함으로써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p>																																					
규제의 적정성	<p>10. 비용편익 분석 (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비용</th> <th>편익</th> <th>순비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6,307.71</td> <td></td> <td>6,307.71</td> </tr> <tr> <td>피규제자 이외</td> <td></td> <td></td> <td></td> </tr> <tr> <td>정성분석</td> <td></td> <td></td> <td></td> </tr> <tr> <td>주요내용</td>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307.71		6,307.71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307.71		6,307.71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p>11.영향평가 여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영향평가</th> <th>경쟁영향평가</th> <th>중기영향평가</th> </tr> </thead> <tbody> <tr> <td>해당없음</td> <td>해당없음</td> <td>해당없음</td> </tr> </tbody> </table>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p>12.규제일몰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분류</th> <th colspan="2">소분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 <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 <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 <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 <td>미해당</td> </tr> <tr> <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 <td>해당</td> </tr> <tr> <td colspan="2">일몰설정여부</td> <td>일몰조문</td> <td>연장여부</td> </tr> <tr> <td colspan="2">설정</td> <td>제5조</td> <td>연장</td> </tr> <tr> <td colspan="2">일몰유형</td> <td>일몰설정기간</td> <td>일몰주기</td> </tr> <tr> <td colspan="2">재검토행</td> <td>2022.01.01~2025.12.31</td> <td>3년</td> </tr> </tbody> </table>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5조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2.01.01~2025.12.31	3년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5조	연장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2.01.01~2025.12.31	3년																																		

	13. 우선 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6,307.71	0	797.16
	15. 규제 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 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 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97,000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316,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07,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36,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62,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87,000
폐농약, 폐유독물	644,000	폐농약, 폐유독물	560,000
폐석면	645,000	폐석면	822,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14,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71,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폐산, 폐알칼리	487,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52,000	폐광재(지정폐기물)	210,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99,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317,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46,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99,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52,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210,000
건설폐기물	62,000	건설폐기물	77,000
의료폐기물	1,397,000	의료폐기물	1,541,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37,000	동물성잔재물	254,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식물성잔재물	190,000
폐유기용제	462,000	폐유기용제	487,000
할로겐족		할로겐족	

현 행			개 정 안		
	기 타	297,000		기 타	316,000
	폐윤활유	95,000		폐윤활유	104,000
	폐축전지	102,000		폐축전지	113,000
				태양광 폐패널	113,000
				조명폐기물(폐형광등,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000
	폐드럼	19,000		폐드럼	16,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폐산, 폐알칼리	487,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58,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67,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76,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90,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52,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62,000
	폐전선	238,000		폐전선(폐광케이블 포함)	330,000
	폐오일필터	55,000		폐오일필터	65,000
	폐타이어	92,000		폐타이어	103,000
	폐플라스틱 용기	62,000		폐플라스틱 용기	74,000
	폐규조토, 폐점토	63,000		폐규조토, 폐점토	74,000
	폐페인트	389,000		폐페인트	435,000
광재	일반	146,000	광재	일반	199,000
	지정	152,000		지정	210,000
분진	일반	146,000	분진	일반	199,000
	지정	152,000		지정	210,000
(단위: 원/톤)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69,000	폐합성수지		287,000
폐합성섬유		70,000	폐합성섬유		82,000
폐식용유		51,000	폐식용유		62,000
폐아연		56,000	폐비철금속류 (폐아연, 폐구리, 폐알루미늄)		67,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97,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316,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46,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99,000
	지정	152,000		지정	210,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54,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65,000
폐촉매		61,000	폐촉매		76,000
폐합성고무		114,000	폐합성고무		128,000
철강슬래그		52,000	철강슬래그		62,000

현 행			개 정 안		
폐주물사, 폐사		59,000	폐주물사, 폐사		71,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52,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62,000
폐섬유류		66,000	폐섬유류		78,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81,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93,000
	피혁가공잔재물	178,000		피혁가공잔재물	194,000
폐석회, 폐석고		52,000	폐석회, 폐석고		62,000
폐목재		75,000	폐목재		87,000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음식물류폐기물		148,000
의료폐기물		1,397,000	의료폐기물		1,541,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음식물류폐기물		148,000
동물성잔재물		237,000	동물성잔재물		254,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식물성잔재물		190,000
유기성오니		176,000	유기성오니		190,000
비고			비고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1,000원으로 적용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는 처리단가 0원을 적용)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사가 그 처리를 이행하는 보증제도를 '9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용보관량을 포함하여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이행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업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조치됨
-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취소,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원인자인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후, 업체가 이를 미이행하게 되면 업체가 가입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는데
-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공제조합에 이행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업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직접 폐기물을 처리함
-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행보증 물량 처리가 가능하나,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단가가 미반영되면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행보증 물량보다 적게 처리될 수 있음
- 이에, 개정 고시('21.12.3, '21년 조사) 이후 폐기물 처리비 등이 상승된 바,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현실화 추진 필요
- **(정부개입의 필요성)**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킬 경우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보증제도를 두고 있으나,
 - 이행보증금이 제때 현실화 되지 못하여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에 부족할 경우 대안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 증감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부족으로 인한 부적정 처리를 사전 방지토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단가 기준 유지
	내용	현행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내용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시장단가 반영 등)
규제대안2	대안명	폐기물처리비의 물가상승률 반영
	내용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에 단순 물가상승률 반영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폐기물처리업체 비용부담 완화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불가,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투입
규제대안1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비 확보	폐기물처리업체 경제적 부담 증가
규제대안2	물가상승률 반영한 처리비 확보	폐기물 종류에 따른 현실적인 처리비 반영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폐기물 재 활용 공제 조합	서면(e-메일)	- 실질적인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반영 검토 필요 - 폐지, 고철 방치 시 처리이행을 위해 상차운반비 17,000원으로 조정 필요	일부 반영 ※ 판매대금*으로 상차·운반비 상쇄 가능하여 미반영 * (‘25.9) 폐지 130원/kg, 철스크랩 294.6원/kg
한국자원순환 공제 조합	서면(e-메일)	- 폐지, 고철 방치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처리단가 규정 필요 - 폐전선(폐광케이블) → △폐전선, △폐광케이블 항목 분리 ※ 폐전선은 구리 포함으로 고가 거래	일부 반영 ※ 방치 폐전선은 구리 제외 후 방치로 구분 실익이 없어 미반영
한국건설자원	서면(e-메일)	- 실질적인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일부 반영

공제 조합		반영 검토 필요 처리단가에 포함되는 폐기물처 분부담금, 운반·상차비 반영 비 율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실 제 발생비율 적용 필요 상차운반비 산정 기준중 운반거 리 40km → 30km로 조정	(81,000원/톤 → 77,000원/톤) ※ 운반거리는 한국물가 협회 기준을 모든 종류 폐기물에 공통 적용하 여 미반영
한국제지 연합회	서면(e-메일)	- 폐지는 고가의 순환자원으로 방 치 우려 無로 처리단가를 0원으 로 조정 필요	수정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고시 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비, 처리비 등 시종 비용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적정 처리가 곤란
- '21년 고시 개정('21년 조사 단가) 이후 처리단가가 인상되지 않아 적정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하고 남은 방치폐기물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재정이 투입
- 따라서, 적정 산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의 조사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 등이 있어 대안1로 검토

3. 규제목표

- 현행 고시 처리단가 현실화를 통해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담보함으로써 장기 적체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의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치 폐기물 적정 처리 필요
- (수단) 방치폐기물 발생 시 적정 처리를 담보되도록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목적- 수단 간 충분한 비례적 타당성 보유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은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제도로 동 제도개선에 따른 경쟁자 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폐기물처리업체는 대체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부담금은 초기 1회이고,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수수료*는 연 1회로서 재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음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허용보관량 2배 × 보험료율(평균 0.21%)

- 오히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업취소·폐업 등의 위험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을 보장하는 면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임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기업현황 분포 파악이 어려워 정성모델 적용
④ 대상 업종	폐기물처리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부도 등으로 동 업체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차등화 대상이 아님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은 모든 폐기물처리업체가 업을 영위하기 전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담보하는 제도로 처리이행 보증을 위해 산정하는 처리단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방치폐기물 처리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이행보증)을 활용 중이며, 금회 시중단가 상승 반영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실화(안) 도출함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방치폐기물 처리단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현행 제2021-259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 해야 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가 없을 경우 고의 부도, 방치 후 도주 등 유사 시 환경오염 확산 방지,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대집행이 불가피하며, 원인자 행방이 불명일 경우 구상이 어려워 국고손실을 초래
유연한 분류 체계		상기와 동일
네거티브 리스트		상기와 동일
사후 평가관리		상기와 동일
규제 샌드박스		상기와 동일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총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음
- (유럽)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운송)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선행적으로 요구, EU 국가별로 필요한 요구사항 시행
- ※ (독일) 폐기물 반출 3일전 재무보증 또는 보험 제공 시 인정, (핀란드) 반출 2주 전에 금융보증 확보시 허용
- (미국) 유해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 사후관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재정적 책임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정화비용을 위한 보험이나 기타 보증을 들도록 하고 있음(자원보존회복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등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장은 방지시설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
-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산정 방법을 고시하도록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307.71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07.71		6,307.7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307.71		6,307.71
기업순비용		6,307.71	연간균등순비용	797.1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영업시작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행보증금 납부(또는 보증보험 가입)은 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필수적인 사안임
- 처리단가는 3년 주기로 재검토하여 증감 요인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현실화 해오고 있으며, 직전 처리단가 현실화(21년) 시에도 업계는 이를 충분히 수용
- 금회 당사자 의견 수렴 시에도 시중단가 인상분 반영 등의 큰 틀에는 공감대 형성(2-② 참조)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만 변동되므로 제도개선에 따른 조직·인력 등의 변동사항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사 가입에 따른 보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준금액 변동에 따른 동 분담금 및 보험수수료 산정·납부 확인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는 없음
- 오히려, 현실적인 방치폐기물 처리금액에 대하여 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집행되던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24.8월~’25.1월)을 추진하여 업계 방문 조사, 업종별 공제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3회)를 거쳐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 고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인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사가 적정 이행보증금을 확보했는지 확인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방치폐기물 처리단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고시(현행 제2021-259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 해야 함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21년 조사 이후 물가상승률 등이 미반영된 현행 고시에 따른 처리단가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이행보증금 부족으로 방치폐기물이 장기 적체됨에 따라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 피해가 우려됨
- 또한,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 불가 시 남은 물량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며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됨
- 아울러, 방치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 인식을 확대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307.71		6,307.7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307.71		6,307.71
기업순비용		6,307.71	연간균등순비용	797.1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인상 및 개선>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활동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인상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367,408,494	351,587,076
	2027	367,408,494	336,446,962
	2028	367,408,494	321,958,816
	2029	367,408,494	308,094,560
	2030	367,408,494	294,827,331
	2031	367,408,494	282,131,417
	2032	367,408,494	269,982,217
	2033	367,408,494	258,356,189
	2034	367,408,494	247,230,802
	2035	367,408,494	236,584,500
	합계	3,674,084,940	2,907,199,87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공제조합 분담금 추가액 (원/년) × 이자율(4.5%) = 8,164,633,201원/년 * 4.5%		
근거설명	<p>0. 일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폐기물처리업자별 혹은 공제조합별/보증보험의 개정안 [별표]의 <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데이터 활용 불가능 - 기존 통계자료 등에도 [별표]와 같이 구분된 폐기물종류별 물량 자료 없음 - (가정) 이에따라, 개별 피규제자들의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율은 단순 처리단가 변동률과 동일함을 가정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

<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가입업체 수	
		업체 수	비율
공 제 조 합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417	4.65%
		41	0.46%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461	5.15%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54	0.60%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806	9.00%
서울보증보험		7,181	80.15%
합계		8,960	100.00%

(자료) <업체 수>,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산정 조사 연구, 환경부(정책연구보고서), 2025.1.

1. 규제내용 및 피규제자 식별

1-1) 규제내용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변경

1-2) 피규제자 식별

- 피규제자는 다음의 3 분류로 구분됨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 처리신고자
- 위 3 분류의 피규제자별 규제비용 산출이 어려움
 - 개별 피규제자 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피규제자 별 규제비용 산출>이 아닌 <공제조합·보증보험>을 통하여 개정안에 따른 규제 비용 산출 가능
 - 개별 피규제자들이 공제조합·보증보험을 통하여 규제 준수하고 있음 → 피규제자들이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납부하는 분담금·보험료 분석을 통하여 <개별 피규제들의 규제 비용 합> 산출 가능
 - [참고-1] 참조

	<p>1-3) 피규제자 별 규제비용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공제조합 가입 경우>와 <②보증보험 가입> 경우로 구분 - [참고-2] 참조 <p>① <공제조합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규제 비용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분담금 변화에 따른 이자비용 변화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참고)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피규제자에게도 규제 변화의 영향 발생 가능</p> <p>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규제조문은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을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처리단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분담금 산정에 처리단가가 반영될 것을 법령상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p> <p>다만, 조합별분담금 산정 기준은 환경부 허가 사항으로, 모든 공제조합에 확인 결과 공제조합별 정관에 따라 분담금 책정 시에도 동법에 규정된 처리단가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보증보험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규제 비용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보험료 변화액>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관련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이용 현황 - [참고-3] 참조 <p>2. <공제조합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추가 비용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공제조합 분담금 변화에 따른 이자액 및 보증보험 보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변화 규모>에 비례 ○ 공제조합 가입 현황(<표 A-0> 참조)
--	---

<표 A-0> 공제조합별 분담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톤)

폐기물 종류	재 활 용 폐 기 물		소 각 폐 기 물	건 설 폐 기 물	의 료 폐 기 물	계	계 변 화 율	계 변 화 율 평 균
	자 원 순 환 공 제 조 합	폐 기 물 재 활 용 공 제 조 합	자 원 순 환 에 너 지 공 제 조 합	건 설 자 원 공 제 조 합	의 료 폐 기 물 공 제 조 합			
공 제 조 합	'20	419	937	50	387	36	1829	
	'21	449	884	52	393	39	1817	-0.66%
	'22	476	833	55	406	42	1812	-0.28%
	'23	461	806	55	417	41	1780	-1.77%
	'24	471	778	59	420	41	1769	-0.62%
분 담 금 (누 적)	'20	1,924,175,500	10,813,502,161	2,685,892,980	20,939,813,878	531,519,000	36,894,903,519	
	'21	2,050,629,265	11,406,686,309	2,827,760,786	22,634,300,991	542,454,000	39,461,831,351	6.96%
	'22	2,392,867,180	11,249,712,978	3,072,945,765	23,027,034,739	710,224,000	40,452,784,662	2.51%
	'23	2,196,393,590	12,529,146,781	3,542,119,038	24,064,922,884	709,101,000	43,041,683,293	6.40%
	'24	2,479,015,033	13,465,922,402	3,756,205,460	24,470,575,419	527,330,000	99,048,314	3.85%
보 증 물 량	'20	476,380	3,345,408	364,932	12,605,703	2,311	16,794,734	
	'21	473,766	3,450,603	374,110	12,876,531	2,363	17,177,373	2.28%
	'22	512,147	3,506,804	384,878	13,124,671	3,562	17,532,062	2.06%
	'23	508,502	3,681,490	380,129	13,435,213	3,501	18,008,835	2.72%
	'24	543,868	3,630,067	397,518	13,572,256	2,700	18,146,409	0.76%

자료) 환경부 취합자료, 2025.10.

○ <공제조합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규제 비용 (원/년)

- (가정) 가장 최근 분담금 현황은 2024년 자료임. 개정안이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2024년도의 분담금이 지속 가정
- (가정)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분담금 추가액>은 <2024년 분담금>에 <처리단가 변화율 평균>을 곱한 값으로 산출됨
- 규제비용 = 367,408,494 원/년의 이자수입 손실 추가 발생
- <표 A-1> 참조

<표 A-1> 공제조합 가입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추산 (원/년)						
폐기물 종류	재활용 폐기물	건설 폐기물	소각 폐기물	의료 폐기물	계	비고
2024년 분담금 (원) [a]	15,944,937,435	24,470,575,419	3,756,205,460	527,330,000	44,699,048,314	
개정안 평균 처리단가 (원/톤) [b]	205,490	77,000	624,857	1,541,000		
현행 평균 처리단가 (원/톤) [c]	181,449	62,000	612,143	1,397,000		
평균 단가 변동률 [d=(b-c)/c]	13.25%	24.19%	2.08%	10.31%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추가액 (원) [e=a*d]	2,112,704,210	5,919,432,194	78,129,074	54,367,723	8,164,633,201	
이자율 (%) [f]	4.5%	4.5%	4.5%	4.5%		
이자 수입 기회비용 (원) [g=e*f]	95,071,689	266,374,449	3,515,808	2,446,548	367,408,494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입 손실액
공제조합 이용 시 규제비용 합 [z1=Σg]					367,408,494	

(주) 재활용폐기물의 경우,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및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분담금 및 물량>의 합

(주) 건설폐기물의 경우,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분담금 및 물량>의 합

(주) 소각폐기물의 경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분담금 및 물량>의 합

(주) 의료폐기물의 경우,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분담금 및 물량>의 합

(주) <개정안 및 현행 평균처리단가>,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산정 조사 연구, 2025.1., p.121.

(주) <이자율>, 본 규제영향분석시스템에서 지정한 할인율(4.5%) 적용.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대표적으로 준용하는 재무적 할인율(4.5%)

3. 향후 10년간 개정안에 따른 피규제자 규제 비용

- <공제조합 가입 경우> 피규제자 규제 비용
 - <표 Z-1> 참조
- 향후 10년간 규제비용 흐름 (원/년)

<표 Z-1> 공제조합 가입 경우, 향후 11년간 규제비용 흐름 (원/년)

	공제조합 가입 시	비고
2026	367,408,494	
2027	367,408,494	
2028	367,408,494	
2029	367,408,494	
2030	367,408,494	
2031	367,408,494	
2032	367,408,494	
2033	367,408,494	
2034	367,408,494	
2035	367,408,494	

[참고-1]

-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방법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①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②보증보험사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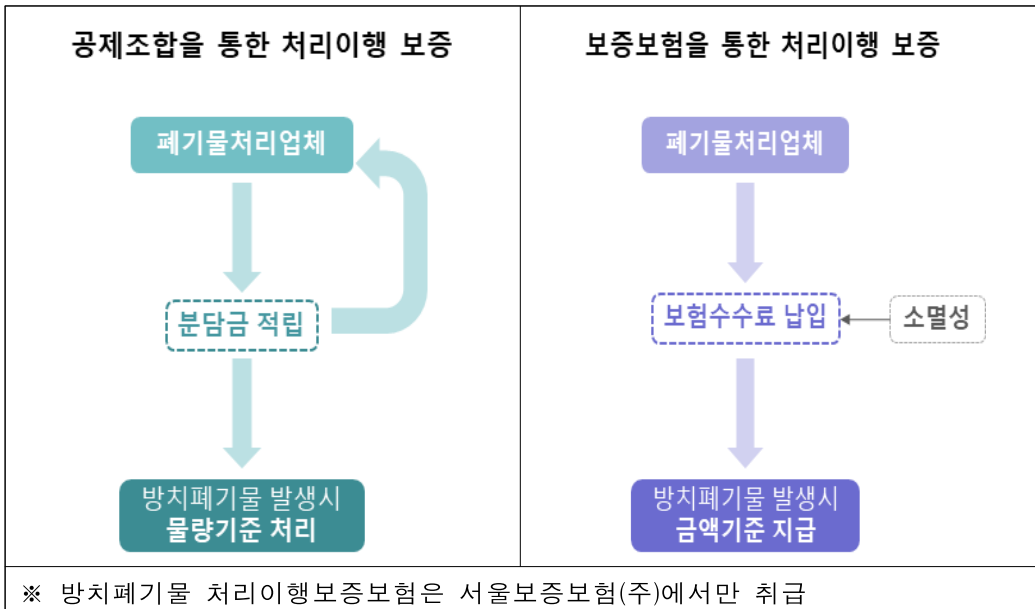
[참고-2]

- 규제비용 발생 요소
 - ①공제조합의 분담금은 예치금으로 조합 가입시 납부하고 탈퇴시 환급받는 금액으로 공제조합이 각 정관에 따라 정하고 있음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분담금 변화에 따른 이자비용 변화액>
 - ②보증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 산정되는 금액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는 매년 납부하고 소멸되는 금액임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보험료 변화액>

○ 방치폐기물 발생 시 처리 절차

-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취소,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우선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오염원인자인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한 후, 업체가 이를 미이행하게 되면 업체가 가입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는데,
- ①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공제조합에 이행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 ②보증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이 업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직접 폐기물을 처리



[참고-3]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관련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이용 현황

□ 공제조합별 분담금 현황 (단위 : 개소, 원, 톤)

구분	자원순환 공제조합	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	자원순환에너지 공제조합	건설자원 공제조합	의료폐기물 공제조합	
조합 원 수	'20	419	937	50	387	36
	'21	449	884	52	393	39
	'22	476	833	55	406	42
	'23	461	806	55	417	41
	'24	471	778	59	420	41
분 담 금 (누 적)	'20	1,924,175,500	10,813,502,161	2,685,892,980	20,939,813,878	531,519,000
	'21	2,050,629,265	11,406,686,309	2,827,760,786	22,634,300,991	542,454,000
	'22	2,392,867,180	11,249,712,978	3,072,945,765	23,027,034,739	710,224,000
	'23	2,196,393,590	12,529,146,781	3,542,119,038	24,064,922,884	709,101,000
	'24	2,479,015,033	13,465,922,402	3,756,205,460	24,470,575,419	527,330,000
보 증 물 량	'20	476,380	3,345,408	364,932	12,605,703	2,311
	'21	473,766	3,450,603	374,110	12,876,531	2,363
	'22	512,147	3,506,804	384,878	13,124,671	3,562
	'23	508,502	3,681,490	380,129	13,435,213	3,501
	'24	543,868	3,630,067	397,518	13,572,256	2,700

□ 직접비용

(정량) 영향집단명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활동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련 인상된 보증보험사 보험료 납부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429,753,977	411,247,825																						
	2027	429,753,977	393,538,588																						
	2028	429,753,977	376,591,951																						
	2029	429,753,977	360,375,072																						
	2030	429,753,977	344,856,529																						
	2031	429,753,977	330,006,247																						
	2032	429,753,977	315,795,452																						
	2033	429,753,977	302,196,605																						
	2034	429,753,977	289,183,354																						
	2035	429,753,977	276,730,482																						
	합계	4,297,539,770	3,400,522,10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text{기준년도 보증보험료} \times \text{개정안에 따른 처리단가 평균 변동률} = 4,883,567,920 \text{ 원/년} \times 8.8\%$																								
근거설명	<p>0. 일반 사항</p> <p>○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p> <p><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 (단위: 개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가입업체 수</th> </tr> <tr> <th>업체 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공 제 조 합</td> <td>한국건설자원공제 조합</td> <td>417 / 4.65%</td> </tr> <tr> <td>한국의료폐기물공제 조합</td> <td>41 / 0.46%</td> </tr> <tr> <td>한국자원순환공제 조합</td> <td>461 / 5.15%</td> </tr> <tr> <td>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 조합</td> <td>54 / 0.60%</td> </tr> <tr> <td>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조합</td> <td>806 / 9.00%</td> </tr> <tr> <td colspan="2">서울보증보험</td> <td>7,181 / 80.15%</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8,960 / 100.00%</td> </tr> </tbody> </table> <p>(자료) <업체 수>, 방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산정 조사 연구, 환경부(정책 연구보고서), 2025.1.</p>			구분	가입업체 수		업체 수	비율	공 제 조 합	한국건설자원공제 조합	417 / 4.65%	한국의료폐기물공제 조합	41 / 0.46%	한국자원순환공제 조합	461 / 5.15%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 조합	54 / 0.60%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조합	806 / 9.00%	서울보증보험		7,181 / 80.15%	합계		8,960 / 100.00%
구분	가입업체 수																								
	업체 수	비율																							
공 제 조 합	한국건설자원공제 조합	417 / 4.65%																							
	한국의료폐기물공제 조합	41 / 0.46%																							
	한국자원순환공제 조합	461 / 5.15%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 조합	54 / 0.60%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 조합	806 / 9.00%																							
서울보증보험		7,181 / 80.15%																							
합계		8,960 / 100.00%																							

○ 보증보험사 보험금 현황

<표> 보증보험사 보험금 현황 (단위: 원, 톤)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수	5,007	5,305	6,663	7,170	7,211
보증금액 (보험가입 금액)	1,272,909, 522,176	1,541,980, 880,058	2,111,594, 687,750	2,144,364, 768,919	2,170,999, 642,100
납부금액 (보험료)	3,525,163, 130	3,449,558, 910	4,782,969, 780	4,808,198, 200	4,883,567, 920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2025.10.

○ (가정) 폐기물처리업자별 혹은 공제조합별/보증보험의 개정안 [별표]의 <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데이터 활용 불가능

- 기존 통계자료 등에도 [별표]와 같이 구분된 폐기물종류별 물량 자료 없음
- (가정) 이에 따라, 개별 피규제자들의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율은 단순 처리단가 변동률과 동일함을 가정함

1. 규제내용 및 피규제자 식별

1-1) 규제내용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변경

1-2) 피규제자 식별

- 피규제자는 다음의 3 분류로 구분됨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 처리신고자
- 위 3 분류의 피규제자별 규제비용 산출이 어려움
 - 개별 피규제자 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자 별 규제비용 산출>이 아닌 <공제조합·보증보험>을 통하여 개정안에 따른 규제 비용 산출 가능 - 개별 피규제자들이 공제조합·보증보험을 통하여 규제 준수하고 있음 → 피규제자들이 <공제조합·보증보험>에 납부하는 분담금·보험료 분석을 통하여 <개별 피규제들의 규제 비용 합> 산출 가능 - [참고-1] 참조 <p>1-3) 피규제자 규제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조합 가입 경우>와 <보증보험 가입> 경우로 구분 - [참고-2] 참조 ○ <공제조합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규제 비용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분담금 변화에 따른 이자비용 변화액> ○ <보증보험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규제 비용 - 피규제자 규제비용은 <보험료 변화액>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관련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 이용 현황 - [참고-3] 참조 <p>2. <보증보험 가입> 경우의 피규제자 추가 비용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개정안에 따른 <u>보증보험 보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평균 변화율>에 비례</u> - 폐기물 종류별 물량 등에 관한 통계 자료 미비 ○ 규제비용 산출 - (가정)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보증보험료는 <2024년 보증보험료> 대비 <폐기물의 처리 단가 평균변화율>에 비례 - <표 B-1> 참조
--	---

<표 B-1> 보증보험 가입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추산 (원/년)

구분	계	비고
2024년 보증보험료 (원) [a]	4,883,567,920	기준년도 보증보험료
처리단가 평균 변화율 [r=pb/pc]	8.8%	처리단가 평균값 변화 추산 현행 = 252,328원/톤 개정안 = 274,533원/톤, 처리단가 변동률 = 8.8%
보증보험 이용 시, 규제비용 합 (원/년) [z2=Σg]	429,753,977	

(자료) <2024년 보증보험료>, 서울보증보험, 2025.10.

(주) 보증보험회사로부터의 보증대상 폐기물량 자료 활용 불가능

3. 향후 10년간 개정안에 따른 피규제자 규제 비용

○ <보증보험 가입> 경우의 향후 10년간 규제비용 흐름 (원/년)

- <표 Z-2> 참조

<표 Z-2> 보증보험 가입 경우, 향후 10년간 규제비용 흐름 (원/년)

	보증보험 가입 시	비고
2026	429,753,977	
2027	429,753,977	
2028	429,753,977	
2029	429,753,977	
2030	429,753,977	
2031	429,753,977	
2032	429,753,977	
2033	429,753,977	
2034	429,753,977	
2035	429,753,977	


□ 직접비용	
(정성) 영향집단명	폐지·고철·합성수지류제외폐포장재의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활동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신설
비용항목	환경오염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규제내용 :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를 신설하여 1,000원으로 적용</p> <p>- 단, 비고2를 통하여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처리단가 0원 적용</p>
	<p><참고> 개정안 비고2</p> <p>“비고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는 1,000원으로 적용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는 처리단가 0원을 적용)”</p> <p>○ 규제비용</p> <p>- 본 규제 대상이 되는 폐지·고철·포장재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보증 조치의 면제대상이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및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 - 46호)」에 따른 물질*로 법령상 처리이행보증의무 대상은 아니나 일부 지자체에서 처리이행보증금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정성적으로 서술함</p> <p>*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무 비해당)</p>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 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개선을 통한 부적정 처리 사전 방지
편익항목	환경오염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그러나,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원인자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 위해 우려가 발생함. 또 지자체·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이를 처리할 경우, 예산 활용의 효율성·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본 개정안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단가가 현실화 될 경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신속한 방치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 주민 피해 예방에 따른 편익이 발생함 - 다만 이러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정성분석함

부록B. 2025년 환경규제 비용·편익 분석
- 규제 완화·폐지



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폐기물부담금 “껌” 품목 삭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폐기물부담금 “껌” 품목 삭제		
	2.규제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3.위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4.유형	완화	5.입법예고	2024.04.12~2024.05.08
폐지 완화 필요성	6.추진배경 및 폐지완화 필요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취지에 맞게 사용량이 감소하고 배출문화가 정착된 껌을 부과대상에서 제외		
	7.폐지완화 규제내용	폐기물부담금에서 “껌” 품목 삭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제조·수입업자		
	9.기대효과	업체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10.비용편관리제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16,776.09	-2,028.8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p> <p>1. ~ 2. (생 략)</p> <p><u>3. 깔</u></p> <p>4.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I. 폐지·완화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기존규제의 문제점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
 - “껌”은 과거에 비해 사용량이 줄고, 공중질서 개선으로 배출 문화가 정착된 품목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담금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함(한국경제인협회)

2.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규제 폐지·완화 관련 위험요소 여부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 요소는 해당 사항 없음

② 선택대안의 내용 및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폐기물부담금 “껌” 품목 삭제
	내용	“껌” 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규제대안2	대안명	폐기물부담금 “껌” 품목 현행 유지
	내용	“껌” 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③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경제인협회	지속·반복 건의	껌 부담금 폐지	수용

④ 규제목표

- 업체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

II.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폐기물부담금 검 품목 삭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6,776.09	-16,776.0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6,776.09	-16,776.09
기업순비용		-16,776.09	연간균등순비용	-2,028.84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폐기물부담금 검 품목 삭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

(정량) 영향집단명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검” 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검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 폐지		
편익항목	비용절감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4	0	0
	2025	2,307,963,002	2,208,577,035
	2026	2,307,963,002	2,113,470,847
	2027	2,307,963,002	2,022,460,141
	2028	2,307,963,002	1,935,368,556
	2029	2,307,963,002	1,852,027,326
	2030	2,307,963,002	1,772,274,953
	2031	2,307,963,002	1,695,956,893
	2032	2,307,963,002	1,622,925,257
	2033	2,307,963,002	1,553,038,523
	합계	20,771,667,018	16,776,099,53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 2024년 : 편익 미발생 (2024년 검 폐기물부담금 전부 납부 완료) ○ 2025~2033년 : 최근 5개년 검 폐기물부담금 연간 평균 납부액 (=2,307,963,002원) 만큼의 연간 절감 편익 발생		
근거설명	○ 분석기준년도 : 2024년 ○ 규제시행년도 : 2024년 ○ 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 - 검 수입·제조업자들에게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2025년도 발생분부터 폐지 → 2024년 수입·제조된 검에 대해 2025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 피규제대상자 = 검 수입 및 제조업자 0. 일반 현황 ○ 2024년도 검 폐기물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 (업체수) 부과업체수 = 34개소, 징수업체수 = 34개소
- <표 A-1> 참조

<표 A-1> 2024년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원, 개소)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금액기준)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계	2,460,133,710	34	2,460,133,710	34	100%
제조	2,372,624,400	13	2,372,624,400	13	100%
수입	87,509,310	21	87,509,310	21	100%

(자료) 한국환경공단, 2025.9.

○ 최근 5개년 껌의 폐기물부담금 대상 출고액 현황

- 껌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판매가·수입가의 1.8%

(자료) <껌 폐기물부담금 요율>,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2]

-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출고액 현황은 <표 A-2> 참조

<표 A-2> 최근 5개년 껌 폐기물부담금 대상 출고액 현황

(단위: 백만원, 원)

	출고액		
	계	제조	수입
2020	160,426,175,171	154,929,585,295	5,496,589,876
2021	124,450,205,421	118,458,123,970	5,992,081,451
2022	107,255,095,058	100,784,114,627	6,470,980,431
2023	112,711,113,792	105,150,047,704	7,561,066,088
2024	136,674,103,453	131,812,469,547	4,861,633,906

(자료) 한국환경공단, 2025.9.

(주) 출고액에 따른 부과액은 <표 B-2> 참조

(주) 개별사업자별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의 원단위 이하 절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출고액 계에 부담금요율(=1.8%)을 곱한 값이 <표 B-2>의 부과액과 일부 다를 수 있음

1. 껌 폐기물부담금 제도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 제도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껌 폐기물부담금 산정 방식
 - 판매가 및 수입가의 1.8% (2015년도 이후 동일)
 - <참고-1> 참조
- (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25.>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참고-1> 껌 폐기물부담금 요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25.>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실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56.2원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7.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당 318원

(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25.>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 껌 관련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및 납부 시점
 - 껌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 껌 수입및제조업자 → 피규제대상자
 -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년도에 부과 및 징수·납부 (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5. 8. 16. 오전 11:07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정보 - 폐기물부담금 제도


제도소개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제도

이행절차

법령마당

서식마당

찾아오시는 길

폐기물부담금 제도 |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대해 설명 및 관련 법령,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 유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 지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제도안내	대상품목	납부대상자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부과제외 대상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감면	납부
<p style="text-align: center;">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p> <p style="text-align: center;">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p> <p style="font-size: x-small;">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p> <p style="font-size: x-small;">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 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 자)</p> <p style="font-size: x-small;">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p> <p style="font-size: x-small;">'부분품 및 부속품' 이란? 부분품: 주된 물품의 기능적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p> <p style="font-size: x-small;">부속품: 주된 물품의 기능적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관</p>							

(출처) 한국환경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폐기물부담금제도, 납부대상자, <https://portal.budamgum.or.kr/cmb/portal/wcs/system/intro.do>(접속일: 2025.08.16.)

2. 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

- 껌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2024년 폐지 → 2024년 출고분에 대하여 2025년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폐지
- 껌의 수입·제조업자들의 껌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 폐지 → 피규제대상자의

<p><u>규제편익 발생</u></p> <p>- <표 B-1> 참조</p> <p><표 B-1> 검 폐기물부담금 부과 규정 관련 개정 전후 비교</p>	
개정 전	개정 후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p> <p>1. ~ 2. (생략)</p> <p>3. <u>검</u></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출처)</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p> <p>[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 ----- ----- -----.</p> <p>1. ~ 2. (개정전과 같음)</p> <p>3. <u>삭제 <2024. 6. 4.></u></p> <p>4. ~ 7. (개정전과 같음)</p> <p>② (개정전과 같음)</p> <p>(출처)</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p> <p>[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일부개정]</p>
<p>○ 검 관련 폐기물부담금 징수액(피규제자 실제 부담) 현황</p> <p>- 2024년의 경우 2,460,133,710원 징수</p> <p>- 매년 증가 및 감소 반복 추세</p> <p>- <표 B-2> 참조</p> <p>※ 검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피규제대상의 연간 실제 총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을 의미</p> <p>※ 폐기물부담금 부과액과 징수액(=납부액)의 차이는 납부의무자들의 미납에 따른 것임</p>	

※ 2024년 부과액은 전액 2024년 납부(징수)됨 (출처: <2024년 껌 폐기물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한국환경공단, 2025.09.)

<표 B-2> 최근 5개년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액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액 변화율	부과 효율*
2020	2,887,670,960	2,887,670,960		판매가의 1.8% (단,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2021	2,235,290,600	2,235,290,600	-29.19%	
2022	1,930,591,530	1,930,459,900	-15.79%	
2023	2,028,799,840	2,026,259,840	4.73%	
2024	2,460,133,710	2,460,133,710	17.64%	
평균	2,308,497,328	2,307,963,002		

(자료) <출고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효율>, 한국환경공단, 2025.08.

(주) <징수액 변화율>, 재계산.

(주) <부과효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 기준

(주) 2020-2024년 기간 동안 껌 부과 효율 변동 없음

(주) 전년도 판매수입액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주) 부과액 대비 징수액 차이는 납부대상업체들의 미납에 따른 것임

3. 향후 10년간 규제 편익 산정

○ 향후 10년간 규제 편익

- <껌 폐기물부담금 폐지에 따른 피규제자의 실제 부담 감소액> = <껌 폐기물 부담금 징수액>

※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업체들의 미납으로 인하여 부과액과 징수액(실제납부액)에 차이 발생 → 실제 규제편익은 <껌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 <표 B-2>에서와 같이 징수액이 증가·감소 반복 추세를 나타냄. 이에 5개년 평균값을 매년도별 규제편익으로 적용

- 2020년-2024년 5개년 평균 껌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 2,307,963,002 원/년

< 표 Z-1> 향후 10년간 규제 편익		
년도	규제 편익 (원/년)	비고
2024	0	2024년 껌 폐기물부담금 전부 납부 완료
2025	2,307,963,002	2025년부터 면제 발생
2026	2,307,963,002	
2027	2,307,963,002	
2028	2,307,963,002	
2029	2,307,963,002	
2030	2,307,963,002	
2031	2,307,963,002	
2032	2,307,963,002	
2033	2,307,963,002	